

中国环境法令标准汇集

중국 환경 법령·표준집

Vol. 2
(폐기물 분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안 내

□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 (정책발표) 2020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이하 '고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주요변화) 2016년 개정법(2005.4.1. 시행)은 총 6장 9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2020년 개정법은 총 9장 126개 조문으로 내용이 대폭 보완되었으며, 역대 가장 엄격한 '고폐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처벌강화) 이번 2020년 개정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성(省)·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외부지역으로 고체폐기물을 허가 없이 이전하여 저장·처리할 경우,
 - 성(省)·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외부지역으로 고체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이전하여 이용할 경우,
 - 공업 고체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방치·투기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 고체폐기물 유실·누출 및 기타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경우,
 -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单位, 기업·기관 등)에서 고체폐기물 관리 장부(台账)를 구비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법 대비 최대 10배까지 강화
- (동향주시) 각 省과 직할시 등의 정부는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을 바탕으로 관련 지방 법규를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의 파악을 위해서는 법률과 함께 지방 정부의 세부적 기준, 조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본 책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률용어 또는 전문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적절한 용어가 없거나 명확한 이해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식 표기를 사용하였는바, 한글 번역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록된 중국어 원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실

전 체 목 차

국 문 자 료

1.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1
2.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	31
3. 고체폐기물 재활용 오염방지기술 가이드라인	51
4.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73
5. 폐차회수 관리방법	83
6.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추진 관련 통지	93
7. 베이징시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조례	101
8.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117
9.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141
10. 톈진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161
11. 산둥성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	181

중 문 자 료

1.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193
2.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	219
3. 固体废物再生利用污染防治技术导则	237
4.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255
5.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265
6.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275
7. 北京市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条例	283
8. 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297
9. 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317
10. 天津市生活垃圾管理条例	335
11. 山东省城市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	351

1.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제13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2차 회의 개정

(2020-04-29 개정·공표 / 2020-09-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목 차

제1장 총칙	5
제2장 관리감독	7
제3장 공업 고체폐기물	10
제4장 생활쓰레기	12
제5장 건설폐기물, 농업 고체폐기물 등	15
제6장 위험폐기물	18
제7장 보장조치	21
제8장 법률책임	22
제9장 부칙	28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은 2020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하여 공포하였으며,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020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1995년 10월 30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채택함. 2004년 12월 29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1차 개정함. 2013년 6월 29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유물 보호법> 등 12개 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함. 2015년 4월 24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 등 7개 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2차 수정함. 2016년 11월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12개 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3차 수정함. 2020년 4월 29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2차 개정함

제1장 총칙

제1조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국민건강 보장, 생태 안전 보호,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본 법을 적용한다.

고체폐기물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 방지나 방사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청정생산과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간소하고 녹색 저탄소의 생활방식으로 지도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4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부서와 개인은 고체폐기물을 줄이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을 촉진하여 고체폐기물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제5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오염자 책임원칙을 적용한다.

고체폐기물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활용, 처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하며,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생활쓰레기 분류제도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는 정부가 주도하여 전 국민 참여, 도농 통합,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쉽고 편리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목표에 대한 완료상황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련 부서를 지도·협조한다.

성·자치구·직할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공동 체계를 서로 협의하여 통합적인 계획수립, 시설 건설, 고체폐기물 운송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전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주택도농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상무, 위생건강, 세관 등 주무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를 관리감독 한다.

지방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한다. 지방정부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주택도농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상무, 위생건강 등 주무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관리감독 한다.

제10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과학기술 보급을 장려·지원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제11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企业事业单位)¹⁾, 자치단체 및 언론 매체는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학교는 생활쓰레기 분류 및 기타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및 관련 종합이용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에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제2장 관리감독

제13조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국민경제, 사회 발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종합이용하며, 고체폐기물의 위해성을 낮추고 매립량을 최소로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반드시 국가 환경품질 표준과 국가 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고체폐기물 식별표준, 식별절차,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15조 국무원 표준화 주무부서는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생태환경, 농업농촌 등 주무부서와 함께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은 생태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에 충족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반드시 위험폐기물 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체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의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정보를 추적해야 한다.

제17조 고체폐기물 발생·저장·이용·처리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문서에는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시설 건설을 포함해야 하며, 본 공사와 동시에 설계·시공·하여(投入) 병행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1) 기업사업단위(企业事业单位) : 공공사업단위(公共企事业单位)라고도 하며, 국유기업(国有企业)과 사업단위(事业单位)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국유기업은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국가가 갖고 정부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운영된다. 사업단위는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유자산을 활용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 출처 : 바이두백과 요약 및 번역(2021.5.10.검색)

초기설계는 반드시 환경보호 설계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포함시키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생태파괴 조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체폐기물 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업체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는 관련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행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고체폐기물 발생·수집·저장·운송·활용·처리업체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유실, 누출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단으로 폐기, 적재, 버려서는 안 된다.

모든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은 고체폐기물을 강,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 및 최고 수위선(最高水位线) 이하의 갯벌, 제방 경사면, 법률·규정에 지정된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 버리거나 쌓거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1조 생태보호 레드라인(ecological redline)²⁾, 영구기초농지(永久基本农田集中区)³⁾ 집중구역, 기타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역에는 공업 고체폐기물과 위험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리시설·장소 및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금지한다.

제22조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에서 고체폐기물을 반출해 저장·처리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반출되는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반출되는 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드시 반입되는 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즉시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고체폐기물을 반출해야 하며,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성·자치구·직할시에서 고체폐기물을 반출해 이용할 경우, 반출한 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반출된 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입되는 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등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외 고체폐기물이 국내에 반입되어 투기, 적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생태보호 레드라인(生态保护红线) 자연생태 서비스 기능, 환경의 질적 안전, 자연자원의 이용 등에 있어서 지역의 생태안전 및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 보장을 목적으로, 엄격한 공간 경계와 관리 한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환경보호부(생태환경부)는 <국가생태보전 레드라인-생태기능기선획정 기술지침(시행)国家生态保护红线-生态功能基线划定技术指南(试行)>을 제정해 네이멍구, 장시, 후베이, 광시 등지를 생태레드라인획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 출처 : 바이두백과 번역(2021.6.16.검색)

3) 영구기초농지(永久基本农田集中区) : 기본농지를 영구보호하기 위해 2008년 제17차 3중 전회에서 제정한 개념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용도를 바꿀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본농지를 변경할 수 없다. / 출처 : 바이두백과 번역(2021.6.16.검색)

제24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상무, 발전개혁, 세관 등을 비롯한 주무부서와 협업하여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점차 금지한다.

제25조 세관은 수입물품이 고체폐기물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그 물품의 속성 감식을 의뢰하여 감식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집행기관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에서 고체폐기물 발생·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검사는 현장 모니터링, 샘플수집,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자료열람, 복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관은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검사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은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7조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 및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감독 직책이 있는 부서는 불법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하는 시설, 설비, 장소, 도구,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 (1) 증거인멸, 은폐 또는 불법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경우
- (2)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8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고체폐기물 발생·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업체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의 신용기록 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신용기록을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킨다.

제29조 구(区)가 있는 도시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주택도농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등 주무부서와 협업해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능력, 이용·처리현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발생·수집·저장·운반·이용·처리업체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주동적으로 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체폐기물 이용·처리업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시설과 장소를 대중에게 개방해야 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업 고체폐기물, 생활쓰레기, 위험폐기물 등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상황에 대해 환경현황과 환경보호 목표달성에 관한 내용을 연도별 보고서에 포함시켜 소재지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모든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단체·개인을 신고할 수 있다.

생태환경 주무부서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신고방법을 공개하여 대중의 신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적시에 처리하고 신고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단체·개인에게는 조사결과가 사실로 입증되면 포상한다.

신고자가 본인이 소속된 단체를 신고할 경우, 해당업체는 근로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공업 고체폐기물

제32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등 주무부서와 함께 협업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이 대중의 건강,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영향 정도를 규정해야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기술 정책을 제정하여 공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생산 공정과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제33조 국무원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위해성을 낮추는 생산 공정과 설비를 연구개발·보급해야 한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공업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기한 내 도태시키고, 낙후된 생산 공정 또는 설비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및 사용자는 국무원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협업해 규정된 기간 내 철거 리스트에 포함된 설비는 생산·판매·수입·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생산 공정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및 유관부서가 협업해 규정한 기간 내 철거 리스트에 포함된 공정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간 내 철거하라는 철거 리스트에 포함된 설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주무부서는 발전개혁, 생태환경 등 주무부서와 함께 공업 공체폐기물의 종합이용기술, 공정, 설비, 제품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평가를 진행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도 추진하도록 한다.

제3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는 공업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업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등 시설을 건설하여 공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추진한다.

제36조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 전체 과정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책임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이 발생하는 종류·수량·운송과정·저장·이용·처리 등 정보를 추적·조회 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기입하여 공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7조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타인에게 공업 고체폐기물의 운송·이용·처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수탁자의 주요 자격 및 기술역량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오염방지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는 공업 고체폐기물을 운송·이용·처리할 때 관련 법규 및 계약서 규정에 따라 오염방지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에 운송·이용·처리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고,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을 파괴한 위탁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38조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고 원자재, 에너지,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이용해야 한다. 선진적인 생산 공정과 설비를 채택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

제39조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류·수량·운송과정·저장·이용·처리 등 관련 자료와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염배출 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제40조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공업 고체폐기물을 활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등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해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41조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폐업할 경우,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오염방지조치를 취하고 처리되지 않은 고체폐기물은 적절한 처리방식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사업단위는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공업 고체폐기물 및 저장, 처리시설·장소를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과 장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를 변경하기 전에 공업 고체폐기물 및 저장, 처리시설·장소에 대해 담당자의 오염방지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단, 담당자의 오염방지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2005년 4월 1일 이전에 폐업된 기업 사업단위가 처리하지 않은 공업 고체폐기물 및 저장·처리시설·장소에 대한 비용은 관련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단 해당 기업 사업단위에서 보유한 토지 사용권이 법에 의해 양도될 경우, 토지 사용권 양수인이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담당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지만, 오염방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42조 광산기업은 과학적인 채굴 방법과 선광⁴⁾ 공법을 채택해 미광, 석탄 맥석, 폐석 등 광업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저장량을 줄여야 한다.

국가는 선진 공법을 채택해 미광, 석탄 맥석, 폐석을 비롯한 광업 고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미광, 석탄 맥석, 폐석 등과 같은 고체폐기물 저장시설의 사용이 중단되면, 광산 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환경보호 등 규정에 따라 현장을 폐쇄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한다.

제4장 생활쓰레기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집, 분리운송, 분리처리 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리작업 조정 구조를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분리관리능력을 강화하고 통합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을 홍보하여 습관화 되도록 교육하며 쓰레기 분리 배출을 독려하고 지도한다.

4) 선광(选矿, mineral separation) : 광석 중의 서로 다른 광물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따라 광석을 파쇄한 후 서로 분리하여 유해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제련 등 기타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얻는 과정이다. / 출처 : 바이두백과 번역 (2021.6.16.검색)

제4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연료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여 연료의 잔여 폐기물 등 고체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반드시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을 피하고, 세척된 채소를 상품화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농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의 종합이용과 무해화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쓰레기의 수집·처리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시킨다. 생활쓰레기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수립·보완해야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반드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 분리, 포장장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46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를 강화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농촌 생활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도농 교차 지점, 인구밀집 농촌지역 및 조건이 허용되는 기타 지역에 도농 통합 생활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타 농촌지역은 생활쓰레기 관리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지역 내 적정 수준에서 생활쓰레기를 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구(区)가 존재하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저장, 운송, 처리시설·장소 건설에 대한 운영 규범을 제정해야 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지도 목록을 발표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위생 등 주무부서는 도농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처리를 진행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조건을 갖춘 기업 사업단위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하도록 한다.

제49조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 가정, 개인은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 배출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 생활쓰레기 발생자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 방치, 소각을 금지한다.

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분리 배출한 생활쓰레기는 규정에 따라 수거, 분리, 운반, 처리해야 한다.

제50조 도농지역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집, 운송, 처리하는 것은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를 통해 수거한 유해폐기물은 위험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험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제51조 대중교통 운송업체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제때에 청소하고 수거해야 한다.

제52조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은 반드시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청소, 분리수거 등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신도시 개발, 낙후 지역 재건축, 주택단지 개발, 마을건설 사업, 공항, 부두, 기차역, 공원, 쇼핑몰,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환경위생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운송과 처리시설을 통합해 전(前)항에서 규정한 수거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집운송시스템과 재활용 회수체계를 계획, 건설, 운영 등을 융합하여 강화해야 한다.

제54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5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무부서가 규정한 환경보호와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인접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통합해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행정구역을 초월(跨行政区域)하여 공유, 공동 건설하도록 촉진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무단으로 폐쇄, 방치, 철거를 금지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폐쇄, 방치,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재지 시(市)·현급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승인해야 하며,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한다.

제56조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모니터링 설비는 소재지 생태환경 주무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과 무해화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수거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업체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단위에 위탁하여 무해화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축산농가, 양식장 사업자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이나 가금류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오염자 납부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제를 제정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실정에 따라 분류별, 수량별 비용 등 차별화된 관리를 해야 하고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표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 등에만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9조 성·자치구·직할시와 구(区)가 있는 시, 자치주는 현지상황에 맞게 생활쓰레기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설폐기물, 농업 고체폐기물 등

제6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설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분리, 처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원천감량, 분류처리, 처리시설, 부지선정, 건설 등에 대한 건설 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1조 국가는 선진 기술, 공정, 설비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하고 건설폐기물 원천감량을 추진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정부는 건축 폐기물 종합 이용을 위한 제품의 적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6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는 건설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담당하여 건설폐기물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수거, 저장, 운송, 이용, 처리를 규범화하여 종합이용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장소 건설 강화, 처리 안전 보장,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제63조 공정시공업체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시공업체는 반드시 건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 고체폐기물을 제때 운반하고 환경위생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공정시공업체는 건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 방치 또는 적치해서는 안 된다.

제6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무부서는 농업 고체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기타 생산경영업체가 법에 따라 농업 고체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도록 장려·유도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65조 짚, 농업용 필름 폐기물, 농약 포장 폐기물 등 농업용 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재활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규모 가축 및 가금 사육에 종사할 경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등 고체 폐기물을 즉시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인구 밀집 지역, 공항 주변, 교통 간선 근처 및 현지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외 지역의 노천에서 짚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는 환경에서 자연 분해되는 무해한 농업용 필름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장려한다.

제66조 전기전자제품, 납축전지, 차량용 동력 배터리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연장 제도⁵⁾를 수립한다.

전기전자 제품, 납축전지, 차량용 동력 배터리 및 기타 제품 생산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자체 제작하거나 위탁 등의 방식으로 제품 판매량에 맞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에 공개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재활용·활용한다.

제품 생산자가 생태학적 설계를 진행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7조 국가는 폐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회수와 집중 처리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폐차, 폐선박 등 회수, 해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이 회수, 해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전기전자 제품, 폐차, 폐선박 등을 해체, 이용, 처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8조 제품 및 포장지에 대한 설계, 제조는 반드시 청정생산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주무부서는 국가 경제와 기술조건, 고체폐기물 환경오

5) 생산자책임연장제도(生产者责任延伸制度,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가 가져야 할 책임을 제품의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 및 폐기 후 회수처리까지 연장하는 제도이다. 국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와 유사 의미이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요약 및 번역 정리(2021.6.4.검색)

염방지 및 통제, 제품의 기술요구에 따라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과잉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생산경영자는 제품의 과잉 포장을 제한하는 표준을 준수하여 과잉 포장을 방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 관리감독 부서와 관련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과잉 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강제 회수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 판매, 수입하는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포장재를 회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택배, 배달음식 등 업계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쉽게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장재를 우선 적용하고 제품 포장의 최적화를 통해 포장물 사용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 우체국 등 주무부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 및 간소화 포장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권장한다.

제69조 국가는 법에 따라 비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제한 및 판매·사용을 금지한다.

유통·전자상거래 플랫폼·택배 및 배달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 우체국 등 주무부서에 일회용 비닐제품의 사용, 회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는 비닐봉지를 비롯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순환이 가능하고 쉽게 분해되며 대체 가능한 제품을 보급한다.

제70조 관광, 숙박 등 업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

기관, 기업체 등 사업장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고 일회용 사무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제71조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유지·운영 업체 또는 슬러지 처리업체는 반드시 슬러지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처리된 슬러지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한다. 슬러지의 이동과정, 용도, 용량 등을 추적·기록해야 하며 도농 배수 주무부서,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농 배수 주무부서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도농 배수와 오수 처리 계획에 포함시키고 슬러지·오수처리시설 동시에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종합 처리를 장려한다. 오수처리 비용징수 표준과 보상범위는 반드시 슬러지 처리비용과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비용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도농 오수 처리시설에서 생성된 슬러지와 처리된 슬러지를 무단으로 투기, 적치, 폐기 또는 흘려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표준을 초과한 중금속, 기타 독성 및 유해물질이 함량된 슬러지를 농지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체 청정지역을 준설⁶⁾, 확장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준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73조 각급에 있는 실험실과 설립업체는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실험실 고체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해야 한다. 실험실 고체폐기물이 위험 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위험 폐기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6장 위험폐기물

제74조 위험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는 동 장(제6장 위험폐기물)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 장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본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험 폐기물 식별표준, 식별방법, 식별표시 및 식별업체 관리 요구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는 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위험폐기물의 위해특성 및 발생량에 따라 환경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단계별 분류하여 관리한다. 정보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폐기물 이송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 공유한다.

제76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반드시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장소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위험폐기물의 처리수요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장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해당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위험폐기물의 집중 처리시설·장소 건설계획은 관련 산업협회, 산업체, 전문가, 대중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장소를 통합하여 건설하는 등 지역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6) 준설(疏浚, dredging) : 항만·항로·강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를 뜻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12.검색)

제77조 위험폐기물 용기와 포장,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를 위한 시설,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마련해야 한다.

제78조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국가 위험폐기물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이동과정, 저장, 폐기 관련 자료를 보고한다.

제77조에서 규정한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에는 위험폐기물 발생량과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및 위험폐기물의 저장, 이용, 처리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의 소재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에서 이미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은 경우, 오염물질 배출 허가 관리 제도의 규정으로 집행한다.

제79조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과 환경보호 표준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저장, 활용, 처리해야 하고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적치해서는 안 된다.

제80조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활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아닌 곳의 영업활동은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허가 받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1조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처리를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 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함께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위험폐기물을 1년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증을 발급받은 생태환경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82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의 전자 또는 종이형태의 운송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타 성·자치구·직할시에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 반드시 위험폐기물을 해당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반출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입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동의를 받은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위험폐기물 운송에 대한 승인한다. 승인정보를 해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통지하고 승인 없이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 운송관리는 전체 과정을 관리하면서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국무원 교통운송 주무부서, 공안부와 함께 수립한다.

제83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물 운송 관리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승객을 동일한 운송 수단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4조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제거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 위험폐기물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가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86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인해 위험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 사업단위는 즉시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오염물질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사업체와 거주자에게 통보하고 소재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87조 위험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증거 또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나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반드시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정부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88조 중점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장소가 철거되기 전에 운영업체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설이나 현장에 대해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거비용은 투자

예산 또는 생산 비용에 포함되어 사전에 준비하여 중점 위험 폐기물의 집중 처리 시설·장소의 철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 주무부서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협업체 결정한다.

제89조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해 위험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0조 의료폐기물은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에 따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건강, 생태환경 등 주무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처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중들의 건강에 위협과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의료위생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기업 사업단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분류, 수집하여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업체는 반드시 제때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관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침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1조 중대형 전염병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의료 폐기물 및 기타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차량, 장소, 처리시설, 방호물자를 보장해야 한다. 위생건강, 생태환경, 환경위생, 교통운송 등 주무부서는 반드시 서로 협력하여 법에 따라 비상대응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장 보장조치

제92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국토 공간 계획이나 관련 전문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위험폐기물 등 고체폐기물의 적환장, 집중처리 등 시설에 대한 건설 수요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적환, 집중 처리 등의 시설에 대한 용지를 보장해야 한다.

제9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도움이 되는 경제, 기술,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지원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산업화, 규모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94조 국가는 과학연구단체,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 고체폐기물 이용업체, 고체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장려·지원하여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집중처리를 위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제95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강화하고, 사업권한 분리계획(事权划分)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여 사용해야 한다.

- (1)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 (2) 생활쓰레기 분류
- (3) 고체폐기물 집중 처리시설 건설
- (4) 중대형 전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 및 기타 위험 폐기물의 비상 처리
- (5)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자금의 사용은 반드시 성과관리 및 감사 감독을 강화하여 자금의 사용 효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96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사회각층에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지원한다.

제97조 국가는 녹색금융을 발전시켜 금융기관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제98조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각층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기부자에게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

제99조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인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0조 국가는 개인·기업 사업단위에 종합이용 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부 구매과정에서 반드시 종합이용 제품과 재활용 제품을 우선으로 구입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101조 생태환경 주무부서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감독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의해 시정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 (1) 법률에 따라 행정 허가증이나 승인 문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2) 불법행위 은폐하는 경우
- (3) 법에 따라 차압·압류하지 않은 경우
- (4)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은 경우
- (5)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이득을 위한 과실 등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본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상급 주무부서가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2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은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영업중지나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 (1) 고체폐기물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업체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정보를 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 (2)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설비 미(未) 설치·사용,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3) 기한 내에 교체해야 할 노후 설비 리스트에 포함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 (4) 생태보호 레드라인 지역, 영구기초 농지 집중지역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 공업 고체폐기물이나 및 위험폐기물의 집중 저장, 이용, 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와 생활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는 경우
- (5)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고체폐기물을 반출하여 저장, 처리하는 경우
- (6)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에서 등록되지 않은 고체폐기물을 반출하여 이용할 경우
- (7) 무단으로 공업 고체폐기물을 투기, 적치, 폐기 또는 흘려버리거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공업 고체폐기물이 확산, 손실, 누출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 (8)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가 고체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을 경우
- (9)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가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공업 고체폐기물을 운송, 이용 또는 처리하도록 위탁할 경우

- (10) 공업 고체폐기물을 저장할 때 국가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경우
- (11)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고체폐기물 관리의 기타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할 경우

제102조 제1항, 제8항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5~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위반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항을 위반할 경우, 1~3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처리비용이 1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최대 10만 위안으로 산정한다. 제11항을 위반할 경우, 다른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3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법 집행 인력을 지연, 포위, 구금 등 방식으로 감독을 거절, 저항하거나 검사를 받을 때 허위로 처리한 경우가 있으면 생태환경 주무부서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시정 명령하고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원이나 기타 책임자는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4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공업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킬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 생산제한, 생산중단을 명령하고,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111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에서 시정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은 몰수한다.

- (1)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포살, 적치, 소각하는 경우
-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무단으로 폐쇄, 중지, 철거하는 경우
- (3) 시공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제거, 운송하지 않은 경우
- (4) 시공업체가 건설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 방치, 적치하거나 규정에 따라 건설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을 사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 (5)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수거하는 업체와 생산경영자는 무해화 처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축 및 가금류 농장 또는 사육업체는 가축과 가금류에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7) 운송 중에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제1항,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제1항, 제5항, 제7항에 해당할 경우 1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무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해당 업체에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제112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은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정지 및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식별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위험폐기물 관련 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위험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 적치하는 경우

(4) 위험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나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위탁해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운송서류를 작성·운영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위험폐기물을 무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6)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리하지 않거나 위험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7) 안전성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특성을 가진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집, 저장, 운송, 처리하는 경우

(8) 위험폐기물을 승객과 같은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9) 오염제거 처리 없이 수집, 저장, 운송, 처리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의 분산, 유실, 누출, 기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11) 운송과정에 위험폐기물을 폐기, 유기하는 경우

(12) 위험폐기물 사고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에 해당될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에 해당될 경우, 처리비용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처리비용이 20만 위안 이하인 경우 20만 위안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제113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 발생자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에서 대신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업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처리비용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제114조 허가증이 없이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에 종사하는 업체는 생태환경 주무부서에서 시정명령 및 100만~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정지 및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및 기타 담당자에게는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증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생산·정비를 제한하며 50만~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및 기타 담당자에게는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정지 및 폐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5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 고체폐기물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고체폐기물을 반송하고 50만~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송인은 본 법률에서 규정한 고체폐기물의 반환 및 처리에 대해 수입업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제116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해 위험 폐기물을 운송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위험 폐기물의 반송을 명령하고 50만~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17조 이미 불법으로 유입된 고체폐기물에 대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세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세관은 본 법 제115조에 의거해 처벌을 결정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수입업자에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제118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사고를 유발하면 법에 따라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생태환경 주무부서에서 본 조항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조치를 명령한다. 고체폐기물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폐쇄 명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형이나 특대형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및 기타 담당자에게는 전년도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19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을 배출하여 벌금,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따라 날짜별로 연속적으로 가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120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기타 담당자에게 10일~15일을 구류할 수 있다. 상황이 경미한 경우 5일~10일 구류한다.

- (1) 고체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 적치, 폐기, 방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2) 생태보호 레드라인, 영구기초농지 집중구역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 공업 고체폐기물 및 위험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리하는 시설·장소나 생활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는 경우
- (3) 위험폐기물을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제공·위탁해 적치, 이용, 처리하는 경우
- (4)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증 내용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 (5) 위험폐기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 (6)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의 분실, 손실, 누출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21조 고체폐기물이 환경을 오염하고 생태를 파괴하여 국가의 이익과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

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22조 고체폐기물이 환경을 오염하고 생태를 파괴하여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구가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나 지정된 부서, 기관이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를 초래한 업체나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적발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반송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은 해당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제123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개인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9장 부칙

제124조 본 법에서 적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고체폐기물이란 생산, 생활과 기타 활동 중에 발생한 본래의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이용가치가 상실되지 않았지만 버려지거나 방치된 고체, 반고체, 용기에 담긴 물품, 물질 및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에 포함되는 물품, 물질을 의미한다.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고 국가 제품의 품질표준에 부합해 대중의 건강과 생태 안전을 해치지 않거나 고체폐기물 식별기준, 식별절차에 따라 고체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것은 제외된다.
- (2) 공업 고체폐기물은 공업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 (3) 생활쓰레기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 및 법령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업체, 시공업체에서 신축, 재건축, 증축, 철거한 각종 건물, 구조물, 파이프 및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대상 모래, 폐기 대상재료와 기타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 (5) 농업 고체폐기물이란 농업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 (6) 위험폐기물이란 국가 위험 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되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위험 폐기물 식별기준 및 식별방법에 따라 식별된 유해 특성을 가진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 (7) 저장은 특정 시설 또는 장소에 고체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8) 이용은 고체 폐기물에서 물질을 원료 또는 연료로 추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9) 처리는 고체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다른 고체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미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수량과 부피를 줄여 그 위험 성분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며, 환경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매립장에 고체폐기물을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25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는 본 법을 적용한다. 단, 수체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 방지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제126조 본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GB 18599-2020)

2.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

(GB 18599-2020, 185299-2001 대체)

생태환경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

(2020-11-26 발표 / 2021-07-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

목 차

서언	35
1. 적용범위	37
2. 규범성 인용문건	37
3. 전문용어와 정의	38
4. 저장장소와 매립장 부지선정 요구사항	40
5. 저장장소와 매립장 기술 요구사항	40
6. 입장(入場) 요구사항	42
7. 저장장소와 매립장 운영 요구사항	43
8. 충전 및 채굴적 충전 시 오염통제 요구사항	44
9. 폐쇄 및 토지 개간 요구사항	44
10. 오염물 측정 요구사항	45
11. 실시 및 관리감독	48
부록 A (자료성 부록)단층 인공 복합 차수층 시스템 설명	49

서 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물 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등 법규를 철저히 관철하여, 환경오염방지, 생태환경 품질개선,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 매립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표준을 제정한다.

본 표준은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매립장 부지선정, 건설, 운영, 봉쇄, 토지 간척 등 과정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저장, 매립처리를 대체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충전⁷⁾ 및 재이용, 환경보호 요구, 모니터링 요구·실시, 관리 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은 강제성이다.

본 표준은 2001년 제정된 후 이번이 처음 수정된 것이다.

본 표준의 주요 수정내용:

- 표준명칭을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으로 수정
-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의 저장장소와 매립장에 대한 정의 규정
- 제 I 류 및 제 II 류 일반 공업고체폐기물 정의 규정
-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와 매립장 장소선택 요구에 대한 세분화
-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충전, 재이용 오염물질 통제기술 요구 증가
-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매립장의 운영기간, 폐쇄 및 후기 관리 오염 통제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개선
-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와 매립장 토지 개간⁸⁾ 오염 통제기술에 대한 요구 추가

본 표준의 부록A는 자료성 부록이다.

본 표준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제한치는 기본 요구사항이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기·수질오염물질 통제 관련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해당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본 표준에서 이미 규정된 대기·수질오염물질 통제 프로젝트는 본 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7) 충전(充填) : 어떤 물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내부의 빈 공간에 충분히 메우는 것이다. / 출처 : 바이두백과 번역(2021.5.10.검색)

8) 토지 개간(土地复垦) : 광물자원과 토지관리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광산 건설과 생산과정에서 훼손·함몰 등으로 훼손된 토지에 대해 채광권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번역(2021.4.29.검색)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

본 표준은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사(化学品司), 법규 및 표준사(法规与标准司)에서 제정하였다.

본 표준의 주요 기안단위(起草单位) : 중국환경과학연구원(中国环境科学研究院),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중제능청결기술발전유한공사(中节能清洁技术发展有限公司),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기술센터(生态环境部固体废物与化学品管理技术中心)이다.

본 표준은 2020년 11월 26일 생태환경부의 비준을 받았다.

본 표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표준이 시행되는 날부터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처리장 오염물질 통제표준>(GB 18599-2001)은 폐지된다. 각 지역은 소재지의 생태환경보호 수요와 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본 표준을 시행하도록 한다.

본 표준은 생태환경부에서 해석권을 가진다.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매립장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토지 개간 등 과정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규정했으며, 저장과 매립처리를 대체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충전 및 채굴적 충전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검측요구, 실시·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신축, 개축, 증축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의 저장장소, 매립장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토지 개간과 관련된 오염통제와 환경관리에 적용된다. 기존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매립장의 운영, 폐쇄, 토지 개간에 대한 오염통제와 환경관리에 적용하며, 저장과 매립처리를 대체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매립지의 충전 및 재이용하는 환경통제나 환경관리에 적용한다.

특정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은 기존에 발표된 국가 환경보호 표준에 따른다.

창고, 포장도구(켄, 통, 포장주머니 등)를 이용한 일반 공업 고체 폐기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통제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저장과정은 반드시 누설방지, 빗물방지, 분진 방지 등 환경보호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2. 규범성 인용문건

아래 문건은 본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날짜가 표기한 인용문서는 날짜를 기입한 표준을 적용한다. 날짜를 표기하지 않은 문건은 최신 버전을 본 표준에 적용하였다.

GB 8978	오수종합배출표준
GB 12348	공업기업 공장주변 환경소음 배출 표준
GB 14554	악취오염물 배출표준
GB 15562.2	환경보호 표지-고체폐기물저장(처리)장
GB 15618	토양환경품질 농업용 토양오염위험 통제표준(시행)
GB 16297	대기오염물 종합배출표준
GB 16889	생활쓰레기 매립장 오염통제 표준
GB 36600	토양환경품질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 통제표준(시행)
GB/T 14848	지하수 품질표준
GB/T 15432	환경공기 총 부유입자의 측정 중량법
GB/T 17643	토목공정 합성재료 폴리에틸렌 지오멤브레인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매립 오염통제 표준

HJ 25.3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 평가기술 가이드라인
HJ 91.1	오수 측정기술 규범
HJ/T 164	지하수 환경측정 기술규범
HJ 557	고체 폐기물 침출독성 침출방법 horizontal vibration method
HJ 761	고체폐기물 유기질의 측정 강열감량법
HJ 819	오염배출업체 자체검측기술 가이드 총칙
NY/T 1121.16	토양검측 제 16 부분: 토양 수용성염 총량의 측정
TD/T1036	토지 개간 품질통제표준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 공개방법>(원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 31 호)	
<환경측정관리방법>(원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 39 호)	

<참고사항>

- GB : 국가표준(国家标准, Guo jia Biao zhun)의 약자
- GB/T : 국가표준 권장·추천(国家标准推荐, Guo jia Biao zhun Tui jian)의 약자
- HJ : 환경표준(环境标准, HuanJiang biao zhun)의 약자
- NY/T : 농업표준 권장·추천(农业行业推荐, Nong Ye biao zhun Tui jian)의 약자
- TD/T : 토지관리산업표준(管理行业标准, Tu Di guan li hang ye tui jian)의 약자

3. 전문용어와 정의

3.1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기업이 공업 생산과정에서 생산되었지만 위험폐기물이 아닌 공업 고체폐기물이다.

3.2 저장 storage

고체폐기물을 임시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3 매립 landfill

고체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환경보호규정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3.4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storage facility

임시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을 적치하는 토지 저장시설을 말한다. 폐쇄 후의 저장장소는 매립장 관리방법을 적용한다.

3.5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매립장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landfill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최종 처리하는 매립시설이다.

3.6 제 I 류 일반 고체폐기물 class 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HJ557 규정에 따라 채취한 침출액 중 임의의 오염물질 농도가 모두 GB8978에서 규정하는 최고허용배출농도(제2류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 배출농도는 1급 표준에 따라 집행)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pH값이 6~9 범위 내에 있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이다.

3.7 제Ⅱ류 일반 공업고체폐기물 class I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HJ557 규정에 따라 채취한 침출액 중 일종 이상의 특징오염물 농도가 GB8978에서 규정하는 최고허용배출농도(제2류 오염물 최고 허용 배출농도는 1급 표준에 따라 집행)를 초과했거나 pH값이 6~9 범위 이외에 있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이다.

3.8 I류 시설 class 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storage and landfill facility

본 표준 6.1에서 규정된 각종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및 관련 오염통제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및 매립장이다.

3.9 Ⅱ류 장소 class I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storage and landfill facility

본 표준 6.2, 6.3에서 규정된 각종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및 관련 오염통제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및 매립장이다.

3.10 충전 mining with backfilling

광석 채굴 공법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변 암석 지탱, 암석 이동 방지, 지압 공제를 목적으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을 매립 재료로 이용해 광석을 채굴해 낸 빈 공간을 메우는 활동이다.

3.11 채굴적 충전⁹⁾ backfilling

채간, 경관 복구, 건설용지·농업용지 평탄화 및 지표면의 함몰을 방지하기 위한 지면 보호, 등 프로젝트에서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땅속, 모래, 돌 등의 생산자재를 지하 채공 공간, 노천 채굴공간, 채토장, 천연 구덩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3.12 천연 기초층 native foundation

침투를 막는 하단부에 위치하며 무연고 암석토층이다.

3.13 인공 차수층 artificial liner

침수물이 토양 및 지하수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 차수층이다.

3.14 단층 인공 복합 차수층 single composite liner system

단층 인공 복합재료 차수층과 점토류 차수층으로 구성된 차수층으로, 그 구조는 부록A를 참고하기 바란다.

3.15 호환성 compatibility

모종의 고체폐기물이 기타 고체폐기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고, 연소 또는 폭발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장, 매립에 불리한 영향을 일으키는 화학반응과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채굴적 충전(採掘跡充填) 광업 광석, 석탄 채굴 현장을 경도 굴진이나 선광(選鑛)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으로 메우는 일. 암석의 붕괴, 지표의 침하, 석탄의 자연 발화 따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발췌(2021.7.1. 검색)

3.16 인공 차수층 완전성 검사 artificial liner integrity testing

전기법 및 기타 방법으로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박막 등 인공합성재료의 파손 여부 및 파손위치를 검측 한다.

3.17 폐쇄 closure

저장장소 및 매립장 사용을 중지한 후 이를 닫아버리는 조치를 말한다. 폐석장에 대한 폐쇄는 폐고(閉庫)라 한다.

4. 저장장소와 매립장 부지선정 요구사항

4.1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매립장의 부지 선정은 환경보호법 법률법규 및 관련 법정계획(法定規划)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4.2 저장장소, 매립장의 위치와 주변 거주지와의 거리는 환경영향평가 문서 및 심사허가 의견에 따라 정해야 한다.

4.3 저장장소, 매립장은 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 영구기본농지(永久基本農田) 집중 구역과 기타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

4.4 저장장소, 매립장은 활발한 지질단층, 중유동¹⁰⁾ 구역, 자연경사, 산사태 영향 구역, 습지 등을 피해야 한다.

4.5 저장장소, 매립장은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최고 수위선 이하의 갯벌, 비탈길 및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장기계획 중인 저수지 등 인공 저수시설의 침몰구역과 보호구역 내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4.6 상기 부지선정 규정은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의 충전과 채굴적 충전에 적용하지 않는다.

5. 저장장소와 매립장 기술 요구사항

5.1 일반규정

5.1.1 건설, 운영, 폐쇄 등 오염통제 기술 요구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장장소, 매립장은 I류와 II류 장소로 구분한다.

5.1.2 저장장소와 매립장의 홍수방지 표준은 재현기간¹¹⁾이 50년 이상 되는 홍수 수위를 설계한다. 단,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보다 더 높은 요구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5.1.3 저장장소와 매립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한다.

10) 중유동(溶洞) :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를 용해하여 생긴 동굴. 카르스트 지형의 하나로, 천장에 중유석이 달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 석순을 만들어 경관을 이룬다.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2021.5.17.검색)

11) 재현기간(重現期) : 예를 들면, 홍수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면 몇 년에 한 번밖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규모의 홍수라고 하는 확률적인 취급 방법에서 이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재현기간이라 하며 "확률년"이라고도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17.검색)

- a) 침출액 방지시스템, 침출액 수집과 배출 시스템
- b) 우수·오수 분리시스템
- c) 분석시험과 환경측정 시스템
- d) 공용공정과 부대시설
- e) 지하수 배출시스템과 폐수 처리시스템(경우에 따라 선택적 설정)

5.1.4 저장장소와 매립장 시공방안에는 시공품질 보증과 통제내용을 포함하여, 준공 시 환경보호 검수 근거로 주요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조항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5.1.5 저장장소와 매립장은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보고서, 전체준공도, 모든 자재의 현장 및 실험실 검사보고서를 보존해야 한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막을 인공합성 재료로 사용하는 저장장소나 매립장은 삼투방지층 완전성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재료는 시공품질보증서와 준공 환경보호 검수의 근거가 된다.

5.1.6 저장장소와 매립장 침출액 수집조의 침출방지요구는 저장장소와 매립장에 대한 침출을 방지하는 요구사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1.7 저장장소는 본 표준 규정의 오염통제 기술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 외 설계, 시공, 운영, 폐쇄 등은 관련 행정 법규 규정이나 국가 및 관련 산업의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1.8 식품제조업, 방직산업, 의류산업, 제지, 종이제품 산업, 농·식품가공 산업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 중 생성되는 생활쓰레기와 유사한 공업 고체폐기물 및 유기질 함량이 5%를 초과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석탄폐석 제외)을 직접 저장·매립할 경우, 반드시 GB 16889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 I류 장소 기술요구

5.2.1 천연 기초층의 포화 투수계수¹²⁾가 $1 \times 10^{-5} \text{cm/s}$ 이하 및 두께 0.75m 이하일 경우, 천연 기초층은 침투를 방지하는 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

5.2.2 천연 기초층이 5.2.1 조항의 침출 방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변성 압축 점토(粘土)류 라이닝 또는 동급 이상의 물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는 기타 재료로 최소 투수계수 $1 \times 10^{-5} \text{cm/s}$ 및 두께 0.75m의 천연 기초층에 해당되어야 한다.

5.3 II류 장소 기술 요구

12) 투수계수(滲透系数, hydraulic conductivity) : 표준온도(15°C)에서 단위등수경사에 의하여 다공성 재료의 단위면적을 직각으로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정상류 상태의 수량으로서, 물이 통과하는 속도, 즉 통과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cm/sec로 나타낸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18.검색)

5.3.1 II류 장소는 단층 인공 복합 차수층을 침출방지층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a) 인공 합성재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박막을 사용하며, 두께 1.5mm이상, GB/T 17643에 규정된 기술지표를 만족시켜야 한다. 기타 인공 복합재료를 사용할 경우 침출방지 성능은 최소 1.5mm 고밀도 폴리에틸렌 막의 침투 성능을 갖춰야 한다.
- b) 점토 차수층 두께는 0.75m 이상이며, 압착, 인공개량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포화 투수계수는 $1 \times 10^{-7} \text{cm/s}$ 이상이면 안 된다. 기타 점토류 침수방지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급 이상의 투수계수 효과를 갖춰야 한다.

5.3.2 II류 장소 기초층 표면은 지하수 연간 최고 수위와 1.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현지 구역의 기초층 표면과 지하수 연간 최고 수위가 1.5m 미만일 경우, 지하수 배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하수 배출시스템은 II류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기간 동안 지하수 수위가 기초층 표면보다 1.5m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5.3.4 인공 합성재료 차수층, 침출액 수집·배출시스템 시공은 점토 차수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입장(入场) 요구사항

6.1 I류 장소로 유입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 a) 제I류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제II류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I류 일반 공업고체폐기물에 귀속시켰을 경우를 포함)인 경우
- b) 유기질 함량이 2%(석탄폐석 제외) 미만인 경우, 측정방법은 HJ761에 따름
- c) 수용성 염분 총량이 2% 미만일 경우, 측정방법은 NY/T 1121.16에 따름

6.2 II류 장소로 유입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 a) 유기질 함량이 5%(석탄폐석 제외) 미만일 경우, 측정방법은 HJ761에 따름
- b) 수용성 염분 총량이 5% 미만일 경우, 측정방법은 NY/T 1121.16에 따름

6.3 5.1.8에서 규정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처리 후 6.2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II류 장소에 유입해 저장, 매립할 수 있다.

6.4 적합하지 않은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은 분리하여 저장, 매립해야 한다.

6.5 위험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 및 매립장으로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지방 관련 법률법규, 표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7. 저장장소와 매립장 운영 요구사항

7.1 저장장소, 매립장은 운영에 앞서 업체는 반드시 돌발 환경사건의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돌발사건 비상대응 방안에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발생 가능한 환경사건이나 비상대응을 설명해야 한다.

7.2 저장장소, 매립장은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관리 인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기업의 업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7.3 저장장소, 매립장 운영업체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 기록물 관리 등 법률법규에 따라 문서를 정리, 보관해 영구 보존해야 한다. 문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동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a) 부지선정, 탐사, 토지징용, 설계, 시공, 환경평가, 검수 자료
- b) 폐기물 배출원, 종류, 오염특성, 수량, 저장·매립 위치 등 자료
- c)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자료
- d) 침출액, 공정수 총량, 공정 수처리 설비·공정 매개변수 및 처리효과에 대한 기록 자료
- e)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자료
- f) 환경측정 및 긴급처리 자료

7.4 저장장소, 매립장 환경보호 도형 표시는 GB 15562.2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7.5 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저장장소나 매립장은 반드시 구역을 나눠 작업, 덮개 덮기, 분무 등 효과적으로 먼지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석장은 반드시 균일하게 광산을 덮거나 물을 뿌려 먼지가 흩날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7.6 오염물질 배출 통제요구

7.6.1 저장장소, 매립장에서 생성되는 침출액은 GB 8978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집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미 산업, 구역, 지방 오염물질 배출표준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표준에 따라야 한다.

7.6.2 저장장소, 매립장에서 생성되는 무조직 배출원은 GB 16297에 규정된 무조직 배출 제한치에 부합해야 한다.

7.6.3 저장장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악취오염물은 반드시 GB 12348, GB 1455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8. 충전 및 채굴적 충전 시 오염통제 요구사항

8.1 제I류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충전·채굴적 충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a) 플라이 애쉬(fly ash)는 광산구역의 광석을 채굴해 낸 채공 공간에서 충전·채굴적 충전해야 한다.
- b) 석탄재는 석탄채취 광정(矿井), 광갱 등 채공구역에서 충전·채굴적 충전해야 한다.
- c) 미석, 광산폐석 등 원 광산 채굴 지역에 충전·채굴적 충전해야 한다.

8.2 제II류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및 8.1의 충전·채굴적 충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I류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은 충전·채굴적 충전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HJ 25.3 등 관련 표준에 따라 환경 리스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지표수, 주변 토양 환경오염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환경 위험을 낮춰야 한다. 충전·채굴적 충전을 완료한 후,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 지표수, 지하수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 빈도는 최소 1회/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8.3 충전재료 중 충전에 필요한 첨가물을 제외한 다른 고체 폐기물을 섞지 말아야 한다.

8.4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채굴적 충전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즉시 토지 개간을 실시해야 한다. 토지 개간은 본 표준 9.9 규정에 따른다.

8.5 식품·방직·복장·제지·종이제품 제조업, 농부식품 가공업 등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중 생성된 생활쓰레기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및 기타 유기물질 함량이 5%를 초과하는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석탄 부스러기 제외)은 충전·채굴적 충전 작업을 할 수 없다.

9. 폐쇄 및 토지 개간 요구사항

9.1 저장장소나 매립장의 서비스기간 만료되거나 더 이상 신규 저장, 매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년 내에 폐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상응한 오염방지 조치를 실행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폐쇄 계획은 기간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폐석장의 폐쇄 기간과 폐쇄과정은 폐고(闭库) 관련 행정법규와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9.2** 저장장소, 매립장을 폐쇄할 경우, 폐쇄장소의 경사도를 조절해 빗물이 침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3** I류 장소의 폐쇄는 흙을 이용하여 덮어야 하고 두께는 고체폐기물 입자크기와 심어지는 식물 종류에 따라 확정한다.
- 9.4** II류 장소의 폐쇄 구조는 차수층, 우수 배출층, 흙토 피복층을 포함해야 한다. 흙토 피복층의 두께는 향후 종식할 식물 종류와 차수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확정한다.
- 9.5** 폐쇄 후 피복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피복층의 불균형으로 인한 침강,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9.6** 폐쇄 후 저장장소, 매립장은 표시물을 설치해 폐쇄 시간과 해당 토지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9.7** 폐쇄 후 침출액 처리시스템, 폐수 배출 측정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2년 동안 침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된 침출액을 처리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배출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 9.8** 폐쇄 후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에 대해 채굴, 재이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9.9** 저장장소, 매립장 폐쇄를 완성한 후 현지 지형조건, 수자원 및 표면 토양자원 등 자연환경조건과 사회발전 수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개간할 수 있다. 토지 개간 실시과정은 TD/T 1036에서 규정한 토지 개간 품질 통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토지 개간 후 건설부지로 사용할 경우, GB 36600의 규정에 충족해야 한다. 만약 농업용지로 사용할 경우, GB 15618의 규정도 함께 부합해야 한다.
- 9.10** 오랫동안 적치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장소는 환경위험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평가하며 평가완료 후 폐쇄나 토지 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 오염물 측정 요구사항

10.1 일반 규정

10.1.1 기업은 반드시 관련 법률과 <환경모니터링 관리방법>, <기업 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방법> 등 규정에 따라 기업 모니터링과 측정방안을 수립한다. 오염물질 배출현황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10.1.2 기업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운반하도록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이나 표준에 따라야 한다.

10.1.3 기업은 반드시 환경모니터링 관리규정과 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구적인 샘플링 채취구역, 샘플링 테스트 플랫폼과 오염물질 배출구 표지를 설계, 건설, 유지해야 한다.

10.2 폐수 오염물질 모니터링 요구사항

10.2.1 샘플링 지점설치 및 샘플링 방법은 HJ 91.1 규정에 따른다.

10.2.2 침출액이나 처리 후 배출되는 폐수 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주기는 폐기물 특성에 따라 피복층과 강수 등 조건에 의해 최소 1회/월로 하며, 오염물질 모니터링 분석방법은 GB 8978 규정에 따른다.

10.3 지하수 모니터링 요구사항

10.3.1 저장장소, 매립장에 투입되기 전 기업은 반드시 지하수의 본래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10.3.2 지하수 관측정¹³⁾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 a) 지하수가 모니터링 장소로 유입되기 전 상·하류에 각 1개씩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오염물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최소 1개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수 배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하수 메인 파이프 배출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 배출시스템의 수질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 b) 카르스트¹⁴⁾ 발달지역 및 환경영향평가에 지하수 평가등급을 1급으로 지정된 저장장소나 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하류에 관측정 설치 밀도를 높여야 한다.
- c) 지하수 함수층이 깊이 매장되었거나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반암 산간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하수 관측정의 수량을 줄일 수 있다.
- d) 관측정의 위치나 깊이는 장소의 수리지질학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 e) 관측정의 건설과 관리는 반드시 HJ/T 164의 기술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f) 기존 지하수는 우물, 관측정, 탐측정이 이를 충족시킬 경우, 지하수 관측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관측정(监测井, monitoring well) : 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파놓은 샘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19.검색)

14) 카르스트(岩溶, KARST) : 화학적으로 용해하여 침식되어 나타나는 지형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19.검색)

10.3.3 저장장소, 매립장의 지하수 모니터링 빈도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 a) 운영기간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측정횟수를 최소 분기별 1회 실시(1회당 2번 측정)해야 하며, 측정 간격은 1개월 이상이며,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만약 주변에 환경위험에 민감한 지역이 있는 경우, 측정횟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측정위치와 횟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된 경우, 즉시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b) 폐쇄 후 지하수 측정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최소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며, 지하수의 수질이 2년 연속 기본 표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실시한다.

10.3.4 지하수 측정 요소는 기업이 폐기물 저장, 매립의 특성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대표성이 있는 고체폐기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측정 항목은 최소 탁도, pH값, 총용존 고형물, 염소화합물, 질산염, 아질산염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지하수 측정 요소의 분석방법은 GB/T 14848 규정에 따른다.

10.4 지표수 모니터링 요구사항

10.4.1 폐수 배출표준과 환경관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프로젝트 건설, 운영, 폐쇄 후 단계별로 지표수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표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4.2 지표수 측정위치, 분석방법, 측정횟수는 반드시 HJ 819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카르스트 지역은 지표수 측정횟수를 증가해야 한다.

10.5 대기 모니터링 요구사항

10.5.1 무조직 배출되는 측정요소는 기업이 저장, 매립하는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제안해야 하며, 대표성이 있는 고체폐기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샘플링 구역 설치, 샘플링 및 모니터링 방법은 GB 16279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오염원의 방향은 반드시 주요 모니터링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10.5.2 운영기간 중 기업은 자체적으로 측정횟수를 최소 매 분기별 1회씩 실시한다. 측정결과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다시 검측해야 하며, 측정주기는 7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5.3 기업은 주변에 총 부유 분진(TSP) 농도를 측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1년 이상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 TSP 농도 측정방법은 GB/T 15432 규정에 따른다.

10.6 토양 모니터링 요구사항

10.6.1 저장장소, 매립장에 투입되기 전, 기업은 반드시 토양의 본래 성질을 측정해야 한다.

10.6.2 1개의 토양 측정 대조 포인트를 설치하며, 대조 포인트는 기업의 생산과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하며 토양의 자연수준¹⁵⁾으로 설정한다.

10.6.3 지형특성, 주요풍향과 지표수 흐름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환경에 민감한 위치에 토양 모니터링 지점을 설치한다.

10.6.4 운영기간 중 토양 모니터링 지점에서 측정횟수는 일반적으로 3년에 1회로 한다. 샘플링 깊이는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깊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며, 표면의 토양을 중심으로 샘플링 한다.

10.6.5 토양 모니터링 요소는 기업이 폐기물 저장, 매립의 특성에 따라 제시하고 반드시 고체폐기물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토양 모니터링 요소의 분석 방법은 GB 36600 규정에 따른다.

11. 실시 및 관리감독

11.1 본 표준은 현급 이상의 생태환경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11.2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은 본 표준의 오염물질 배출통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오염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급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수질오염물질은 현장에서 즉시 시료를 채취하거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배출표준에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련 생태환경보호 관리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조직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은 수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측정 가능한 임의의 1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 값으로 한다.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표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생태환경보호 관리를 조치하는 근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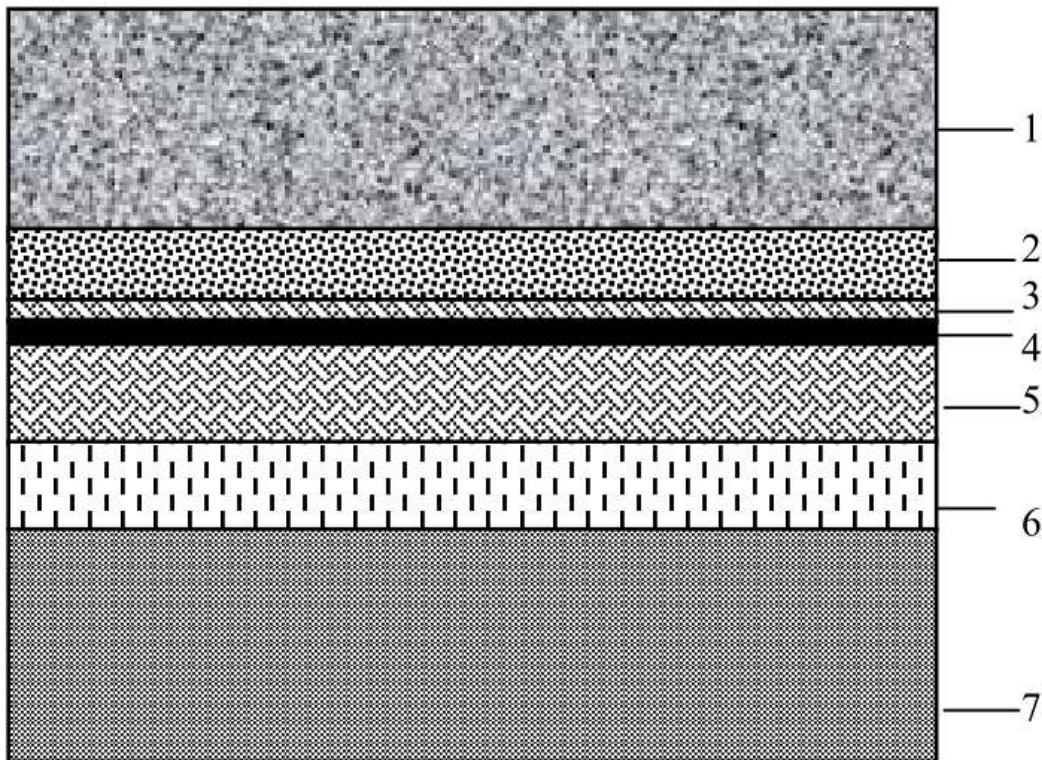
15) 자연수준(背景值, background level) : 대기 오염에 있어 자연원에 의해서 외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뜻하거나, 수질토양오염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의 함량을 말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19.검색)

부록 A (자료성 부록) 단층 인공 복합 차수층 시스템 설명

단층 인공 복합 차수층 시스템(HDPE지질막+점토) 구조는 아래 그림A.1과 같고,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a) 침출액 배출층: 자갈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두께는 30cm이상이어야 한다. 자갈 하단부에는 지질막 복합 배수망을 추가로 건설한다.
- b) 인공 차수층 : HDPE 지질막(geomembrane)을 적용시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 c) 점토 차수층 : 투수계수 $1 \times 10^{-7} \text{cm/s}$ 미만, 두께 75cm 이상이어야 한다.
- d) 보호층 : 부직포(nonwoven geotextile), 보호점토층 및 분말상 미석을 사용할 수 있다.
- e) 지하수 배출층(선택 가능): 자갈(조약돌), 돌 등 재료를 채용한다.
- f) 기초층 : 매립물의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천연 암토층 또는 지반 처리를 거친 안정적인 암석토양층이다.

그림 A.1 단층 인공 복합 차수층 시스템 안내도



<차수층별 설명>

- 1 : 일반 공업고체폐기물, 2 : 침출액 배출층, 3 : 보호층, 4 : 인공 차수층(고밀도 폴리에틸렌박막),
5 : 점토차수층, 6 : 지하수 배출층(선택 가능) 7 : 기초층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HJ 1091-2020)

3. 고체폐기물 재활용 오염방지기술 가이드라인

생태환경부 발표

(2020-01-14 발표 / 2020-01-14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고체폐기물 재활용 오염방지기술 가이드라인

목 차

서언	55
1. 적용범위	57
2. 규범성 인용문건	57
3. 전문용어와 정의	58
4. 총체적 요구사항	59
5. 주요공정 및 오염방지기술 요구사항	60
6. 고체폐기물 건축자재 이용 오염방지기술 요구사항	70
7. 고체폐기물 토지이용 오염방지기술 요구사항	70
8. 모니터링	71

서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등 법률 법규를 실행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생태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고체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을 규범화하기 위해 본 표준을 제정하였다.

본 표준은 고체폐기물 재활용 과정 중 오염방지의 일반적인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지도성 표준이다.

본 표준은 제1차 발표이다.

본 표준은 생태환경부 과학기술·재무사(生态环境部科技与财务司), 법규·표준사(法规与标准司)에서 제정하였다.

본 표준의 주요 초안작성 주체: 중국환경과학연구원(中国环境科学研究院), 칭화대학(清华大学), 스촨대학(四川大学)이다.

본 표준은 생태환경부에서 2020년 1월 13일 비준했다.

본 표준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실시한다.

본 표준은 생태환경부에서 해석권을 가진다.

고체폐기물 재활용 오염방지기술 가이드라인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고체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의 장소선정, 건설, 운행과정의 전체적인 요구사항,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방지기술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기존, 신축, 개축, 증축하는 고체폐기물 재활용공정에 적용되며, 고체폐기물 재활용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설계, 시공, 검수 및 준공 후 운영·관리의 기술로 의거한다.

본 표준은 고체폐기물 재활용 과정 중에서 오염방지의 일반적인 기술 요구사항이며, 특정 고체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전문표준이 있을 경우, 해당 표준에 따른다.

2. 규범성 인용문건

본 표준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였다.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문건은 유효한 버전의 내용을 본 표준에 적용한다.

GB 8172	향진(城镇)쓰레기 농업용 통제표준
GB 8978	오수 종합 배출표준
GB 14554	악취 오염물질 배출표준
GB/T 14848	지하수 품질표준
GB 15603	상용 화학 위험품 저장통칙
GB 15618	토양환경품질 농지 토양오염위험관리 통제표준(시행본)
GB 16297	대기오염물질 종합 배출표준
GB/T 17420	미량원소 엽면시비(Foliar Application)
GB 18484	위험폐기물 소각오염 통제표준
GB 18597	위험폐기물 저장오염 통제표준
GB/T 23486	향진(城镇)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원림녹화용 토질
GB/T 24600	향진(城镇)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토지개량용 토질
GB 30485	시멘트 킬른 고체폐기물 종합 처리 오염통제표준
GB 30760	시멘트 킬른 고체폐기물 종합 처리 기술규범
GB 34330	고체폐기물 감별표준 통칙
GB 36600	토양환경 품질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 통제표준(시행본)
GB 38400	비료 중 유독유해물질의 한계값 표준
GB/Z 2.1	근무장소 모든 유해요소 직업접촉 한계값 제 1 부분: 화학유해요소

GB/Z 2.2	근무장소 모든 유해요소 직업접촉 한계값 제 2 부분: 물리요소
CJ/T 309	향진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농업용 토질
CJ/T 362	향진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임지용 토질
HJ 662	시멘트 킬른 고체폐기물 종합 처리 환경 보호기술 규범
HJ 2042	위험폐기물 처리공정 기술 가이드라인

<참고사항>

- GB/Z : 국가표준 지도성 문건(国家标准指导, Guo jia Biao zhun Zhi dao)의 약자
- CJ/T : 도농건설산업표준 권장·추천(城镇建设行业标准推荐, Cheng Zhen Jian she hang ye biao zhun tui jian)의 약자

3. 전문용어와 정의

아래 전문용어와 정의는 본 표준에 적용한다.

3.1 고체폐기물 solid waste

생산, 생활과 기타 활동 중에서 고유의 이용가치를 상실했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지만 폐기 또는 방치한 고체, 반고체나 용기 속에 넣은 기체상태의 물품, 물질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고체물질 관리에 포함된 물품과 물질이다.

3.2 고체폐기물 재활용 solid waste recycling

고체폐기물을 직접 원료, 연료로 사용, 분리, 순화 등 공법처리 후 물질을 자원화 하여 이용하는 과정으로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료를 대체하는 물질 재활용과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재활용으로 구분한다.

3.3 고체폐기물 건축자재 이용 utilization of solid waste as building materials

고체폐기물로 전통 건축자재 생산원료를 대체하거나 생산원료로 전환하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고체폐기물을 건축자재로 이용하는 주요형태는 고체폐기물을 이용해 시멘트, 벽돌과 기와, 경량 골재, 콘크리트, 유리, 도자기, 도로 기초재료 등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3.4 고체폐기물 토지이용 application of solid waste to land use

고체폐기물에 있는 일부 영양성분을 이용하여 고체폐기물을 직간접적으로 토양 개량제나 비료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고체폐기물을 토지에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생물처리, 가열, 건조 등 전처리와 가공이 필요하다.

3.5 단위공정 process unit

고체폐기물 재활용 공정과정 중 임의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반응, 기계가공, 저장, 오염물질 방지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생산과정을 포함한다.

4. 총체적 요구사항

4.1 고체폐기물의 재활용은 환경 안전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체폐기물 재활용 전체과정에서 환경과 인체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4.2 고체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선택할 경우, 고체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생명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나 산업의 정책 요구사항과 결합해야 한다.

4.3 고체폐기물 재활용 건설프로젝트 장소선정은 지방 환경보호 계획 및 현지 향·진 인민정부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4.4 고체폐기물 재활용 건설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검수, 운영은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 환경보호 책임, 오염배출 허가, 모니터링, 정보공개, 환경 긴급조치 대응방안, 환경보호 기록관리 등 제도가 포함된 환경관리 제도를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4.5 고체폐기물 재활용은 각 기술절차의 환경오염 요소에 대한 식별과 오염물질 통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해야 한다. 오염물질 모니터링 설비를 배치하여 2차 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의 무조직 배출을 피해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6 고체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은 국가·지방 오염물질 배출(통제)표준과 오염물질 배출허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4.7 고체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우, GB 34330 요구사항 또는 국가·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품질 표준이나 국가 오염통제 표준이나 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생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제품의 특정 오염물질 함량에 대한 표준이 포함된다.

국가 오염물질 통제표준 또는 기술규범이 없을 경우, 재활용하는 고체폐기물의 특정 오염물질을 평가하여 고체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해당 오염물질의 확산, 전환 및 생성물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위험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성물질의 유해성분을 식별해야 한다.

정성평가에 따라 생성물질의 환경위험 정량평가를 진행한다. 환경위험 평가의 주요 절차는 환경보호 목표확정, 평가항목 수립, 오염물질 배출모형 구축, 오염물질이 환경 매개체에서 이동, 전환되는 모형 구축, 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환경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5. 주요공정 및 오염방지기술 요구사항

5.1 일반규정

5.1.1 재활용을 진행하기 전에 고체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 세척, 분쇄, 중화반응 등 과정에서 고체폐기물의 유독·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1.2 물리화학적 위험특성이 있는 고체폐기물은 우선 안정화 처리를 해야 한다.

5.1.3 고체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확산·누출·부식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폐기가스처리, 폐수처리, 소음통제 등 오염방지 시설을 배치하고 규정에 따라 주요 환경영향지표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1.4 분진과 유독·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장에는 분진제거와 유독·유해가스 수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분진이 날리는 위치에는 분진흡수 덮개와 분진수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유독·유해기체가 쉽게 발생하는 구역은 흡착(흡수) 전환설비를 설치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유독·유해기체의 농도는 GBZ 2.1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1.5 대기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특정산업은 배출(통제)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산업의 오염물질 배출(통제)표준이 없는 경우, GB 16297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정 오염물질 배출(통제)은 환경영향평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1.6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악취물질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주변의 악취 오염물질 농도는 GB 14554 규정에 따라야 한다.

5.1.7 발생한 응축액, 농축액, 침출액 등 폐액은 효과적으로 수집한 후 집중 처리해야 한다. 처리 후 발생한 폐액은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특정산업 배출(통제)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산업 오염물질 배출(통제)표준이 없는 경우, GB 8978 규정과 환경영향평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1.8 소음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설비운전 시 공장구역 소음은 GB12348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고, 작업장 내 소음은 GBZ 2.2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1.9 발생한 슬러지, 찌꺼기, 폐유 등 고체폐기물은 관리 속성에 따라 구별하여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종합이용 또는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자격과 처리능력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여 종합이용 또는 처리하도록 한다.

5.1.10 위험폐기물 저장, 포장, 처리는 GB 18597 및 HJ 2042 등 위험폐기물 전문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2 세척기술 요구사항

5.2.1 세척은 물, 기타 용제 또는 기체를 이용해 세척 대상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분리, 정화하는 과정이다.

5.2.2 물 또는 기타 용제와 쉽게 인화하는 기체나 유독물질을 쉽게 방출하여 휘발되는 고체폐기물은 세척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5.2.3 세척목적에 따라 고체폐기물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세척하고, 세척과정은 순류¹⁶⁾ 세척이나 역류 세척방식을 채용한다.

5.2.4 고체폐기물 세척설비는 내마모성, 방부식성 등 성능을 갖춰야 한다.

5.3 건조기술 요구사항

5.3.1 건조는 뜨거운 공기, 배출가스, 적외선, 수증기, 열전달유 등을 열원으로 고체 폐기물을 가열·건조하여 고체폐기물에 있는 수분 등 용제를 제거해 체적과 중량을 줄여 처리가 용이하게 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5.3.2 고체폐기물 건조기술은 분무 건조, 유동층 건조(fluidized-bed drying), 기류건조, 회전 원통 건조, 박스형 건조 등을 포함한다.

5.3.3 고체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기타성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건조기술을 선택한다.

용액, 현탁액, 슬러리¹⁷⁾ 폐기물의 건조는 분무 건조기술을 선택해야 하며, 응집이 없는 과립형태 폐기물은 유동층 건조기술을 적용한다. 분말형태나 작은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은 회전 원통 건조기술을 적용하고, 소량의 열민감성¹⁸⁾이나 산화가 쉬운 폐기물은 박스형 건조기술을 적용한다.

5.3.4 건조 전에 고체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명히 하고 건조 매개질의 종류, 건조방법과 건조 설비를 확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리성질 : 주요 구성성분, 함수율, 비열용량¹⁹⁾, 열전도율 등이며,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농도, 점도, 표면장력²⁰⁾ 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16) 순류(顺流) : 물이 순탄하게 제 길을 따라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2021.6.7.검색)

17) 슬러리(浆液, slurry) : 미세한 고체 입자가 액체 중에 현탁 되어 있는 유동성의 진흙 상태의 혼합물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18) 열민감성(热敏性) : 반도체의 전기 전도율이 외계 온도의 고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19) 비열용량(比热容, specific heat capacity) :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C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20) 표면장력(表面张力, surface tension) : 액체상의 물질은 자유로이 팽창할 수 없으므로, 다른 액체나 기체와의 사이에 표면을 생성하게 된다. 이 때 액체표면에 존재하는 장력을 표면장력이라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2) 화학성질 : 열민감성, 독성, 가연성, 산화성, pH값, 흡수성 등이다.

(3) 기타성질 : 연고나 크림형태 폐기물의 점착성, 텍소트로피²¹⁾이다.

5.3.5 다음과 같은 항목은 폐쇄회로 순환 건조설비나 폐기가스 처리시설을 적용해야 하며, 기체나 분말물질이 유출을 막아 대기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 고체폐기물 속에 휘발성 유기물질을 함유한 경우

(2) 고체폐기물 속에 유독·유해 고체 분말형태를 함유한 경우

(3) 고체폐기물 속에 악취류의 물질을 함유한 경우

(4) 고체폐기물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공기 중에서 폭발성 혼합물로 형성되는 경우

(5) 고체폐기물 건조과정에서 산소와 접촉해 산화반응을 쉽게 일으키는 경우

5.3.6 분무 건조시스템은 송풍기 및 각종 펌프를 배치해야 하며 효과적인 진동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5.3.7 건조설비는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여 내부를 청소하여 설비 내 잔류 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5.3.8 고체폐기물의 건조 공정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단독으로 배출해야 할 경우, 폐기가스 수집과 처리설비를 배치해 분진, 악취, 유독·유해기체가 배출하여 2차 오염을 발생 시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5.4 파쇄기술 요구사항

5.4.1 파쇄는 기계 등 외력의 작용으로 고체폐기물 내부의 응집력과 분자간의 작용하는 힘을 파괴하여 고체폐기물을 파열시키는 과정이다. 작은 고체폐기물 입자가 연마 등 방식으로 분말형태로 되는 과정이 연마파쇄라 한다.

5.4.2 고체폐기물 파쇄기술은 해머파쇄, 충격파쇄, 절단파쇄, 조크러셔²²⁾, 원뿔형 파쇄(Cone crushing), 롤러파쇄(Roller crushing), 볼밀²³⁾ 분쇄(Ball milling crushing) 등을 포함한다.

5.4.3 인화성이 뛰어나거나 휘발성 독성물질이 방출되기 쉬운 고체폐기물은 직접 파쇄 처리하면 안 된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액체가 함유된 고체폐기물(폐연산 축전지, 폐용제통 등)은 액체를 제거한 후 파쇄 처리해야 한다. 비호환성 성분이 함유된 고체폐기물을 혼합하여 파쇄해서는 안 된다.

21) 텍소트로피(thixotropy, 触变性) : 고농도의 콜로이드 용액, 고분자 용액에 대하여 흔들어 혼합하는 등 외력을 가하면 유동성을 보이고 외력을 제거하면 유동성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22) 조크러셔(Jaw Crusher, 顎式破碎) : 고정장치와 요동하는 가동치 사이에서 돌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기계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23) 볼밀(ball mill, 球磨) : 광석을 분쇄하기 위하여 볼 모양의 분쇄 매체를 사용하는 회전밀로서 동체의 모양에 따라서 튜브 밀, 코니칼 밀 등으로 나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5.4.4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 고체폐기물 파쇄는 건식으로 하며, 크롬·붕소(Boron) 찌꺼기를 함유한 슬러지 등 고체폐기물 파쇄는 습식파쇄로 진행한다.

5.4.5 고체폐기물 파쇄 처리 전에 제품의 균일성을 보장하고 기타 파쇄물이 혼합되어 파쇄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전처리를 실시한다.

5.4.6 고체폐기물 분마과정은 분진의 입자·휘발성·인화성 등을 엄격하게 제어하여 분진의 폭발을 방지해야 한다.

5.5 분류기술 요구사항

5.5.1 분류기술은 고체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각종 성분이나 후속처리가 필요한 불순물 성분을 수작업 및 기계로 분류해 처리하는 과정이다.

5.5.2 고체폐기물 분류기술은 수작업·수력(水力)·풍력·중력(重力)·자기력(磁力)·전력·와전류²⁴⁾·광화학으로 분류된다.

5.5.3 고체폐기물의 물리화학 특성과 후속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고체폐기물의 분류기술 및 설비를 선택하고 조합한다.

고체폐기물 분류기술은 수작업(생활쓰레기 등 혼합친수성·소수성²⁵⁾ 고체폐기물), 중력(밀도가 높은 고체폐기물), 자기력(자성·非자성류 고체폐기물), 전력(도체·반도체·非도체류 고체폐기물), 와전류(각종 비철금속류 고체폐기물), 광학(광학적 특성의 차이가 큰 고체폐기물)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 외, 경질 고체폐기물 분류는 풍력·전력을 사용하고, 철 화합물 고체폐기물은 자기력·전력 방식, 비철금속은 와전류·수력 분류방법을 적용한다.

5.5.4 고체폐기물 분류 전 전처리를 통해 유독유해 성분이나 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큰 덩어리 형태 고체폐기물은 파쇄·체질²⁶⁾하여 폐기물의 분류특성을 변화시킨다.

5.5.5 생활쓰레기를 수력·자기력·와전류 방식을 이용할 경우, 분류효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기타방식은 분류효율이 70% 미만이다. 또한 수력 분류방식을 사용할 경우, 밀폐순환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5.5.6 분류설비는 접촉·감김 방지, 자체 청결,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을 갖춰야 한다.

5.5.7 고체폐기물을 분류할 경우, 커버/덮개를 추가하여 시스템의 밀폐성을 보장해야 한다.

24) 와전류(Eddy Current, 涡电流) : 도체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전류를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0.검색)

25) 소수성(hydrophobicity, 疏水性) : 물과의 친화력이 적은 성질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26) 체질(Sieving, 筛分) : 체로 가루를 치거나 액체를 거르거나 받는 일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5.6 중화기술 요구사항

5.6.1 중화²⁷⁾는 약품을 넣어 용액의 pH값을 중성으로 조절하는 과정이다.

5.6.2 중화공법은 액체, 슬러지, 슬러리 등 액체나 반고체 상태의 폐기물에 적용되는 pH값을 조절한다. 폐알칼리(산성)액체, 알칼리(산성) 찌꺼기를 이용해 산성(알칼리성) 찌꺼기에 대한 중화반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6.3 산성 폐기물을 물에 용해시킬 경우, 산성 폐기물은 물에 천천히 첨가해야 하며, 물을 산성 폐기물에 직접 부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산성 폐기물이 물과 반응하여 대량의 열을 발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5.6.4 중화공정장치와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내압, 방부식성, 내열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액위계²⁸⁾와 pH값 측정기를 설치하여 액체의 위치와 pH값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5.6.5 처리할 때 부식성 폐기물을 저장할 경우, GB 15603 및 GB 18597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7 응집·침전기술 요구사항

5.7.1 응집은 현탁물 중 액체 상태 매개체 중 침전되지 않은 입자를 크고 가라앉기 쉬운 입자로 응집시키는 과정이다. 침전은 원액 중 하나 또는 몇 가지 성분의 화학 반응을 통해 고체상태 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응집과 침전과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설비에서 진행된다.

5.7.2 고체폐기물 응집·침전방식은 수산화물·황화물·규산염·탄산염·무기 또는 유기물질 배합 침전으로 분류된다.

5.7.3 고체폐기물은 응집·침전 전, 고체폐기물이 균일성 보장과 응집·침전과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처리를 해야 한다.

5.7.4 응집설비, 연결파이프, 배관기, 믹서기 등에는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처리해야 한다.

5.7.5 응집·침전과정에서 pH 값을 철저히 조절해야 한다. 만약 조건이 있다면, pH값 자동제어기를 설치하고 약품첨가를 통해 최적의 응집·침전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5.7.6 휘발성 또는 반휘발성 성분이 있는 고체폐기물 응집·침전조는 반드시 밀폐해야 하고 불씨를 주의하여 독성물질이 배출하거나 폭발, 화재 등 위험을 피해야 한다.

27) 중화(neutralization, 中和) : 산과 염기가 당량씩 반응하여 산 및 염기로서의 성질을 잃는 현상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28) 액위계(liquid-level meter, 液位计) : 용기 속의 액면 위치를 지시하는 장치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5.8 산화·환원기술 요구사항

5.8.1 산화·환원은 산화 또는 환원반응을 통해 고체폐기물에 있는 유독성분의 원자가 상태²⁹⁾를 변화시켜 독성 성질이 없거나 낮춰 화학성질이 안정적인 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산화·환원은 중금속 폐기물, 금속 황화물, 금속 시안화물 등 유독·유해 무기물질의 고체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전처리 해야 한다.

5.8.2 고체폐기물의 산화·환원기술은 습식·건식으로 나뉜다.

습식 산화·환원은 폐액, 슬러지, 슬러리 등 액체나 반고체 형태의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산성법(酸化法)처리는 일반적으로 폐인쇄회로기판 등 고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식 산화·환원방식은 통상적인 고체폐기물 처리에 적용된다.

5.8.3 고체폐기물 산화·환원처리 전, 고체폐기물 입자의 균일성을 보장하고 산화·환원 전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를 해야 한다.

5.8.4 일반적인 산화제는 염소, 차아염소산염, 과산화수소, 과망간산칼륨, 오존 등이 포함된다. 산화제를 사용·저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염소, 차아염소산염을 산화제로 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pH값을 분명하게 제어하여 산화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염소기체의 저장·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 (2) 과산화수소는 시안화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황화수소,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메르캡탄(mercaptan), 페놀(phenol), 아황산염 등 성분이 함유한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과산화수소는 반드시 전용 저장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과산화수소 저장과정에서 분해율이 1% 미만이 되도록 억제제를 첨가해야 한다.
- (3) 과망간산칼륨은 가용성 철분이나 망간을 함유한 산성 폐액 및 페놀류 화합물, 시안화물 등을 포함한 폐기물에 적용된다.
- (4) 오존은 시안화물, 페놀류 화합물, 할로젠 유기화합물 등을 함유한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다.

5.8.5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원제는 이산화황산, 황산철, 아황산염, 수산화붕소나트륨(sodium borohydride), 석탄가루 등이다. 환원제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29) 원자가 상태(valence state, 价态) : 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각 원자의 전자상태를 말한다. 수소원자의 경우 1s 전자 궤도에 원자가 전자가 들어간 바닥상태가 그대로 원자가 상태가 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 (1) 이산화유황, 황산철, 아황산염은 크롬을 함유한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며, pH값과 산화·환원 전위(電位) 제어 반응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 (2) 수산화붕소나트륨은 납, 수은, 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 처리 및 케톤, 유기산, 아미노기 화합물 등 유기화합물 처리에 적합하다.

5.8.6 습식 산화·환원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유입된 기타 물질이 2차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고체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폐기물 입자, 액체·고체비율, pH값, 반응시간 등 공정 매개변수를 확정해야 한다.
- (3) 산화·환원 반응 후 발생하는 찌꺼기의 양을 제어해야 한다.

5.8.7 건식 산화·환원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폐기물 성분에 따라 산화제(또는 환원제)의 용량을 확정하고 고체폐기물과 산화제(또는 환원제)는 산화·환원과정에 들어가기 전 균일하게 혼합해야 한다.
- (2) 회전로(回轉窯)를 사용하여 건식 산화·환원을 진행하는 경우, 회전로에 들어간 공기량을 제어하여 산화·환원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회전로 내 산호와 일산화탄소 함량을 높여 고온 산화·환원반응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3) 건식 산화·환원 시설은 자동제어시스템을 배치하여, 회전로의 회전속도, 원료 투입량, 풍량, 온도 등 운행 매개변수를 제어해야 한다. 기체의 농도, 풍량, 온도 등의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4) 건식 산화·환원 시설은 연기 탈황·탈질·집진 설비를 설치하여 폐기가스 중 분진이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5.8.8 건식 산화·환원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는 분진 수집처리를 해야 하며, 수집된 연기와 분진은 다시 기존의 건식 산화·환원시스템으로 돌아가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자질과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종합이용 또는 처리해야 한다.

5.9 증발 결정(結晶)기술 요구사항

5.9.1 증발결정은 고체폐기물이 용액을 형성한 후 용제(溶劑)를 계속 휘발시켜 용질(溶質)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5.9.2 증발결정은 수용액 또는 유기용액의 증발 농축처리에 적용되며, 열민감성 폐기물이다. 냉각 결정은 결정체의 입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고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큰 입자의 고체폐기물 분리에 적용된다.

5.9.3 고체폐기물을 결정 처리 전, 고체폐기물의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처리 해야 한다.

5.9.4 증발 결정기(結晶器)는 관찰구, 접안렌즈, 세척, 배출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온도, 액위, 압력 등 정보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압력을 받는 용기(증발기, 예열기 등)는 온도, 압력, 액위가 과부하 상태에서 운행 되서는 안 된다. 증발 결정기가 작동될 경우, 물로 접안렌즈를 세척하거나 압력상태에서 접안렌즈의 나사를 조여서는 안 된다. 접안렌즈 교체는 증발 결정기 내 압력이 상압(常压)으로 떨어진 후 진행해야 한다.

5.9.5 증발 결정기 운행과정에서 증발효력이 떨어질 경우, 증발기를 알칼리나 산으로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세척 후 발생하는 산성·알칼리성 폐수는 산·알칼리 회석 탱크에 부어 처리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순환이용 해야 한다.

5.9.6 고체폐기물 증발 결정과정에서 유독성 기체가 발생한 경우, 밀폐장치와 기체수집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5.9.7 증발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액과 점성의 잔여물은 농축, 탈수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우선적으로 회수이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질과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종합이용 및 처리해야 한다.

5.9.8 고체폐기물 증류 재활용 공정 오염통제 요구사항은 은 본 내용을 참고한다.

5.10 소결기술 요구사항

5.10.1 소결은 고체폐기물 입자의 접촉을 통해 유해성분을 고착화하는 열처리 과정이다. 소결은 중금속 폐기물(비소 포함, 수은 제외) 처리에 적용된다.

5.10.2 고체폐기물의 소결기술은 공기흡입과 요로(窯) 내 소결로 나뉜다. 공기흡입 소결은 연속성 소결과 간헐식 소결로 나뉘고, 요로 소결은 회전식 소결과 현탁식(懸浮式) 소결로 분류된다.

5.10.3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소결할 경우, 산화·환원반응 조건, 소결온도 등을 제어해야 하며, 중금속의 활성화를 방지해야 한다.

5.10.4 고체폐기물 소결과정의 공정은 원재료의 운송 횟수를 최소화하고 낙차를 줄여 분진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발생한 분진은 밀폐 및 집진처리 해야 한다.

5.10.5 고체폐기물 소결과정은 반드시 청결생산 공정을 적용해야 하며, 공정설계를 최적화하여 일반 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배출을 동시에 감소시켜야 한다. 다이옥신 등 발생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염소화 물질의 원료를 이용하여 염화칼슘 사용을 감소 시킨다. 원료는 전처리를 통해 오일(油)을 제거하고, 원료의 통기성 증가, 펠레타이징 등 방식을 취한다.

5.10.6 고체폐기물 소결과정은 순환기술을 적용하여 폐기가스의 발생량과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5.10.7 고체폐기물 소결과정은 소음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설계는 반드시 저소음 공정과 설비를 적용해야 하며, 소음이 큰 설비에 대해 방음, 진동방지 등 조치를 취하여 공장 내 소음수준이 GB 12348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5.11 열분해 기술 요구사항

5.11.1 열분해는 무산소 및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체 또는 액체 유기폐기물의 대분자 구조가 절단·파열되어 저분자 구조의 오일가스로 되거나 냉각·분리를 거쳐 경질유(轻质油)나 중질유(重质燃油) 등의 자원화 물질을 얻으면서 동시에 기체나 고체상태의 잔여물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5.11.2 고체폐기물 열분해 기술은 고정상(fixed-bed) 열분해, 이동상(moving bed) 열분해, 회전로 열분해, 유동상(fluidized bed) 열분해 등으로 나뉜다.

5.11.3 고체폐기물을 열분해 하기 전, 폐기물의 열분해 효율향상과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쇄, 분류 등 전처리를 거쳐, 열분해 과정에서 폐기가스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열분해 기술로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함수율은 30% 이하로 해야 한다.

5.11.4 열분해 설비는 조작과정 중 발생하는 기체의 누설을 방지하고, 열분해 설비와 연기배관은 단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온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11.5 열분해로(热解炉)를 가동할 경우, 먼저 열분해로 설계온도까지 상승시킨 후에 고체폐기물을 투입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투입량은 규정된 열분해 처리량에 이를 때까지 점차 증가시키도록 한다. 열분해로를 정지시킬 경우, 고체폐기물 투입을 멈춘 후 즉시 보조 연소시스템을 가동시켜 열분해로 내 고체폐기물을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열분해로는 작동중단 및 가동횟수를 줄여야 한다.

5.11.6 고체폐기물의 열분해 작업 중 집진기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열분해로 운영을 중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11.7 고체폐기물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우선 순환이용을 통해 열분해의 연료로 사용하고 회수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각처리 후 배출한다.

5.11.8 고체폐기물 열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본블랙³⁰⁾ 및 잔여물은 분리, 조립³¹⁾ 등 방법으로 종합이용하고, 분리, 조립과정은 설비를 밀봉하거나 수법(水法) 조립 등으로 카본블랙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수이용이 어려운 잔여물 처리는 본 표준 5.1.9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30) 카본블랙(Carbon black, 碳黑) : 흑색의 미세한 탄소분말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31) 조립(granulation, 造粒) : 미세한 분체 혹은 액상 물질에서 거의 균일한 형상과 크기의 입상 고체를 형성하는 조작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1.검색)

5.12 생물처리기술 요구사항

5.12.1 생물처리는 미생물의 대사활동을 이용하여 유기 고체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5.12.2 고체폐기물의 생물처리기술은 퇴비와 혐기성 소화 등으로 나뉜다.

5.12.3 퇴비공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퇴비원료에 대해 탈수, 탈염, 탄소질소비(C/N비) 조절 등 전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2) 퇴비의 온도와 지속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3) 퇴비 전처리 및 작업장의 악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고체폐기물의 퇴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액은 수집 후 집중 처리해야 한다. 처리된 침출액 반드시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5) 퇴비제품은 GB 8172, GB 38400, GB/T 23486, GB/T 24600, CJ/T 309, CJ/T 362의 관련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12.4 혐기성 소화 공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고체폐기물의 특성, 소재지 기후조건에 따라 습식이나 건식 혐기성 소화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 (2) 소화물질의 탄소질소비, 알칼리도(CaCO_3 로 표기), 함고율 등 지표를 합리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 (3) 혐기성 소화의 온도와 체류시간을 합리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 (4) 발생한 메탄가스액은 효과적으로 수집한 후 집중 처리한다. 처리된 물은 순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5) 혐기성 소화 후 발생한 메탄가스 찌꺼기는 회수이용 한다.
- (6) 메탄가스 슬러리를 액체비료로 사용할 경우, GB/T 17420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12.5 혐기성 소화기(器)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삼투방지, 부패방지, 보온·밀폐성이 우수해야 한다.
- (2) 처리규모, 발효주기, 용기강도 등 요소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확정해야 한다.
- (3) 구조상 재료의 흐름에 유리해야 하며, 정체 시 사각지대 형성을 피해야 한다.
- (4) 소화기에서 재료가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해야 한다.

5.12.6 혐기성 소화 장소는 환기시설과 악취제거, 소음제어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5.12.7 고체폐기물 생물처리 과정에서 미생물 종균제(microbial agent)를 사용할 경우, 생태환경 및 환경위생 관련 주무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합하는 미생물 종균제를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고체폐기물 건축자재 이용 오염방지기술 요구사항

6.1 고체폐기물 건축자재 이용시설은 반드시 폐기가스 처리, 소음·분진방지 처리설비를 갖춰야 한다.

6.2 고체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생산과정이나 제품은 GB 30485, HJ662, GB30760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6.3 고체폐기물을 사용해 벽돌기와, 경량골재, 골재, 유리, 도자기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통제는 관련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표준에 따르며, 관련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GB 30760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6.4 고체폐기물 건축자재 이용과정 중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통제는 반드시 본 표준에서 규정한 재활용 공정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7. 고체폐기물 토지이용 오염방지기술 요구사항

7.1 고체폐기물 토지이용의 전처리 시설은 폐기가스·폐수·소음·분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폐수배출은 GB 8978 규정에 따르고, 폐기가스 배출은 GB 18484, GB 16297, GB 14554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악취 오염물질 농도는 GB 14554 규정에 따르고, 공장구역 소음은 GB 12348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작업장의 분진과 유독유해 기체 배출농도는 GBZ 2.1 규정에 따른다.

7.2 생활 슬러지 토지이용은 GB/T 23486, GB/T 24600, CJ/T 309, CJ/T 362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7.3 고체폐기물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GB 15618, GB 36600, GB/T 14848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구역 내 토양과 지하수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 측정해야 한다.

7.4 고체폐기물 토지이용 과정 중 재활용 공정에 대한 오염통제는 본 표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른다.

8. 모니터링

8.1 고체폐기물 재활용 기업은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해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 빈도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위험폐기물을 처음으로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 제품의 특징, 오염물질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측정한다. 7일 연속 모니터링 결과가 환경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험폐기물의 공급원 및 투여량이 안정되는 범위 내에서 측정 빈도를 주 1회로 줄일 수 있다. 2개월 연속 모니터링 결과가 환경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측정 빈도를 월 1회로 줄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에 이상이 발생했거나 위험폐기물 공급원이 변경되어 재활용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측정 빈도를 다시 하루 1회로 재조정한다.
- (2) 위험폐기물을 제외한 기타 고체폐기물을 처음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제품에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는 매주 3회 이상으로 한다. 14일 연속 모니터링 결과가 모두 환경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공급원 및 투여량이 안정적이면 월 1회로 줄일 수 있다. 3개월 이상 모니터링 결과가 모두 환경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측정 빈도를 연간 1회로 줄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고체폐기물 공급원 변경, 6개월 이상 재활용이 중단되면 다시 주 3회 이상으로 재조정한다.

8.2 고체폐기물 재활용 기업은 고체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장소, 시설, 주변의 대기,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해야 하며, 고체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대기, 토양, 지표수, 지하수에 2차 오염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9호
(2019-03-02 개정·공표 / 2011-01-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목 차

제1장 총칙	77
제2장 관련자 책임	78
제3장 관리감독	79
제4장 법률책임	80
제5장 부칙	81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9호)

2009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1호 발표 2019년 3월 2일 <국무원 행정법규 수정부분 결정>에 따라 수정됨

제1장 총칙

제1조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규범화, 자원의 종합이용 및 순환경제 발전 촉진, 환경보호, 인체건강 보장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는 폐전기전자제품을 해체하여 그 중 추출 물질을 원재료 또는 연료로 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미 발생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수량을 줄여 그 위해성분을 감소시키고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적합한 매립장에 적치되는 것으로, 제품 수리, 리퍼비시³²⁾ 중고제품,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목록>(이하 <목록>)에 등록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처리 및 관련 내용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국무원 자원종합이용 주무부서는 <목록>을 국무원 생태환경·공업정보산업 등 주무부서와 함께 제정·조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도록 한다.

제4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무원 자원종합이용·공업정보산업 주무부서와 함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에 대한 정책 조치를 수립하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재정·시장관리감독·세무·세관 등 주무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제5조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다양한 경로의 회수 및 집중처리 제도를 실시한다.

32) 리퍼비시(翻新, Refurbish) :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제품이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의 오류로 미세한 흠집 등이 있는 제품, 단기 전시용으로 사용했던 제품 등을 보수 및 재포장해 새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4.검색)

제6조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해 자격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구(區)가 있는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업(이하 ‘처리기업’) 자격을 심사한다.

제7조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을 설립하여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전자제품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의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은 반드시 예산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징수, 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주무부서에서 국무원 생태환경·자원종합이용·공업 정보산업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의 징수기준과 보조금 지급기준을 제정할 경우, 전기전자제품 생산기업, 처리기업, 관련 산업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관련 기술표준의 연구 및 신기술, 신공정, 신설비 시범·보급·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조 국가가 수입을 금지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관련자 책임

제10조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 수취인 또는 대리인이 제조·수입한 전기전자 제품은 국가의 전기전자제품 오염통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원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설계방안을 통해 무독·무해나 저(低)독·저(低)해 및 회수이용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또는 제품설명서에는 규정에 따라 유독·유해물질 함량, 회수처리 안내 회수처리 설명 등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 판매자, 유지보수 업체, A/S업체,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사업자에게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를 권장한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자, 유지보수 업체, A/S업체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영업장소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처리자격을 갖춘 처리업체가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전자제품 사용자에게 편의와 신속한 회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업체는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처리자격이 없을 경우,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을 해당 자격을 갖춘 회수업체에 넘겨야 한다.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은 수리·복구를 거쳐 재판매할 경우, 인체건강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눈에 잘 띄도록 중고제품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제13조 기관, 단체(团体), 기업 사업단위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자격이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기밀 관련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국가는 해당 처리업체, 관련 전기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회수경영자 등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처리 하도록 권장한다.

제15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는 반드시 국가의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 노동안전 및 인체건강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가 명문화³³⁾하여 도태시킨 기술·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처리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처리와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17조 처리업체는 반드시 폐전기전자제품의 데이터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区)가 설계된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의 기본 데이터와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이 기본 데이터 보존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제18조 처리업체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 혜택을 받는다.

제19조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저장, 운송, 처리 사업체 및 개인은 국가의 환경보호나 환경위생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관리감독

제20조 국무원 자원종합이용, 시장관리감독, 생태환경, 공업정보산업 등 주무부서는 규정된 책임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33) 명문화(明令化) : 문서로써 명백히 하거나 법률의 조문에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4.검색)

제21조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문은 동급(同级) 자원종합이용, 상무, 공업 정보산업 주무부서와 함께 해당지역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인프라 건설을 도시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해당 경영범위 항목에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가 명시된 기업 사업단위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

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나 개인이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3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 (2)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적절한 이용 또는 처리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처리된 폐전기전자제품에 상응하는 선별, 포장, 기타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안전, 품질, 환경보호와 관련된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제24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에 구(区)가 있는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반드시 서면조사와 현장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나 개인에 대해 유관부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 수취인이나 대리인이 생산·수입한 전기전자제품 또는 제품설명서에 독성, 유해물질 함량, 회수처리에 대한 설명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 사업단위가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영업정지, 폐쇄 등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입을 몰수하며, 5만~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에서 명문화하여 도태시킨 기술과 공법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구가 설계된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취소한다.

제30조 폐전기전자제품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업체가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 미(未)구축, 규정에 따라 기본 데이터와 관련된 상황 미(未)보고, 관련된 사실이 허위 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기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에 구가 있는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업체가 환경모니터링을 구축·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직권남용, 근무태만, 부정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칙

제34조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폐전기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다. 폐전기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은 국가나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표준과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도 따라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집중처리장은 국가 및 해당지역의 공업단지 설계계획과 해당 토지 이용계획, 도농발전계획에 부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제35조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폐차회수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715호
(2019-04-22 발표 / 2019-06-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폐차회수 관리방법

목 차

1. 총칙	87
2. 관련자 책임	87
3. 관리감독	88
4. 법률책임	90
5. 부칙	91

폐차회수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 715호)

<폐차회수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19년 4월 22일

1. 총칙

제1조 폐차 회수를 규범화, 환경보호,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도로교통 안전보장을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폐차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에 규정된 폐기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규정에 속하지 않는 폐차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폐차처리 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국무원은 특정 분야의 노후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권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국무원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는 전국 폐차회수(해체 포함)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국무원 공안, 생태환경, 공업정보화, 교통운송, 시장관리감독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폐차회수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폐차회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폐차 회수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생태환경, 공업정보화, 교통운송, 시장관리감독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폐차회수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2. 관련자 책임

제5조 국가는 폐차 회수업체에 대해 자격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자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회수업체나 개인은 폐차를 회수할 수 없다.

국가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폐차를 회수하도록 장려한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폐차회수 자격인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야 한다.
- (2) 환경보호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강제성 표준이 요구하는 저장, 해체장소, 해체 설비, 시설 및 해체작업 규범을 갖추야 한다.
- (3) 폐차 해체작업이 가능한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제7조 폐차회수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반드시 컴퓨터 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신청인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자격을 인정 받은 폐차회수업체의 명단을 즉시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모든 기관이나 개인은 폐차를 지정된 회수업체에게 이전시켜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관리감독

제9조 폐차회수업체는 회수한 폐차에 대해 자동차 소유인에게 <폐차회수증명서>을 발행하여 자동차의 등기증서, 번호판, 차량 소유증을 회수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예 따라 공인기관 교통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말소 등록해야 하며, 말소증명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폐차회수증명서> 양식은 국무원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의 규정을 따르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은 <폐차회수증명서>를 매매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폐차 회수업체는 매년 폐차에 대한 차종, 번호판, 엔진번호, 차량식별 코드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회수된 폐차가 절도, 강도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폐차 회수업체는 암거래나 범죄도구로 의심되는 자동차나 엔진, 핸들, 변속기, 앞뒤바퀴 차축, 차량 프레임(이하 '5대 주요부품') 및 기타 부품을 분해, 개조, 조립, 재판매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회수된 폐차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해야 하며, 그중 대형버스, 화물차 등 운행차량이나 통학용 차량은 공안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해체해야 한다.

제12조 해체한 폐차의 엔진, 핸들, 변속기, 앞뒤바퀴 차축, 차량 프레임이 재제조(再製造) 조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재제조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판매하여 순환이용 해야 한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금속은 제철기업에 야금 원료로 판매할 수 있다.

해체된 폐차의 '주요 5대 부품'은 인체와 재산안전 보장 등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된다.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 '폐차회수 사용제품'임을 표기해야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 국무원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반드시 폐차회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폐차회수업체는 해당업체에서 회수한 폐차의 '주요 5대 부품' 등의 수량, 모델명 등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여 폐차회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 공안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14조 폐차는 반드시 환경보호 법률, 법규 및 강제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은 '주요 5대 부품' 및 기타 부품을 이용해 자동차를 조립해서는 안 되며, 조립된 자동차의 거래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반드시 폐차 회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존 샘플조사를 중심으로 된 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샘플검사 리스트를 발표하여 샘플조사의 근거, 빈도, 방식, 내용, 절차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파견인원 역시 무작위로 선정한다.

관리감독 과정에서 폐차 회수업체가 본 방법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기존에 발급된 해당 자격 증명서를 취소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며, 대중이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신고를 접수할 경우, 즉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보자의 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가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법률책임

제18조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는 관리감독 중 해당 부서의 처리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처리권한 부서로 이관한다. 처리권한을 가진 부서는 즉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차를 회수하는 경우,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불법으로 회수한 폐차와 ‘주요 5대 부품’, 기타 부품과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2~5배 벌금을 부과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경우,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에서 불법으로 회수한 폐차나 ‘주요 5대 부품’, 기타 부품을 몰수할 경우, 필요에 따라 관련 주무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 (1) <폐차회수증명서>를 매매 또는 위조한 경우
- (2) 폐차 회수업체가 회수된 폐차가 절도, 강도 등 범죄활동에 사용된 범죄도구임을 알거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분해, 튜닝, 조립, 재판매할 경우

폐차 회수업체가 전 조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존재하며, 심각한 상황인 경우 기존의 발급된 자격 증명서를 취소한다.

제21조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폐차의 ‘주요 5대 부품’, 기타 부품과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 2~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5만 위안 또는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기존에 발급된 자격증명서는 취소한다.

- (1) 재제조 조건을 갖추지 않고 폐차의 ‘주요 5대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 (2)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폐차의 ‘주요 5대 부품’ 외, 부품을 판매한 경우
- (3) 폐차 ‘주요 5대 부품’ 외, 부품을 판매할 경우, ‘폐차 재활용 부품’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제22조 폐차회수업체가 회수한 폐차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말소증명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폐차 회수관리 담당부서는 시정명령하고 1만~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폐차 ‘주요 5대 부품’, 기타 부품을 이용해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완성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폐차회수업체가 사실대로 해당업체가 회수한 폐차 ‘주요 5대 부품’ 등의 수량, 모델명 등 정보를 폐차회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1만~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 폐차회수업체가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강제성 표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발급된 자격증명서를 취소한다.

제25조 폐차회수관리 담당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담당자가 관리감독 업무를 할 때 직권남용, 근무태만,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5. 부칙

제2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위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신에너지 차량을 폐차할 경우, 관련 특이사항은 별도로 제정한다.

군부대의 폐차회수관리는 국가와 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8조 본 방법은 2019년 6월 1일에 실시하며, 동시에 2001년 6월 16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폐차회수 관리방법>은 폐지된다.

6.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추진 관련 통지

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급판매합작총사 발표

(2020-07-10 발표 / 2020-07-10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추진 관련 통지

목 차

1. 귀속지역 관리책임제 실시	97
2. 중점분야 중심으로 추진	97
3. 일상적인 관리감독 및 특별검사 강화	99
4. 홍보강화	99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추진 관련 통지

(발전개혁위원회 환경투자사(2020) 1,14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발전개혁위, 생태환경청(국), 공업정보화 주무부서, 주택도농 건설청(도시관리위원회, 도시관리국, 녹화시용국), 농촌·농업(농목)청(국, 위원회), 상무청(국, 위원회), 문화관광청(국), 시장관리감독국(위원회, 청), 공급판매합작사 :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 촉진에 대한 의견>(2020 80호, 이하 <의견>)이 발표된 후, 지역별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체적인 업무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각 지역·분야별 업무는 아직 평준화가 되지 않았다. 전염병 방역과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2020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관리에 대한 각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통지한다.

1. 귀속지역 관리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는 정치적 입지를 높여 플라스틱 오염관리에 대한 절박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8월 중순까지 성(省)급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업무를 세분화 하도록 한다. 성도³⁴⁾,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³⁵⁾, 지(地)급 이상 도시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2020년 말까지 단계별 목표를 중점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분야별 중점 애로사항을 평가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계획일정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2. 중점분야 중심으로 추진

- (1) 생산이 금지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 시장 관리감독 주무부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두께 0.025mm 미만의 초박형 플라스틱 비닐봉지와 두께 0.01mm 미만의 폴리에틸렌 농업용

34) 성도(省会城市, provincial capital) : 국가 1급 행정구의 정치·경제·과학·교육·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의 행정중심지는 성도라 부르지 않는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번역(2021.5.25.검색)

35)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 1980년대 대도시로 하여금 국가 계획 수행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성급 행정구가 아닌 도시에 성급의 경제체제와 관리권한을 부여하며 시작된 행정구 명칭의 하나.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5.검색)

비닐박막 등 생산·판매하는 것을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본 통지에서 규정한 금지 제한기한에 따라 도태된 제품리스트에 포함된 1회용 플라스틱 면봉,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함유된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각 지방 공업정보화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현지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도태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제때 생산조정 등 작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 (2) 소매업, 요식업 등 분야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각 지역별 상무 등 주무부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소매업체, 배달서비스, 각종 전시회나 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연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 사용중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별 상무, 시장 관리감독 주무부서는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집중적으로 구입, 판매하는 제도를 시행해 시장 내 비닐봉지 판매와 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각 지역별 문화관광 등 주무부서는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광지 내 음식서비스 분야에서 플라스틱 금지·제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실제상황에 맞춰 요식업에서 플라스틱 사용금지·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감독 부서를 지정해 해당 기업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본 의견에서 규정된 기한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등 제품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 (3) 농업용 비닐박막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역별 농업·농촌 주무부서는 공급판매합작사(供销合作社)와 협력을 강화하여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경영진 교체, 전문화 회수 등 농업용 박막 생산자책임제도 시범추진 및 폐기된 농업용 박막은 회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역별 농업·농촌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협력하여 시장 내 판매하는 비닐박막에 대한 샘플검사를 강화해 두께 0.01mm 미만의 폴리에틸렌 농업용 비닐박막이나 규정을 위반한 농경지 포장류 비닐박막 등은 정부의 농업용 물자 위조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4) 폐플라스틱 수집과 처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 지역별 주택도농건설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폐플라스틱 분리수거와 처리역량을 향상시킨다. 처리원가가 높고 자원화이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을 이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해 플라스틱의 매립량을 줄여야 한다.

- (5) 플라스틱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정리하도록 실시한다. 각 지역별 주택도농건설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미 조사된 비교적 규모가 큰 생활쓰레기 적치장에 대한 정리 업무를 실시한다. 각 지역 농업·농촌 주무부서는 농경지에 남아있는 농업용 비닐박막을 제거해야 한다. 연해지역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해변 모래사장에 남아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해야 한다.

3. 일상적인 관리감독 및 특별검사 강화

- (1)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을 실시해야 한다. 각 지역별 생태환경, 공업정보화, 주택도농건설, 상무, 문화·관광 등 주무부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생태환경보호 종합 행정집법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 <행정 주무부서의 행정구류 환경법 위반사건 이송 임시방법> 등 법률, 정책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각급 행정 주무부서는 즉시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행위에 대한 근거를 생태환경보호 종합 집행부서로 이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2) 공동으로 전문행동을 전개한다. 8월 말까지, 각 지방정부는 본 통지에 따라 백화점, 슈퍼마켓, 요식업 등 중점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금지·제한 추진상황을 전문적으로 법을 집행하여 검사한다. 연말 전까지 생태환경부,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오염관리 및 공동 특별검사를 장려하는 행동을 추진하며, 각 지역별 실시방안 제정, 업무추진, 집행 관리감독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공동 특별 행동방안은 별도로 발행한다. 상황에 따라 집중 집행행동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오염관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중앙 생태환경보호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단속을 감시하고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4. 홍보강화

각 지역별 및 유관부서는 관련 정책을 보기 쉬운 그림이나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매체는 공익광고, 홍보영상을 공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플라스틱 오염방지에 대한 공감을 높여 참여를 높여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관리와 관련된 선전과 방법을 제때 통합하여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추진 관련 통지

공유해야 한다. 해당 산업과 기업은 혁신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공동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론 단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방지에 대한 전문 업무구조와 각 부서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형성하도록 한다. 실시방안에 대해 즉시 반응하도록 중점 업무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방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첨부: 플라스틱 제품 관련 사용금지·제한 관리 세분화 기준(2020년 버전)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시장관리감독총국, 공급판매합작총사

2020년 7월 10일

7. 베이징시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조례

베이징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2020-06-05 발표 / 2020-09-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베이징시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조례

목 차

제1장 총칙	105
제2장 일반규정	107
제3장 특별규정	110
제4장 법률책임	113
제5장 부칙	115

베이징시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위험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대중의 건강보장, 생태 안전 유지, 생태문명건설 추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의료폐기물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따라 베이징시의 실제상황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위험폐기물은 다음의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 (1)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된 고체폐기물
- (2)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식별기준, 식별방법, 식별절차에 따라 위험의 특성이 있는 고체폐기물
- (3)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위험폐기물 식별표준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은 전문가가 인정한 인체건강이나 생태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체폐기물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드시 상위 (2), (3)에 명시된 위험폐기물의 명칭, 종류, 특성 등 기본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위험폐기물과 비(非)위험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위험폐기물로 관리하며 식별을 거쳐 위험 특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본 시는 녹색발전 이념을 지지하고, 자원절약, 종합이용, 환경보호·개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기술정책·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응용을 장려 및 지원한다. 대중이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경제·사회발전과 환경보호를 서로 조화롭게 한다. 본 시 위험폐기물 오염방지는 예방중심, 원천저감, 전체 과정 통제와 오염책임의 원칙을 실행한다.

어떠한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위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폐기물의 위해성을 낮춰야 한다.

제5조 시·구(区) 인민정부는 반드시 본 행정구역 내 위험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의 조직과 지도를 강화·통합 관리하며, 해당지역의 오염물질 책임원칙에 따라야 한다.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의 중점 내용으로 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생태환경보호 계획에 포함시킨다.

시·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평전결합³⁶⁾ 원칙에 따라 위험폐기물 긴급조치를 돌발사건 비상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유관부서는 돌발사건 발생 중 위험폐기물 긴급조치 통제 구조를 공동으로 제정하여 규범화한다. 위험폐기물 처리자원을 과학적으로 조달 하여 위험폐기물 처리능력을 보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6조 시·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한다.

시·구 교통, 위생건강,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법률, 법규, 규정 및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위험폐기물 도로운송, 의료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소각 후 플라이 애쉬(fly ash) 및 유해폐기물 수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시·구 경제정보화, 계획 및 자연·자원, 교육, 과학기술 등 주무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7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위험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드시 교통, 위생건강 등 주무부서와 함께 위험폐기물 환경오염에 대한 집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집법 정보를 공유한다.

제8조 향(乡)·진(镇) 인민정부,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³⁷⁾는 위험폐기물의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소재지 구(区)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시·구 인민정부는 매년 본 시의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본 행정구역의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달성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정기적으로 환경현황을 공포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위험폐기물 종류, 수량, 이용, 처리현황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6) 평전결합(平战结合) : 인민방공 건설을 위한 각 방면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전시에 방공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평화시대에 사회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번역(2021.5.25.검색)

37)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 : 가도는 향(乡), 진(镇)과 같은 향급 행정구역의 관리기관을 의미하는 말이다. 구를 설계하지 않은 시의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정한 판사처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가도판사처'라고 한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번역(2021.5.25.검색)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홍보와 보급에 대한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조직, 환경보호 지원자들이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법규와 지식을 홍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1조 공민³⁸⁾, 법인, 기타 사회조직(其他组织)은 위험폐기물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구 생태환경 주무부서 또는 기타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 전달하도록 한다. 신고자가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민, 법인, 기타 사회조직은 위험폐기물 환경오염 방지·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규정

제12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원료, 에너지와 공정, 설비를 선택하여 유독·유해한 원료 사용을 줄여야 하며, 자원이용 효율을 높이고 위험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는 소재지의 구(区) 발전개혁위원회 및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区)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제도의 규정을 집행한다.
- (2) 위험폐기물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의 구(区)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등록·보관해야 한다.
- (3) 위험폐기물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 제도를 수립하고 부서 책임자, 관련 인원,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책임자를 분명하게 한다.
- (4)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만들고, 위험폐기물의 명칭, 종류, 발생시간, 수량, 흐름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한다.

38) 공민(公民, citize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25.검색)

(5) 위험폐기물 관리대장 보존기간은 최소 5년이며, 위험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할 경우,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경영자가 파산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장의 책임자가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소재지의 구(区)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제14조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의 경영활동을 금지한다.

시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본 시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사업단위의 리스트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위험폐기물의 집중처리시설·장소는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다.

시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드시 시 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 도시 관리 등 주무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장소 건설계획과 본 시 도시계획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폐기물 처리수요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시 위험폐기물 처리 시설·장소 건설계획을 조직·편성해야 한다. 시설, 장소건설 배치와 계획 일정표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상세계획과 연계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시(市) 전체의 위험폐기물 처리시설·장소 건설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의료폐기물의 이동, 저장시설을 건설한다.

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 등 주무부서는 시(市) 전체의 위험폐기물 처리시설·장소 건설계획에 따라 투자, 보조, 보조금 등 방식으로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원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16조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발생된 위험폐기물 수집, 운송, 이용, 처리해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 기술능력에 대해 검증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 운송, 처리하는 계약은 위험폐기물의 명칭, 종류, 특성 등 기본정보와 오염방지 요구사항, 운송기간, 운송횟수, 처리비용, 위탁내용 등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처리비용은 본 시 인민정부 가격 리스트에 따라 책정되며, 구체적인 가격표준은 시 가격 주무부서에서 생태환경 등 유관부서와 함께 위험폐기물 발생량, 운송, 집중 처리능력과 처리시설 운영현황, 원가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한다.

제17조 위험폐기물의 수집,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규정 및 서면 위탁계약의 약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제때 수집, 접수해야 하며,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위험폐기물의 수집,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불가항력 또는 중대한 활동, 중오염 날씨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위험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수집, 접수할 수 없을 경우,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알려 임시 환경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위험폐기물을 반출, 접수하는 사업체는 국가 위험폐기물 이전계약서 제도와 운송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위험폐기물을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이전에 대해 비준을 허가한다. 승인내용을 해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교통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타 지역의 위험폐기물을 본 시로 유입·저장·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본 행정구역 내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이전하는 구(区)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위험폐기물 이전 명세서를 신청하고 작성해야 한다.

이전 지역과 수용 지역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위험폐기물 이전과 접수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20조 위험폐기물 운송업체는 법에 따라 도로에서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위성추적장치(GPS)를 설치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운송 도중 위험폐기물을 폐기, 누설, 투기하면 안 된다.

운송되는 위험폐기물이 국가에서 지정한 예외수량(例外数量)과 제한수량(有限数量)으로 위험화물(危險貨物)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일반화물로 취급하여 운송할 수 있다.

시·구 교통운수 주무부서는 반드시 본 시 위험폐기물 운송허가를 취득한 업체와 차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1조 위험폐기물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임의로 폐기, 적치,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 (2) 다른 특성의 위험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수집, 저장해야 하며,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저장, 운송해서는 안 된다.

- (3)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위험폐기물을 저장할 경우,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저장시설과 장소를 건설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시설, 장소, 설비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정상운행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 (5)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위험폐기물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종류, 수량, 행방 등 정보를 즉시 환경정보 플랫폼에 공개한다. 수량 및 행방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업체나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 (6)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시설, 장소,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수량, 용도, 행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7) 이전, 생산제품 변경, 파산한 경우, 이미 발생했거나 저장된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법에 따라 환경조사, 위험평가, 관리복구를 진행하며 관련 비용은 부담한다.

제22조 본 시는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신용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위험폐기물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경영자의 관련 신용기록을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반드시 국가와 시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폐기물의 환경오염 방지 신용체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제3장 특별규정

제23조 공업단지 건설단위는 반드시 본 시 위험폐기물 처리시설·장소 건설계획과 공업단지 건설계획에 따라 위험폐기물 저장, 이전, 처리시설·장소를 건설해야 한다.

공업단지 관리업체는 공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체를 통해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이전, 운송을 총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24조 공업기업(工业企业)신축, 재건, 증축하는 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건설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하나라도 부합할 경우, 국가와 본 시 관련 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용, 처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 (1) 연간 같은 종류의 위험폐기물 발생량이 5,000톤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시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험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지 적절한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규정한 자체적으로 이용, 처리시설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공업기업에서 타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이용, 처리할 경우, 이전과정은 반드시 국가 위험폐기물 이전 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공업기업이 스스로 해당 기업이 속한 같은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이용, 처리할 경우, 반드시 내부에서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이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시 전체 위험폐기물 처리시설·장소 건설계획과 시설건설,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정책에 따라 입찰, 구매서비스 등 방식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분산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 의료위생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송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시 위생건강 주무부서는 시 생태환경, 발전개혁, 교통 등 주무부서와 함께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심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중대한 전염병 등 돌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구 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 등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 업무를 통합 조정한다. 처리능력을 확대하여 소요차량, 처리시설·장소, 방호물자를 보장해야 한다. 위생건강, 생태환경, 도시관리, 교통 등 주무부서는 서로 협력하여 반드시 법에 따라 긴급처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28조 중대한 전염병 발생기간에는 시 위생건강,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요구사항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소독, 분류, 수집, 포장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방역 필요에 따라 시 위생건강,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유관기관, 장소, 지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중점 관리한다. 의료폐기물을 참조하여 관리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기업 사업단위, 관리사무소, 개인은 정부의 통일된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지에서 소독, 분류, 수집, 운송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시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과 중점 생활쓰레기를 긴급 처리하도록 한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관리업체는 위생건강 관련 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생방역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29조 자동차, 전동자전거 생산·판매업체는 반드시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배터리 사용 위험 특성을 표기해야 한다. 폐배터리는 위험폐기물에 속하므로 소비자에게 생산·판매·수리업체 등을 통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취득한 업체에 전달하여 회수 이용과 처리가능 하도록 공지해야 한다.

자동차,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생산·판매업체는 반드시 폐배터리 회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A/S 서비스, 수리, 해체 등 채널을 이용하여 폐배터리를 회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회수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회수한 폐배터리는 위험폐기물에 속하므로 반드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넘기거나 위탁해 이용,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정비·경영에 대한 수속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분명한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조치와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위험폐기물 전용 저장시설·장소를 구비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 사용자는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연축전지, 폐광물질 오일 등 위험폐기물은 반드시 자체적 또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를 통해 회수이용,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폐차, 폐전자전기제품 해체업체는 반드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폐기물을 분류하여 수집, 저장하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위탁하여 회수이용,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실험실을 보유한 기업, 학교, 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관련 업체는 실험실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에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실험실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처리비용은 교육활동, 과학기술 연구의 예산항목에 포함시키며, 실험실을 담당하는 위험폐기물 관리기구와 인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 실험실은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만들고 위험폐기물 관리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저장시설·장소를 점검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발생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효력을 상실한 약품은 전용 저장장소를 건설하여 분류 보관해야 하며, 임의로 폐기, 방치, 매립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정부기관, 기업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는 폐형광등에 대해 별도로 수집,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위탁하여 회수이용,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은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화학약품, 폐형광등 등 유해폐기물은 전용 수집용기에 버려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책임자는 법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 유해폐기물을 분류해 수거해야 한다.

제35조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해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해야 하며, 관할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유해폐기물의 임시 저장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폐기물 투입지점에서부터 집중 임시저장소 사이에 투입, 운송, 보존 등 수집과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를 면제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운송업체는 반드시 분리하여 수집해야 하며, 위험폐기물의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위탁하여 회수이용,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6조 본 조례 제13조제1항(1)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 및 생산제한, 중단, 조정을 할 수 있고,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 폐쇄 또는 영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례 제13조제1항(2), (4)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 명령하고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 폐쇄 또는 영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례 제13조제1항(3), (5)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 명령을 하고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기한 내 위험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16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타인에게 위험폐기물을 수집, 운송, 이용,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할 때, 수탁자의 자격과 기술능력 미(未)확인, 서면계약 미(未)체결, 계약서에 오염방지 요구 사항 미(未)명시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할 경우, 수탁자는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가진다.

제38조 본 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때에 위험폐기물을 수집, 접수하지 않았거나 이유 없이 위험폐기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 명령하고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본 조례 제2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운송차량에 설치한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교통 주무부서는 위험화학물 운송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적치, 방치, 폐기, 누설할 경우,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하고 처리비용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리비용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벌금은 최대 20만 위안으로 부과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중지 또는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40조 본 조례 제21조(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하고 처리비용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리비용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은 최대 20만 위안으로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본 조례 제21조(2), (3), (6)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 및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례 제21조(4)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하고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1조(5)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 및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41조 본 조례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이용, 처리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미(未)완성, 미(未)검수, 불합격 상태에서 생산에 투입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본 조례 제2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하고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본 조례 제2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업체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위탁한 경우, 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명령하고 처리비용 3~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리비용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 위안으로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44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 본 조례 제34조,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행정 집행 부서는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처벌과 기한 내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을 초과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시정명령 기한 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존 처벌금액을 초과한 날짜 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할 경우, 위험폐기물로 인해 오염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법인, 기타 조직은 오염유발자에 대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검찰기관, 행정기관,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생태환경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할 때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집법기관이 위험폐기물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뇌물, 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검찰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5장 부칙

제49조 본 조례에서 명시한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 경영자는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공업기업, 자동차 정비기업, 의료위생기관, 폐차 및 폐전기전자제품 해체기업, 실험실을 보유한 기업·학교·연구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나 기타 생산경영자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책임자는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50조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에 지정된 위험폐기물에 대해 국가가 정한 면제절차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면제내용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 액체상태의 위험폐기물 오염방지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단, 수체(水体)에서 배출하는 폐수와 방사성 고체폐기물에 대한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 법규를 적용하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2조 본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2019년 11월 베이징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통과

(2019-12-01 발표 / 2020-05-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목 차

제1장 총칙	121
제2장 계획 및 건설	123
제3장 감량 및 분류	125
제4장 수집, 운송 및 처리	130
제5장 관리감독	133
제6장 법률책임	135
제7장 부칙	139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2019년 11월 27일 베이징시 제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수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 수정 후의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는 2020년 5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생활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농환경 개선, 인체건강 보장, 생태안전 보호, 수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명시된 생활쓰레기는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또는 법률·행정법규에서 생활쓰레기로 규정된 건설폐기물 등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조 생활쓰레기 처리는 민생(民生)과 관련된 기초적인 공익사업이다. 생활쓰레기 관리강화, 공공 환경보호, 자원절약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본 시는 당위원회 지도·정부주도·사회협력·대중참여·법치보장·과학기술 지지·감량화·자원화·무해화의 방침과 도농 통합·과학적인 계획·종합이용의 원칙을 따르며, 시 전체의 통합과 소속지역의 책임제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보완한다.

제 4조 생활쓰레기 관리는 본 시 각급 인민정부의 중요한 직책이다.

시 인민정부는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본 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각 구(区)의 생활쓰레기 총량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계획 구성을 총괄한다.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시키는 경제, 기술,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관리에 사용되는 자금을 보장한다.

구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를 관리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관리에 투입되는 자금을 보장한다.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와 구 생활쓰레기 원천 총량 통제 계획을 실행하며 지역상황에 맞게 쓰레기통 배치, 지정시간 수거, 운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류한다.

가도관사처와 향·진 인민정부는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주민위원회³⁹⁾, 촌민위원회(村民委员会)⁴⁰⁾는 기관과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 분류에 동참하도록 지도한다.

제5조 시·구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정, 총괄계획, 지도·점검을 담당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처리, 재생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생활쓰레기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제6조 기관과 개인은 생활쓰레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분류의무를 지고 생활쓰레기 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권리가 있다.

당(党)·행정기관과 기업 사업단위가 앞장서 쓰레기 감량, 분류작업을 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제7조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리업체는 작업표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보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시는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리, 재활용 등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제8조 본 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서로 다른 처리비용(다(多)배출 고(高)비용, 소(少)배출 저(低)비용, 혼합쓰레기 고(高)비용 등) 원칙에 따라, 계량요금제, 분류요금제 등 납부하기 쉬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립하여 비용 관리 강화 및 생활쓰레기의 감량, 분류, 자원화이용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발전 개혁위원회,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협력하여 제정한다.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기관과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한 표준을 향상시킨다.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상황에 맞게, 쓰레기소각, 생화학처리, 위생매립 등 방법으로

39) 주민위원회(居民委员会)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에 근거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며 봉사하는 대중적 자치조직으로 당, 정부, 인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 백과 요약 및 번역(2021.6.02.검색)

40) 촌민위원회(村民委员会) : 중국 대륙 지역 향(鎮)이 관할하는 행정촌의 촌민선거로 탄생한 자치조직이다. 촌민위원회는 촌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며 봉사하는 단체이다. 주임·부주임과 위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조직법(村民委员会组织法) 근거하여, 민주적 선거·결정·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여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과 요구, 건의를 반영한다. 출처: 바이두 백과 요약 및 번역 (2021.6.02.검색)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량을 점차 줄이도록 한다.

본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생활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선진기술, 공정 연구개발 및 응용을 추진하여 생활쓰레기의 재활용과 자원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시 과학기술 주무부서는 반드시 도시관리 등 유관부서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와 분해 가능한 쓰레기봉투 등 연구개발과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시는 기관이나 개인이 재활용품, 재생품 및 기타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에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10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의 원천적 감량, 전체 과정 분류 관리, 자원화 이용, 무해화 처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의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켜, 사회 전체가 쓰레기 분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신문, 방송, TV, 인터넷 등 매체들은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여 대중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생활쓰레기 홍보 교육단지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생활쓰레기 감량, 분류, 처리에 대한 지식을 초, 중, 고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관이나 개인을 장려한다.

제2장 계획 및 건설

제12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반드시 시 정부의 유관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계획의 배치, 부지사용 관련은 시 도농과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본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분명하게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 및 재생자원 재활용시설의 전체적인 배치를 확정하여 생활쓰레기의 흐름과 처리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구 인민정부는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에 따라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시설건설 관련사항은 소재지의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은 반드시 해당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을 명확히 하고, 생활쓰레기 시설의 배치, 처리공정과 능력을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도농계획을 작성하고, 작성기관은 법에 따라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계획 초안은 반드시 심사 비준 전에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거친 보고서는 반드시 의견의 채택 상황과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시의 관련 부서는 도농의 연간 실시계획, 투자계획, 토지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중점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시의 통합계획에 따라, 연간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도농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확정된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 건설부지는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계획과 자연자원 주무부서는 반드시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계획관리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시설의 공정과 규모에 따라 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계획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 건설, 운영, 주변 환경보호 시설 건설에 대해 자금, 토지 등 지원을 보장한다.

제18조 생활쓰레기의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 반드시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발전개혁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 건설프로젝트를 심사, 승인할 경우, 반드시 처리공정, 규모, 서비스 범위 등 내용에 대해 도시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도시관리 부서는 즉시 관련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을 건설할 경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환경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하기 전, 반드시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 건설은 반드시 국가와 시의 관련 표준에 부합

해야 하며, 밀폐, 침출액 처리, 악취방지, 침수방지, 분진방지, 소음방지, 유실방지 등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시설이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관리 계획을 세워 기한 내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 계획 및 자연·자원, 발전개혁, 주택도농건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건설공정에 대한 생활쓰레기 시설 건설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시 계획 및 자연·자원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건설표준에 대한 내용을 본 시 건설프로젝트의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지표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때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주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1조 신축, 개축, 증축 프로젝트는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을 표준에 맞게 조성하고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부지의 평면도, 면적, 위치, 기능을 표시하여 설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건설공정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본 공사와 함께 설계·건설·사용해야 하며, 건설비용은 건설공정의 투자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준공 후, 건설업체는 반드시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에 대한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신축 주택 건설프로젝트는 건설업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의 건설위치, 기능 등을 분양 장소에 공시하고 주택매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을 임의로 철거, 이전, 개축, 사용중지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에 대해 철거, 이전, 개축, 사용중지가 필요할 경우, 시 도시관리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허가를 받고 규정에 따라 개축, 증축 또는 대체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운영 관리기관은 반드시 국가와 시의 관련 표준과 규정에 따라 폐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3장 감량 및 분류

제24조 생산자, 판매자는 반드시 국가와 시의 제품 과대포장 제한에 대한 표준과 요구사항을 엄격히 집행하여,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과 포장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국가 강제 회수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과 포장지는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 회수해야 한다. 택배업체는 반드시 전자운송장과 분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과 포장 쓰레기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상품 판매과정에서 택배를 이용할 때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택배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본 시는 택배업체가 택배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권장한다.

제25조 기관과 개인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당·행정기관과 개인 사업단위는 사무실 내 종이사용 감소, 재생용지 사용률 제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26조 본 시는 초박형 비닐봉지에 대한 생산, 판매를 금지한다.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 소매업체는 초박형 비닐봉지 사용과 무료제공을 금지한다.

요식업체, 음식배달서비스 업체와 숙박업소는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젓가락, 포크, 숟가락, 세면용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눈에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일회용품의 세부 리스트는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와 함께 시장관리 감독, 문화, 관광, 상무 등 주무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요식업체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와 적당량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뷔페는 반드시 합리적 소비를 권장 후에도 낭비가 심한 고객에게는 벌금을 줄 수 있다.

요식업협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업계의 자율성과 서비스 역할을 발휘하면서 업체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해 본 시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한다.

제27조 본 시는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세척된 채소가 판매되도록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상무 주무부서와 농업·농촌 주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단지나 가정에 대해서는 표준에 부합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시·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건설폐기물 관련 종합관리 순환이용 정책을 제정해 건설폐기물 배출 감량화, 운송, 자원화 처리 및 회수이용의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본 시의 도시관리, 주택도농건설 등 주무부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전체 과정 통제·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품 품질표준과 기술규정을 제정한다.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품과 재생 가능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생산업체가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체와 시공업체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배출감량과 처리, 녹색시공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시공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집중 분리, 관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종합 이용해야 한다.

제29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유관부서와 재생자원 회수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자원 회수지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재생자원 회수관리 규범을 제정한다. 재생자원 회수시장에 대한 질서를 규범화하여 재생자원 회수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 발전개혁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원천감량, 자원화이용, 생산자책임연장제도를 순환경제와 청정생산 촉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0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집용기에 넣어 재생자원 회수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함께 재활용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회수 통계를 생활쓰레기 통계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1조 재생자원 회수업체는 반드시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서비스 범위 내에서 회수가격 및 서비스 전화번호를 공개한다.
- (2) 회수 가능한 리스트에 따라 회수 채널을 확보하여 회수량을 확대시켜야 한다.
- (3) 상응하는 저장시설, 설비를 배치하여 다른 종류의 물품은 반드시 분류하여 저장한다.
- (4) 재활용품 운송과정에서 날림, 누설방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소방, 환경보호, 도시 환경위생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기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재생자원 회수업체는 회수방법을 홈페이지 회수, 지정시간·장소 방문회수 등 방식을 통해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단위나 개인이 재활용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2조 본 시는 전체 과정 관리, 시스템 연동, 과학적 분류, 적응 처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제도를 구축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류, 분리수집, 분류운송, 분류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의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원칙을 수립한다. 생활쓰레기의 특징, 처리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표준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시하고, 생활쓰레기 처리구조의 변화를 조정해야 한다.

제33조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기관이나 개인은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 책임의 주체로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1)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유해폐기물, 기타폐기물 분류에 따라 표시된 수집용기에 버려야 한다.
- (2) 폐가전가구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적치한다.
- (3) 건설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장소, 요구사항에 따라 적치한다.
- (4) 농촌 촌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회반죽을 해당 용기 또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별도로 배출한다.
- (5) 국가와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기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34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제를 시행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 (1) 도시 거주 지역(주택단지, 골목, 거리 등 포함)은 부동산관리사업자(物业)에서 책임을 지며, 사업단위가 스스로 관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책임진다.
- (2) 농촌 지역은 촌민위원회에서 책임진다.
- (3) 기관, 군부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의 사무관리 구역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진다.
- (4) 공공건물은 소유자가 책임지며, 소유자가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업체에서 책임진다.
- (5) 건설공사의 시공현장은 건설업체에서 책임진다.
- (6) 재래시장, 백화점, 전시판매, 요식업, 길거리 상가 등은 경영관리업체에서 책임진다.
- (7)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역은 관리업체에서 책임진다.
- (8) 강, 호수 등은 관리기관에서 책임진다.
- (9) 공원, 풍경명승구(风景名胜区), 관광지는 관리기관에서 책임진다.
- (10) 도시 도로,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 부대시설은 청소업체에서 책임진다.

상위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재지 가도판사처 및 향·진 인민정부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제35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생활쓰레기 분류 일상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 (2) 책임 범위 내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을 홍보하고, 기관과 개인에 생활쓰레기

분류를 지도하고 관리감독 전문 인원을 지정한다.

- (3)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분류방법에 따라 관련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용기를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노후, 파손, 수량이 부족할 경우, 즉시 수리, 교체, 세척 또는 추가로 설치한다.
- (4) 생활쓰레기 종류별 투척 시기, 장소를 명시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집, 저장한다.
- (5)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샘플은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공시한다.
- (6) 이미 분류한 생활쓰레기를 뒤지거나 혼합하는 행위를 즉시 제지한다.
- (7) 국가와 시의 기타 규정에 따른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분류표준에 따라 버리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도시관리·종합 집법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시 주택도농건설 주무부서는 부산동서비스업체(物业)를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 (1) 당·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업무 또는 생산 사업장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유해폐기물, 기타폐기물 4개 종류의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 (2) 주택단지과 자연마을은 반드시 공공구역에 음식물쓰레기, 기타폐기물 2개 종류의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장소 중 한 곳에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 (3) 기타 공공장소는 필요에 따라 재활용품, 기타 쓰레기 등 2개 종류의 수집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재활용품, 유해쓰레기의 종류와 처리이용에 따라 수집 용기를 세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용기의 색상, 표시판, 설치표준, 장소 등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37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가도판사처 및 향·진 인민정부에 생활쓰레기 배출을 등록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생활쓰레기 관리대장을 구축하여 책임 범위 내 실제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종류, 수량, 운송자, 행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소재지의 가도판사처 또는 향·진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도판사처 및 향·진 인민정부는 반드시 즉시 데이터를 생활쓰레기 관리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제38조 신축, 개축, 증축프로젝트 건설업체는 건축물, 구조물 등 철거공사와 도시도로 등 시공현장 담당부서는 시공 전, 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시공현장에 공시해야 한다.

철거공사 담당부서는 주택도농건설 주무부서에 철거공사 시공방안을 보고할 때 적치, 제거하는 폐기물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 허가증에 포함해야 한다.

제39조 주민은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장소, 요구사항에 따라 별로 적치해야 하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법에 따라 폐기물이 혼합된 흙 등을 처리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기관과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공지한 시간과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투척해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수집, 운송 및 처리

제41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교통, 주택도농건설,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 부서와 함께 법률, 행정법규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에 대한 관리규범과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42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서비스 업체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43조 생활쓰레기를 운송하는 차량은 생활쓰레기 운송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또는 모래와 자갈, 흙, 모르타르(mortar) 등 건설폐기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전용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서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를 분류수집, 운송할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량, 분류방법,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표준에 부합하는 수집설비, 운송차량,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 (2)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집시설이나 규정에 따라 분류, 운송해야 하며, 적환처리 시설은 기타폐기물과 혼합하여 운송해서는 안 되며, 임의로 투기, 방치, 적치해서는 안 된다.
- (3) 생활쓰레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생활쓰레기의 출처, 종류, 수량, 행방 등 상황을 기록하며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4) 국가와 본 시의 기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운송한 생활쓰레기가 분류 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는 도시관리 종합 집행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체는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접수하고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는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발급한 생활쓰레기 처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소를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건설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자격을 갖춘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을 폐토석 등은 처리 허가시간, 노선,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 장소까지 운송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현지에서 자원화처리 할 경우, 건설폐기물 자원화처리에 부합하는 설비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실제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송자, 행방 등 상황을 처리 장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처리 장소 담당자는 실제로 접수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7조 시·구 인민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집중 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 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과 분산처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원천 처리를 추진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한 지도와 경제적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관리, 발전개혁, 재정 등 주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요식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단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자격을 갖춘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집중 처리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현지의 처리조건을 갖춘 경우,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에 부합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장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처리하여 자원화 하도록 한다.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폐식용유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개인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8조 대형 채소·과일 도매시장, 농산물시장, 물류 배송센터를 새로 건설하는 건설업체는 반드시 계획과 표준에 따라 폐기된 채소·과일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 이미 준공된 대형 도매시장, 농산물시장, 물류 배송센터에서 폐기된 채소나 과일의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설업체나 경영관리업체에서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추가 건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경영관리업체는 본 조례 조35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원림·녹화 주무부서는 원림, 공공녹지, 공원에 떨어진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49조 구 인민정부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을 위한 팀을 조직하거나 공개 입찰 등 방식으로 전문 기술조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송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농업폐기물 자원화 요구사항에 따라 생화학 처리 등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 처리 또는 집중 처리해야 한다.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휴 등은 수원(水源)과 거주지에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구덩이를 메워 토지를 개건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0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처리할 경우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해당구역에서 처리할 경우,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해당구역에서 처리되는 생활쓰레기의 수량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원한다.

제51조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련 규정과 기술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

- (2)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오수, 폐기가스, 슬러지, 분진 등을 처리할 경우,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표준이 본 시의 관련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 (3) 화학실험실이나 전문 실험기관에 위탁하여 생활쓰레기 침출액 등 처리과정의 일반적인 매개변수를 검측하고 기록한다.
- (4) 요구사항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지표에 대해 검측하고 데이터를 생활쓰레기 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 (5) 생활쓰레기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관리 주무부서에 데이터, 보고서 및 관련 사항을 보고한다.
- (6) 요구사항에 따라 오염통제 모니터링 지표 및 처리시설 운영 데이터를 공개한다.
- (7) 상응하는 참관, 홍보시설을 건설하여 규정된 날짜에 개방하여 대중이 참관,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 (8) 국가와 본 시의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 운영·관리업체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때 분류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도시관리·종합집법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52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종합심사 제도를 수립·보완해야 하며, 정부의 심사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3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전체 과정의 관리 제도를 수립·보완한다. 생활쓰레기 투기, 수집, 운송, 처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관리의 과학적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54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분류수집, 분류 운송, 분류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락처 제도를 실시한다. 가격 표시 분류, 성과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 명령한다.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관리감독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수량, 품질,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행정관리 주무부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 본 시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집법 체계를 구축하고 소재지의 책임 원칙에 따라 네트워크화 관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관리감독, 생태환경, 도시관리, 종합집법 등 주무부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과 행방을 요식업의 일상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주무부서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집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태환경 등 유관부서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현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 환경영향평가 등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56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신고, 민원전화, 우편함,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시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신고 내용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관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가 제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제57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관리와 집법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통보하여, 생활쓰레기 관리감독 실시 및 데이터 공유를 실시해야 한다.

집법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생활쓰레기 관리감독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1) 생산 장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검사한 사항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 (3) 위법행위에 사용된 시설, 도구는 법에 따라 압류 할 수 있다.
- (4)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가도판사처와 향·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를 기본적인 사회의 관리 업무에 포함시켜 조직의 조정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가도판사처와 향·진 인민정부는 관할 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를 주민·촌민협약⁴¹⁾에 포함시켜 거주 지역에 생활쓰레기 분류 안내원을 배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바르게 하도록 지도한다.

41) 주민·촌민협약(居民公約和村規民約) : 주민, 촌민의 시작단계에서 당의 방침과 국가 법률, 법규에 따라 거주지역의 사회질서, 공중도덕, 문명건설 등 방면으로 수호하기 위해 제정한 행위로 일종의 규칙제도이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번역(2021.5.27.검색)

가도판사처와 향·진 인민정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는 인센티브, 표창, 적립금 등 방식을 통해 사업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 분류를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제59조 시·구 인민정부, 유관부서, 가도판사처, 향·진 인민정부는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등 각 사회조직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투척을 위해 홍보, 시범 등 활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권장한다.

제60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감독원 제도를 실시한다.

시·구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감독원을 공개모집하고, 생활쓰레기 집중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참여하도록 한다. 사회감독원은 생활쓰레기 집중 처리시설 주변에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감독원은 생활쓰레기 집중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해당 장소에서 오염방지 조치 및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환경모니터링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관리 사업단위는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1조 환경위생, 순환경제, 부동산 서비스(物业服务), 관광·호텔, 요식업, 가사도우미, 도·소매 등 관련 산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범 제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제62조 기업 사업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벌 또는 강제성 조치를 받을 경우, 집행기관은 관련 정보를 시의 공공 신용 정보 플랫폼에 공유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63조 본 시의 각급 행정 주부부서, 집행기관 및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직책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책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시정명령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이나 기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본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을 표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계획 및 자연·자원 주무부서는 도농계획 법률, 법규의 건설공정 허가증에 명시한 허가 내용에 따라 건설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제65조 본 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슈퍼마켓, 백화점, 재래시장 등 상품 소매업체에서 초박형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

명령하고 5천~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요식업 경영자, 음식배달 서비스 제공자 또는 호텔 경영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일회용 제품을 제공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5천~1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6조 본 조례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여 재생자원 회수 경영자가 저장물품을 분류하지 않은 경우, 구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1천~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기업 사업단위가 본 조례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1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본 조례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제지하며, 이를 거부하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이를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며,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 등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을 자진해 참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주지 않는다.

제68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본 조례 제35조제1항 (1), (2), (3), (4), (6)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에서 즉시 시정명령하고, 3천~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35조제1항 (5)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등록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에게 생활쓰레기를 맡겨 처리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9조 본 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생활쓰레기 배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1천~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3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가 생활쓰레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책임 범위 내 생활쓰레기 배출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1천~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가 본 조례 제44조제1항 (1)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1만~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업체가 본 조례 제44조제1항 (2)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제거를 명령하고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업체가 본 조례 제44조제1항 (3)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1천~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1조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이 본 조례 제45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접수하지 않거나 분류 처리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나 폐토석 처리 장소에 대한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2조 건설공정 건설업체나 철거공정 담당업체가 본 조례 제4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요식업체가 본 조례 제4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처리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중지를 명령한다.

본 조례 제4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주방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로 생산, 판매, 사용할 경우, 농업·농촌, 시장관리감독 등 주무부서에서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나 개인이 본 조례 제4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송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해당 차량 및 불법으로 운송된 음식물쓰레기나 그 용기를 몰수하고,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통행안정법률>이나 법규에 따라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로 주행한 차량은 공안기관과 교통관리 주무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74조 본 조례 제51조제1항 (1), (2)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체에 기한 내 시정명령을 하고 3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배출표준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법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본 조례 제51조제1항 (3), (4)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에 따라 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체에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3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관리 주무부서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감독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에서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2천~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51조제1항 (5)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체에 기한 내 시정명령하고 1천~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본 조례 제51조제1항 (6), (7)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집중 이송,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체가 요구에 따라 시설의 오염통제 측정지표와 처리시설의 운영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대외로 개방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2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5천~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5조 본 조례의 위법행위는 이미 <베이징시 시용환경위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집법 주무부서는 <베이징시 시용 환경위생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6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관리감독 검사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 집행의 방해하거나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시설과 운송차량을 막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정상운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77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건설공정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은 쓰레기 투척장, 쓰레기 분류 수집장소, 밀폐형 쓰레기 분류 청소장소 등 시설과 설비를 포함한다.
- (2)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채소, 과일 껍질·씨, 남은 음식, 등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이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기관, 군부대, 학교, 기업 사업단위 등의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 식품가공 폐기물, 폐식용유이다. 재래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채소, 과일쓰레기, 부패된 육류, 뼈, 가축내장 등을 포함한다. 그중 폐식용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 기름과 물·기름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 (3) 재활용품은 일상생활이나 일생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이미 원래의 사용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회수 후 재가공을 거쳐 생산원료가 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재활용품은 폐지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전자폐기물류, 식물류 등이 포함된다.
- (4) 유해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중 유독·유해물질을 의미한다. 주로 폐건전지(니켈전지, 카드뮴전지, 산화수은전지, 연축전지 등), 폐형광등(형광등관 등), 온도계·혈압계 폐기물, 의약품 폐기물, 포장물·페인트·용제 폐기물, 살충제·소독제 폐기물, 필름·인화용지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 (5) 기타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유해폐기물 외 생활쓰레기나 식별이 어려운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
- (6)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에서 신축, 개축, 증축, 철거한 각종 건축물, 구조물이나 도시 도로, 공공도로 등과 주민들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석, 폐자재 및 기타 폐기물이며, 이는 생활쓰레기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 (7) 요식업체는 요식업 경영자,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기관, 군부대, 학교, 기업 사업단위 등에 구내식당을 의미한다.
- (8)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전문 서비스 업체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허가를 취득한 업체와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위가 해당된다.

제78조 본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상하이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2019-01-31 발표 / 2019-07-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목 차

제1장 총칙	145
제2장 계획 및 건설	147
제3장 원천감량 촉진	148
제4장 분류투척	149
제5장 분류수집, 운송, 처리	151
제6장 자원화이용	153
제7장 사회참여	154
제8장 감독관리	155
제9장 법률책임	157
제10장 부칙	159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강화, 주거환경 개선, 도시의 세분화 관리추진, 생태 안전 보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도시시용 및 환경 위생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 법규와 본 시의 실제상황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투척, 수집, 운송, 처리, 자원화 이용 및 관리감독 등의 활동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및 법률, 행정 법규상 규정된 생활쓰레기의 고체폐기물을 의미한다.

제3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실현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분류수집, 분류운송, 분류처리의 전체 과정에 대한 분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업무는 정부추진, 시민참여, 시장운영, 도농통합, 시스템 추진, 점진적인 원칙에 따른다.

제4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의 표준에 따라 분류한다.

-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방직물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
 - (2) 유해폐기물은 폐배터리, 폐형광등, 폐의약품, 폐페인트 재료 및 그 용기 등 인체나 자연환경에 직접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
 - (3) 젖은쓰레기는 쉽게 부패하는 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껍질·씨, 꽃·식물, 약재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바이오매스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
 - (4) 마른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폐기물, 젖은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
-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표준은 경제·사회의 발전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성, 처리 이용의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5조 시 인민정부는 반드시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업무의 종합적인 조정체제를 수립하여 전반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시 녹화시용(绿化市容) 주무부서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 주요 부서이며, 본 시 생활쓰레기 관리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관리감독 한다.

시 발전개혁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자원화이용 촉진 및 무해화처리를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자책임연장제도를 정착시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체계를 구축한다.

시 주택관리 주무서는 부동산서비스기업(物业)에서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이행하는 관리감독을 한다.

시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오염방지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한다.

시 도시관리집행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관리 규정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본 시의 주택도농건설, 상무, 재정, 계획, 경제정보화, 교육, 민정, 농업·농촌, 과학기술, 위생건강, 문화관광, 시장관리감독, 우편, 기관사무관리(机关事务管理) 등 주무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에서 협력하여 본 조례를 실시한다.

제6조 구 인민정부는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상응한 종합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구(区) 녹색도시화 주무부서는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조직, 조정, 지도,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구 발전개혁, 주택관리, 생태환경, 도시관리집행 등 주무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업무를 협력하여 추진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는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분류투척, 분류운송, 분류수집 등 일상적인 관리업무의 구체화한다.

제7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생활쓰레기 발생자로 책임을 져야한다.

본 시는 쓰레기 발생자의 비용지불 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분류비용 제도를 수립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 본 시는 지역 내 생활쓰레기 처리 총량 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시 인민정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전체 과정에 대한 분류 관리 요구사항 및 각 구역별 인구현황과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따라 각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 총량 통제계획을 수립한다. 각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 총량 통제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이용을 해야 한다.

제9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전체 과정 분류관리, 자원화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킨다. 생활쓰레기 분류지식을 보급하여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제10조 본 시의 정부부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집, 운송, 처리, 관리, 운영의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본 시는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분류투척, 현지처리, 자원화이용 등의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 신설비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지원한다.

제2장 계획 및 건설

제11조 시·구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전체과정 분류, 자원화이용, 무해화처리 추진을 중점내용으로 한다.

본 시의 관련 부서가 조직하여 편성한 도농계획, 토지이용계획은 반드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이용 및 무해화처리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시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 전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관리 전문계획은 생활쓰레기 관리의 지도원칙, 목표, 운송, 처리, 재활용 시설배치, 계획실시를 위한 보장조치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시·구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계획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운송, 처리, 재활용시설 계획(이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특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제13조 시·구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전문계획에 따라 연도별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구는 발전개혁, 계획 등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연도별 건설계획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투자계획 및 토지공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확정된 생활쓰레기 운송, 처리, 재활용 시설용지는 법적절차 없이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주택,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등 신축, 개축, 증축 공사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은 주요공사와 더불어 동시설계, 동시건설, 동시검수, 동시사용 해야 한다.

공사는 국가와 도시 표준에 맞는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은 반드시 주요 공사와 함께 설계·건설·검수·사용을 병행해야 한다.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이 생활쓰레기 분류표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제15조 시·구의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규정에 따라 재활용 서비스 지점, 적환장, 집산장(集散场)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본 시는 재활용 쓰레기 수집, 운송시설 건설에 사회자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제3장 원천감량 촉진

제16조 시·구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자원절약, 생산생활안전 등의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분야의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청정생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수·분해가 용이하거나 무독·무해 또는 저독·저해한 재료나 설계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시·구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포장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포장재의 재질, 구조, 원가는 반드시 내장된 제품과 상응하여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제19조 시의 시장관리, 우체국 주무부서는 본 시의 택배산업에 대한 녹색 포장표준을 제정하여 택배 포장재의 감량화와 순환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본 시에서 운영하는 택배업체는 반드시 전자운송장, 에코박스(봉투), 테이프 등 친환경 포장재를 이용해야 한다. 택배 발송인은 재활용·분해가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본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반드시 다양한 규격의 봉지, 재활용이 가능한 봉지 등 친환경 포장재를 제공해야 하며, 가격혜택 등 체계를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20조 시의 농업·농촌, 상무 등 주무부서는 반드시 과일, 채소 생산기지, 농산물 시장, 표준화된 채소농장, 슈퍼마켓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세척된 채소를 판매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신규로 건설된 농산물 시장이나 표준화된 채소농장의 경우, 반드시 표준에 따라 젓은 쓰레기의 현장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산물 시장이나 표준화된 채소농장에서 젓은쓰레기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반드시 표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젓은쓰레기를 배출하는 기타 생산업체는 현장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시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본 시의 시장관리감독, 상무 등 주무부서와 함께 젓은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21조 당·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제품, 설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재생종이의 사용비중 향상과 일회용 사무용품을 줄이며, 사무실 내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달은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기업, 사회단체의 사무용품의 절약과 재활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권장한다.

제22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온·오프라인 거래 등을 통해 중고물품 재사용을 촉진한다.

요식업체는 음식점에 알뜰소비 표시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적당량을 주문하도록 권장한다. 요식업체나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는 자발적으로 일회용 수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숙박업체는 자발적으로 일회용 일용품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에서 지칭하는 일회용품은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제4장 분류투척

제23조 시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본 시 상무, 생태환경 등 주무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시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반드시 여러 형태의 간편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류투척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4조 생활쓰레기를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은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투척하는 책임주체이며, 반드시 생활쓰레기를 해당 수집용기에 버려야 한다. 재활용품은 재활용 회수 서비스 지점 또는 기타 재활용품 회수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본 시는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지정시간·장소에 분류투척 하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제25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제도를 실시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 (1) 당·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사무·생산 장소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서비스업체(物业)에 위탁하여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
- (2) 주택단지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서비스업체에 위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할 경우, 부동산서비스업체를 관리책임자로 지정되며, 농촌거주 지역은 촌민위원회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
- (3) 도로, 광장, 공원, 공공녹지 등 공공장소는 관리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위탁한 서비스기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터미널 및 관광, 문화, 체육, 오락, 상업 등 공공장소는 경영관리기관 또는 경영관리 기관에서 위탁한 부동산 서비스업체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향·진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는 관할구역 내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

제26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 (1) 당·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사무·생산 장소는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 수집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 (2) 주택단지와 농촌인구 거주지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장소에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젖은쓰레기, 마른 쓰레기 등 4가지 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공공구역에 수집용기를 설치할 경우,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 수집용기를 한 세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공장소에는 재활용품과 마른쓰레기의 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젖은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는 젖은쓰레기 수집용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분류, 수집용기 설치규범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수집용기의 색상과 표지판은 통일, 규범화, 선명해야 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재활용품,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처리·이용 수요에 따라 수집용기를 세분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27조 관리책임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한 분류투척 행동을 지도해야 하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분류표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를 거절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나 가도판사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운송이 필요한 생활쓰레기를 분류한 뒤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관리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장 분류수집, 운송, 처리

제28조 유해폐기물,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 수집, 운송업체와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 처리업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생활쓰레기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해폐기물 처리업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처리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구 녹색시용 주무부서 및 향·진 정부조달 등 방법으로 회수된 재활용품, 유해폐기물,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를 수집, 운송하는 업체와 처리업체는 각각 수집, 운송 및 처리에 대한 서비스 협력을 체결해야 한다.

제29조 수집, 운송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집, 운송해야 한다.

- (1) 재활용품, 유해폐기물은 정기 또는 예약 수집하여 운송한다.
- (2) 젖은쓰레기는 매일 지정시간에 수집, 운송한다.
- (3) 마른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수집, 운송한다.

수집, 운송업체는 분류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를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송업체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나 가도판사처에 신고한다. 신고 접수된 향·진 인민정부나 가도판사처는 즉시 조정하여 처리한다.

관리책임자는 수집, 운송업체가 분류 수집, 운송 요구를 위반할 경우, 향·진 인민정부 또는 가도판사처에 신고할 수 있다.

제30조 수집, 운송업체는 반드시 산업과 운영의 규범을 따라야 하고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전용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운송한다. 전용차량 또는 선박은 운송중인 생활쓰레기 종류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밀폐하여 운송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2) 이미 분류하여 투척한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운송해서는 안 되며, 위험폐기물, 공업 고체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는 안 된다.
- (3) 운송이 필요한 생활쓰레기는 요구사항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제31조 시·구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반드시 재활용품 회수시스템을 보완하고, 회수업체 및 기타 회수경영자에 회수에 대한 지도, 관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재활용품 회수리스트를 제정, 공개하고 저가의 재활용품 지원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인터넷+회수’, 스마트 회수 등 다양한 방식을 권장하고, 재활용품의 투척과 판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타 재활용품 회수 경영자는 재활용품의 수집, 운송과정에서 덮개, 가림막, 청결 유지 등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 운송시설 설치는 환경보호 요구사항과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등 관련 기준을 거쳐야 한다.

생활쓰레기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액은 국가와 본 시의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에 따라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제33조 유해폐기물,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 처리업체는 분류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령해야 한다, 생활쓰레기가 분류표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구 녹색시용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시·구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즉시 조정하도록 한다.

유해폐기물,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여 이용 처리한다.

- (1) 유해쓰레기는 고온처리, 화학분해 등의 방식으로 무해화 처리한다.
- (2) 젖은쓰레기는 생화학처리, 메탄가스 생산, 퇴비 등 방식으로 자원화이용, 무해화 처리해야 한다.
- (3) 마른쓰레기는 소각 등의 방식으로 무해화처리 한다.

제34조 처리업체는 산업·운영규범을 집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장비의 정상운동을 유지하며,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 (2) 기술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 처리하며 이미 분류한 생활쓰레기는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 (3) 폐수, 폐기가스, 고체폐기물, 소음 및 주변 토양오염 등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환경을 복구해야 한다.
- (4) 정기적으로 수집, 처리한 생활쓰레기의 공급원, 수량, 종류 등 정보를 시 녹색시용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자원화이용

제35조 시 발전개혁 주무부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함께 순환경제발전 지원정책을 제정하여 본 시의 수요와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사업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제36조 재활용품 회수업체는 반드시 국가와 시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재활용품을 재활용 회수업체에 위탁하여 자원화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시의 상무, 경제정보화,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자원화이용을 지도, 조정, 관리감독 해야 한다.

제37조 생산자·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국가 강제 회수리스트에 등록된 제품과 포장재를 회수·처리해야 한다. 생산자·판매자가 자체회수, 공동회수, 위탁회수 등 방식으로 폐기된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한다.

시 우체국 주무부서는 본 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택배업체를 지도하며 다방면으로 협업하여 포장재 회수 재활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한다.

제38조 시 녹화시용, 농업·농촌 주무부서는 본 시의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와 함께 젖은쓰레기 자원화이용 표준을 연구·제정하고,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에게 젖은쓰레기 자원화이용 표준연구·제정 및 보급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시의 관련 부서는 반드시 공공부처, 숲의 토지개량에 젖은쓰레기의 자원화 이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표준에 부합하는 젖은쓰레기 자원을 이용한 제품이 농업 생산에서 보급과 응용을 지원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현지에서 젖은쓰레기의 자원화이용을 실현하고, 당·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주택단지는 처리된 젖은쓰레기를 사업단위·주거지역·가정원림의 녹화로 이용되도록 권장한다.

제39조 마른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발전, 난방으로 이용한다.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석탄재, 비산먼지 등을 종합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 사업단위에 위탁하여 마른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제7장 사회참여

제40조 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青团)⁴²⁾, 중화 전국부녀연합회(妇联)⁴³⁾ 등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관리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녹화시용, 생태환경 등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교육기지를 설립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본 시의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업체는 반드시 대중에게 개방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대중의 참관을 지지해야 한다.

교육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을 본 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과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해야 한다.

언론매체는 생활쓰레기 관리법규와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에 대한 공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여론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

제41조 본 시는 주거지역, 촌의 당 조직을 지도핵심으로 하여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부동산소유자위원회, 부동산서비스업체, 부동산소유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 및 가도관사처와 협력하여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과 분류투척을 위한 조직, 동원, 선전,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요구사항을 주민·촌민협약(居民公約和村規民約)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관사처는 생활쓰레기 관리업체를 사회관리 업무에 포함시켜야 하며, 조직조정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42조 포인트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 자발적

42)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 14세 이상, 만 28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운영하는 청년 조직이다. / 출처 : 바이두 백과 요약 및 번역(2021.5.31.검색)

43)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华全国妇女联合会, All-China Women's Federation) :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여성조직으로,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공산당과 정부정책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여성조직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5.31.검색)

으로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습관을 갖추도록 격려한다.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생활쓰레기 분류투척을 위한 홍보, 시범활동 등을 권장한다. 시·구 인민정부, 관련 주무부서, 향·진 인민정부 및 가도판사처는 구매서비스를 통해 각종 사회조직을 생활쓰레기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제43조 본 시의 순환경제, 도시환경위생, 부동산관리, 관광·숙박, 요식, 가정서비스, 상업소매 등 분야의 관련 산업협회는 반드시 각 산업별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산업별 교육과 평가를 통해 공동으로 생활쓰레기를 관리하도록 추진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및 분류투척, 수집, 운송, 처리 및 자원화이용 등에 대해 시장주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45조 본 시의 문명청구(城区), 문명단지(文明社区), 문명 아파트, 문명촌진(村镇), 문명 단위, 문명 학교 등 대중적인 문명 활동과 위생기관, 위생 커뮤니티(촌) 등 위생 청결 활동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실태를 선진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6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사회감독원 제도를 실시한다. 시·구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관리 사회감독원을 공개 선별하여 생활쓰레기 관리의 전체 과정을 관리감독 한다.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은 생활쓰레기 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고·접수된 해당 부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국가와 시는 평가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서 분명한 성과를 낸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에게 표창을 장려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48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전체과정 분류, 자원화 이용, 무해화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한다. 관련 부서는 반드시 점검실태와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구의 녹색시용 주무부서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9조 시·구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가스, 폐기물, 소음 등 오염물질 배출이나 주변 토양오염 상황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

제50조 시·구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상무, 생태환경, 시장관리감독, 도시관리집법 등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전체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은 도시 네트워크화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1조 시·구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의 긴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돌발사건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업체는 반드시 즉시 시·구의 녹화시용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시·구 녹화시용 주무부서는 비상대책에 따라 즉시 해결해야 한다.

제52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를 타 구(区)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환경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반출구역은 반드시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구역에 환경보상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타 구역에서 처리하는 환경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제53조 시·구 인민정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종합 검증제도를 구축·보완하며 생활쓰레기 처리 총량통제 요구사항을 종합평가의 중요내용으로 지정한다.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 평가결과는 시·구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4조 다음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부서는 <상하이시 사회신용조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의 정보를 본 시 공공신용 정보플랫폼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신용불량 주체를 징계 조치해야 한다.

- (1)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하여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
- (2) 집법 부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본 시의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녹화시용 주무부서에서 제출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업체의 평가결과를 기업신용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 시의 주택관리 주무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 도시관리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부동산서비스업체의 분류투척 관리 책임상황을 부동산서비스업체의 신용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5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서 처리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6조 본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 시장, 표준화된 채소시장의 표준에 따라 젓은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천~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식업자 또는 음식배달 서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를 제공할 경우,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백~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숙박업체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일회용 일용품을 제공할 경우, 문화·관광 주무부서는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백~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7조 기업 사업단위가 본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해당 수집용기에 투척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가 즉시 시정명령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5천~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본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쓰레기를 재활용쓰레기·젓은쓰레기·마른쓰레기와 섞어 투척하거나 젓은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마른쓰레기를 섞어 투척할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2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8조 본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가 요구에 따라 수집용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는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백~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가 분류하여 운송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는 즉시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백~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 본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유해쓰레기, 젓은쓰레기, 마른쓰레기를 수집, 운송하거나 젓은쓰레기, 마른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는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3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0조 수집, 운송업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1) 본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차량·선박 미사용, 운송된 생활쓰레기의 종류표시 불분명, 밀폐운송 미실시, 실사건 모니터링 시스템 미설치한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천~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활쓰레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 (2) 본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류하여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수집, 운송하거나 위험폐기물, 공업 고체폐기물, 건설폐기물 등과 섞어 운송할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천~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활쓰레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 (3) 본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조건에 부합하는 운송장소를 운송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처리업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무부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1) 본 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활쓰레기를 즉시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 (2) 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요구사항에 따라 분류,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활쓰레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6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서 및 담당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소속단위 또는 상급부서는 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1)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및 분류투척, 수집, 운반, 처리,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2)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 (3) 신고와 제보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제10장 부칙

제63조 생활쓰레기의 투척, 수집, 운송, 처리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1) 요식업, 기업 사업단위의 식사제공 중 발생하는 젖은쓰레기와 폐식용유는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젖은쓰레기와 폐식용유 전용 수집용기에 별도로 수집하여 운송한 후 자원화이용 하도록 한다.
- (2) 폐가구 등 부피가 크고 정체성이 강한 대형 쓰레기는 재활용 회수업체에 예약하여 회수하거나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투척하여 분류수집, 운송, 처리, 자원화 이용, 무해화처리 해야 한다.
- (3)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부피가 작은 쓰레기는 재활용품 수집용기에 회수한다. 부피가 큰 쓰레기는 대형 폐기물 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회수하며,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 공업 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의 투척, 수집, 운송, 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축, 개축, 확장, 보수 또는 철거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이나 주택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투척, 수집, 운송, 처리는 국가나 본 시의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본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텐진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2020년 7월 29일 텐진시 제17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통과

(2020-07-29 발표 / 2020-12-0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텐진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목 차

제1장 총칙	165
제2장 계획 및 건설	167
제3장 원천감량	168
제4장 분류투척	169
제5장 분류수집, 운송, 처리	171
제6장 자원화이용	173
제7장 사회참여	174
제8장 감독관리	175
제9장 법률책임	177
제10장 부칙	179

텐진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텐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공고(제49호)

<텐진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는 2020년 7월 29일, 텐진시 제17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포하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텐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년 7월 29일

텐진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2020년 7월 29일 텐진시 제17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됨

제1장 총칙

제1조 생활쓰레기 관리 강화, 주거환경 개선, 대중건강 보장, 생태문명 건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정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칙감량, 투척, 수집, 운송, 처리, 자원화이용 및 관리감독 등 업무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고체폐기물 및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인정되는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제3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을 지지하며, 정부추진, 전 국민참여, 도농통합, 지역에 따른 적합성, 간편성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투척, 분류수집, 분류처리 하는 전체과정의 분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제4조 시·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를 확정·실행한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의 자금투자 보장 및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구역 내 생활쓰레기 일상적인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실행을 책임진다.

제5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행정 주무부서로서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관리업무를 조직, 조율, 지도,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수집, 운송, 처리시설을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의 재활용과 무해화 처리를 추진한다.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생태환경, 계획·자원, 주택도농건설, 상무, 농업·농촌, 재정, 시장관리감독, 문화·관광, 우체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한다.

제6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높이고 주동적으로 국가와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과 분류투척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성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 가정,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반드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7조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자원화이용을 위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기술 보급과 응용을 장려·지원하며,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서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기관·부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원천감량, 전체과정 분류관리, 자원화이용, 무해화처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에게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지식을 보급하여 사회전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언론매체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법률, 법규 및 생활쓰레기 원천감량, 분류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 및 관련 종합이용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둔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에게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장려한다.

제2장 계획 및 건설

제10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본 시 발전개혁, 계획·자원, 상무 등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행해야 한다. 시설 배치 계획이나 건설용지 관련 내용은 국토공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공간계획 등에 따라 확정된 생활쓰레기 수집, 저장, 운송, 처리시설에 대한 건설 부지는 법적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도시관리부문은 반드시 생활쓰레기 관리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 시설 건설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발전개혁, 자원·계획 등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의 시설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연간 투자계획과 연도별 토지공급계획에 각각 포함시켜야 한다.

본 시는 사회자본이 생활쓰레기 수집, 저장,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2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 상무, 계획·자원, 주택도농건설 등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수집, 저장, 운송, 처리시설이나 장소 건설에 대한 운영 규범을 제정·보완해야 한다. 계획·자원 주무부서는 반드시 건설규범에 관한 내용을 건설프로젝트의 공공 서비스시설의 계획, 설치 요구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 신축, 개건, 증축 건설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시설은 본 공사와 더불어 설계, 시공, 검수 등을 진행해야 하며, 시설 건설비용은 건설공정에 포함된다. 분할로 건설되는 경우,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시설은 본 공정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소유권자, 경영관리자, 관리업체는 분류에 적합하지 않는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을 개조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그중 주택단지와 농촌의 경우, 구 인민정부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의 개조나 배치를 한다.

제14조 어떠한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과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철거해서는 안 된다. 폐쇄, 방치, 철거를 해야 할 경우, 소재지의 구 도시관리, 생태환경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원천감량

제15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생산, 생활안전,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생산, 유통, 소비 등 분야에서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제16조 생산경영자는 상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우편, 택배, 배달 등의 업체는 본 시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할 때, 우선적으로 중복사용 및 회수이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을 최적화하여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친환경·최소화 포장을 권장·유도한다.

제17조 본 시는 초박형 비닐봉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등 국가가 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해할 수 없는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제한한다.

제품 소매·운영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택배·배달 업체는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회수상황을 국가 규정에 따라 상무, 우체국 등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 우체국 등 주무부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회수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 권장하며 순환가능하고 재활용이 쉬우며 분해가 가능한 대체제품들의 응용을 보급해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 사업단위, 국유기업,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기타 조직들은 친환경 사무용품, 설비,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 및 재생용지의 사용비율을 향상시킨다. 일회용 사무용품의 사용을 감소시켜, 사무실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기타 기업, 사회 조직은 사무용품의 절약과 중복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제19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에게 온·오프라인 거래 등을 통해 재활용 및 종합이용 가능한 제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장한다.

요식업체는 음식점에 알뜰소비 표지를 표시해 적정량을 주문하도록 유도하고, 요식업체,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는 주동적으로 일회용 식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관광·숙박업자는 주동적으로 일회용 일용품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본 시 농산물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시장, 마트 등 장소에 세척된 채소를 판매하도록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상무, 농업·농촌 주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제4장 분류투척

제21조 본 시 생활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음식물쓰레기는 쉽게 부패하고 유기질을 함유한 생활쓰레기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기업 사업단위 및 공공기관의 식품가공, 음식서비스, 급식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농산물 시장, 야채시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다.
- (2) 재활용품은 회수 가능한 생활쓰레기를 의미하며,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식물 등이 포함된다.
- (3) 유해폐기물은 인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생활쓰레기를 의미하며, 폐형광등, 폐약품, 폐온도계, 폐살충제, 소독제, 폐페인트, 포장재 등이 포함된다.
- (4) 기타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유해쓰레기 외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

제22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본 시의 상무, 생태환경 등 주무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지도 리스트를 제정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시 관리 주무부서는 다양한 방법의 간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류투척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3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용기 설치규범을 제정하여 각 장소와 구역별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용기의 설치, 사용, 표지 등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4조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투척의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유해폐기물, 기타폐기물의 분류표준에 따라 해당 수집용기에 투척해야 한다. 임의로 방치, 적치, 폐기, 소각해서는 안 되며, 재활용품은 재활용 수거지점이나 기타 재활용 경영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제25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제를 실시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 (1)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의 사무, 생산·경영 장소는 해당 단위를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
- (2) 부동산서비스업체(物业)가 있는 주택단지는 부동산서비스업체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
- (3) 부동산서비스업체가 없는 주택단지는 주민위원회가 관리책임자가 되며, 농촌거주 지역은 촌민위원회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 (4) 도로, 광장, 공원, 공공녹지, 공공수역(公共水域)⁴⁴⁾ 등 공공장소는 관리단위(单位) 또는 위탁한 단위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 (5) 공항, 기차역, 여객터미널, 기차역, 항구, 부두, 선박, 관광, 문화, 스포츠, 오락, 상업 등 공공장소는 경영관리단위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 (6) 건설현장의 공사현장은 시공업체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투척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26조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생활쓰레기 분류 일상적인 관리 체도를 구축한다.
- (2)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지점에 수집용기를 배치하여 용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수집용기가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즉시 보수, 교체, 세척하여 배치해야 한다.
- (3)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을 홍보하고,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투척하도록 관리감독 한다. 투척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제지 조치를 취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 (4)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분류투척된 생활쓰레기는 수집, 운송,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처리업체가 수집, 운송, 처리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44) 수역(水域) : 물 수, 지경 역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뜻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2021.6.02.검색)

제5장 분류수집, 운송, 처리

제27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수집, 운송, 처리 업무를 편성해야 하며, 공개입찰 등을 통해 조건을 갖춘 업체가 생활쓰레기 분류수집, 운송,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28조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처리 경영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영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을 따른다.

제29조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수집하며 음식물쓰레기와 기타쓰레기는 매일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에서 수집하고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당일 처리해야 한다.

유해폐기물은 생활쓰레기에서 분류하여 수집한 후, 운송, 이용, 처리하며, 위험폐기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관련 부서와 기업 사업단위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차량의 작업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업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분류한 생활쓰레기를 제때에 수집해 지정한 쓰레기 중간운송지점 또는 처리장으로 운송한다. 이미 분류하여 투척된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수집, 운송하거나 위험폐기물, 공업 고체폐기물, 건설폐기물, 녹화폐기물 등을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투척해서는 안 된다.
- (2) 표준에 부합되는 수집도구, 운송차량을 배치하고 운송차량에는 운행과 적재·하역 기록을 하는 관리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표시를 선명하게 해야 하며, 차량의 청결과 차제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한다.
- (3) 작업자는 생활쓰레기를 운송차량에 투척한 후 생활쓰레기 수집용기를 원위치에 놓아야 하며, 작업장을 청소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시설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정시간, 운행경로, 수집지점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송해야 한다.
- (4) 수집, 운송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임의로 적치, 방치, 투기해서는 안 된다.
- (5) 생활쓰레기 관리대장을 만들어 생활쓰레기 발생지, 종류, 수량, 행방 등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6) 국가 및 시의 기타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분류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는 수집, 운송업체가 이를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에게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수집, 운송업체는 반드시 구 도시관리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시·구 인민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집중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시는 식품가공, 음식서비스, 사내식당, 농산물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채소시장 등 현지에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현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와 본 시의 환경보호 관련 표준과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제32조 요식업, 사내식당 등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현지에서 처리하거나 자격을 갖춘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집중처리 해야 한다. 관리대장을 작성해 음식물쓰레기의 종류, 수량, 행방, 용도 등을 기재해 정기적으로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가축 양식장 등은 무해화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에게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분류 처리해야 한다.

- (1) 음식물쓰레기는 생화학처리 등 방법으로 자원화 또는 무해화처리를 해야 한다.
- (2) 재활용품은 자원화이용 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3) 유해폐기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처리를 해야 한다.
- (4) 기타폐기물은 소각 등 방법으로 무해화처리를 해야 한다.

제34조 생활쓰레기 처리기관은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1)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비의 정상운동을 유지해야 한다.
- (2)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야 한다.
- (3) 생활쓰레기는 관련규정 및 기술표준에 따라 분류처리하며, 분류된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 (4)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오수, 폐기가스, 고체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5) 생활쓰레기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된 발생원, 수량, 종류 등은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

(6) 시설고장, 사고 등 돌발사건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7) 생활쓰레기 처리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8) 국가와 시의 기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는 수집, 운송업체가 운송하는 생활쓰레기가 분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구 도시관리 주무부서에 즉시 보고해 처리해야 한다.

제35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를 타 구(区)에서 처리할 경우, 환경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가 발생한 구에서 타 구로 이전하여 처리가 필요할 경우, 구 인민정부는 반드시 해당 구에 환경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재정 부서 등과 함께 제정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6장 자원화이용

제36조 시 발전개혁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순환경제발전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본 시의 기능에 대한 수요와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재활용품 회수이용을 지지해야 한다.

제37조 시 상무 주무부서는 반드시 시 도시관리 등 부서와 함께再生资源 회수체계 구축계획을 구합해再生资源 회수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구축한다.再生资源 재활용을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과 연계해 회수통계를 생활쓰레기 통계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8조再生资源 회수 경영자는 고정된 재활용품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하며, 지역 사회로 직접 회수, 방문 회수 등 방식으로 재활용품 회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분류와再生资源 회수기능을 겸비한 장소나 적환장을 통해 재활용품 회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고객이 쓰레기 투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폐기물품을 수집하는 것을 권장한다.

再生资源 회수업체에게 ‘인터넷+회수’, 스마트회수 등 방식으로 재활용품 투척, 판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제39조 시 상무 주무부서는 시 도시관리, 재정 등 부서와 함께 저(低)가치의 재활용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저가치의 재활용품 자원화를 촉진시키는 장려 정책을 제정한다. 장려 정책 제정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40조 재생자원 회수업체는 국가와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품을 자원화이용 업체에 위탁하여 자원화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강제회수리스트에 포함된 제품과 포장재는 생산자, 판매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회수 처리해야 한다.

제41조 시·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공공녹지, 숲의 토지개량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준에 부합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이용 제품을 농업생산 분야에 보급·응용하도록 지원한다.

제42조 생활쓰레기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발전, 난방 등 용도로 활용한다. 환경 보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석탄재, 플라이 애시(fly ash) 등의 종합이용을 권장한다.

제7장 사회참여

제43조 각급 인민정부, 유관기관,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青团), 중화전국 부녀연합회(妇联)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동원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관리에 동참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44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을 사회 전체에 보급해야 한다.

본 시의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업체는 대중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일을 지정해야 한다.

제45조 교육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원칙감량, 재활용, 무해화처리 등 지식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과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을 직원의 일상교육과 관리내용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를 격려한다.

제47조 본 시는 주민위원회(居民委员会), 촌민위원회(村民委员会), 소유주위원회(业主委员会), 부동산서비스업체(物业服务企业), 소유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생활쓰레기 원칙감량 및 분류투척 하는 조직, 교육, 홍보, 지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민·촌민협약(居民公约和村规民约)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한다.

제48조 시·구 인민정부, 유관부서,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는 반드시 자원봉사 단체와 봉사자들에게 생활쓰레기 원천감량 및 분류투척에 대한 홍보, 유도, 시범활동을 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제49조 시용환경위생, 재생자원 회수, 부동산서비스관리(物业管理), 요식업, 관광, 숙박, 가정서비스, 상업 소매 등 관련 산업협회는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량에 대한 산업의 자율규범에 포함시키고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제50조 본 시는 포인트 교환, 포상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류투척의 습관을 가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1조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은 생활쓰레기 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과 신고를 하도록 권장한다. 신고를 접수한 관련 부서는 즉시 처리하고,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하여 보호해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52조 시·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관리 업무를 반드시 도시관리 심사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시의 문명구(文明城区)⁴⁵⁾, 문명단지(文明社区)⁴⁶⁾, 문명촌진(文明村镇)⁴⁷⁾, 문명단위(文明单位)⁴⁸⁾, 문명학교(文明校园)⁴⁹⁾ 등 대중적인 정신문명 창립활동과 위생단위(卫生单位), 위생단지·촌(卫生社区, 村) 등 위생건설 활동은 생활쓰레기 분류관리 관련 선정 평가표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3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생활쓰레기 투척, 수집, 운송, 처리 전체 과정을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45) 화평구(和平区), 하서구(河西区), 서청구(西青区), 북신구(北辰区), 빈해신구(滨海新区) 등 다수 / 출처 : 천진문명왕(天津文明网) 요약 및 번역 (2021.6.3.검색)

46) 대직고가도회현리사구(大直沽街道汇贤里社区) 천진철업가도신산사구(天津铁厂街道神山社区) 등 다수 / 출처 : 천진문명왕(天津文明网) 요약 및 번역 (2021.6.3.검색)

47) 천진시빈해신구태평진홍성촌(天津市滨海新区太平镇红星村) 천진시서청구장가와진(天津市西青区张家窝镇) 등 다수 / 출처 : 천진문명왕(天津文明网) 요약 및 번역 (2021.6.3.검색)

48) 천진시빈해신구당고대고구포태유지박물관(天津市滨海新区塘沽大沽口炮台遗址博物馆), 천진시화평구소방구원지대(天津市和平区消防救援支队), 天津市嘉华城市建设投资发展有限公司(천진시가화성시건설투자발전유한공사) 등 다수 / 출처 : 천진문명왕(天津文明网) 요약 및 번역 (2021.6.3.검색)

49) 천진대학(天津大学) 천진사범대학(天津师范大学), 천진의과대학(天津医科大学) 등 다수 / 출처 : 천진문명왕(天津文明网) 요약 및 번역 (2021.6.3.검색)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분류수집한 유해폐기물이 임시 보관소에서 운송,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주택도농건설 주무부서는 부동산서비스업체에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제54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반드시 시 전체 정무데이터를 공유플랫폼을 통해 생활쓰레기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 상무, 생태환경 주무부서 등 관리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55조 도시관리 주무부서와 기타 관리감독 관련 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수집, 운송, 처리과정을 관리감독하고 검사를 받는 기업 사업단위의 생산 현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서, 자료를 열람 복사해야 한다.

검사를 받는 기업 사업단위는 현장검사에 협조하고 현재 상황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를 받는 기업 사업단위의 영업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56조 본 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감독과 집법체계를 연동하여 구축하며, 도시관리, 시장관리, 생태환경 등 부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과 이동을 요식업체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수집, 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 주무부서에서 협조해야 한다.

제57조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는 생활쓰레기 관리업무를 친환경 관리업무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관리책임자의 관리책임을 촉구한다.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수집, 운송에 대한 업무 조율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58조 시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도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운송량, 처리량, 처리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59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관리 비상대책을 수립한다. 공공위생, 환경위생의 돌발사건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생활쓰레기 투척, 수집, 운송, 처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6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급 인민정부, 유관부서 및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책임 권한이 있는 기관은 시정명령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

- (1)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 (2) 행정허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 (3)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감량 및 분류투척, 수집, 운송, 처리, 자원화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4)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과 신고를 받고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5) 기타 직권남용, 직책태만, 부정행위 등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장소를 무단폐쇄, 방치, 철거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정명령 및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제6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업체가 제품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2천~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분해 불가 비닐봉투 사용 금지·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닐봉지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무, 우체국 등 주무부서는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식업체가 주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경우, 시장관리감독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5백~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 숙박업체가 주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문화관광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5백~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해당 수집용기에 투척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기관은 5만~50만 위안, 개인은 1백~5백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을 부과 받아야 할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와 관련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지원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킨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이 임의로 투척, 적치, 방치, 소각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기관 5만~50만 위안, 개인 1백~5백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6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수집 장소 미(未)건설, 수집용기 미(未)배치, 분류투척에 부적절한 행위를 권고·제지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천~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가 생활쓰레기를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경영자에 위탁하여 수집, 운송, 처리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수집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처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해당 업체에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개인은 1백~5백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양식장과 양식 사업단위가 무해화처리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제6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제69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업체에서 이미 분류한 생활쓰레기를 기타 쓰레기와 혼합하여 수집, 운송하거나 임의로 적치, 방치, 투척할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0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처리시설,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행·유지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기술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리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 주무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5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활쓰레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1조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단속하며, 기업 사업단위나 기타 생산경영자가 생활쓰레기 관리법률,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정보를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기재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를 처벌한다.

제7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문책한다.

10장 부칙

제73조 가구 등 부피가 크고 분리하여 재처리가 필요한 대형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곳에 버리거나 수집, 운송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업체가 수집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은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봉지에 밀봉하여 생활쓰레기 분류투척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별도로 적치해야 하고, 운송,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시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74조 본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산둥성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

산둥성 주택도농건설청 발표

(2019-12-30 발표 / 2020-04-11 시행)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산동성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

목 차

1. 총체적 요구사항	185
2. 과학 관리 강화, 전 과정 분류 시스템 구축	186
3. 사업 조치 강화, 상시 장기매커니즘 구축	187
4. 지도강화 실제효과 확보	189

산둥성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

1. 총체적 요구사항

(1) 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한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하고 생활쓰레기 전 과정 분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치를 기초로 정부주도로 추진한다. 국민 참여와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쓰레기 분류와 자원화 이용 제도를 기본 실행한다.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를 추진하여 도시 관리 수준과 주민 문명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 사업 목표

2020년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타이안(泰安) 등 주요도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처리 시스템과 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법률, 법규, 표준체계를 기본 구축한다. 기타 구(區), 도시에서는 전체적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생활쓰레기 분류를 완성해야 하며 최소 1개 현(시, 구)은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시범 현(시, 구)으로 건설해야 한다. 기타 구역의 도시는 공공기관의 생활 폐기물 분류를 전부 포함하고, 최소 1개 현(시·구)은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시범 현으로 기본적으로 조성한다.

2022년 구를 둔 각 도시 중 최소 1개 현(시·구)에서는 전체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를 완성해야 하고 기타 현(시·구)은 최소 1개 가로⁵⁰⁾(진)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 구를 건설해야 한다.

2025년까지, 구(區)를 둔 모든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를 완성해야 하고, 현급 시 생활쓰레기 분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한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류 관련 법률과 표준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여 과학적 관리, 장기 효과 촉진 매커니즘(长效机制), 지속적인 습관 등을 양성하여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50) 가로(街路) : 중국의 행정 구역의 하나로 행정 지위는 진(鎮), 향(乡), 민족향(民族乡), 소목(苏木), 민족소목(民族苏木), 현 관할구와 같은 향(乡)급 행정구역이다. 시할구(市辖区), 현급시(县级市), 현(县), 자치현(自治县), 기(旗), 특구(特区) 또는 지방시가 직접관할 한다. / 출처 : 바이두백과 요약 및 번역(2021.6.8.검색)

(3) 분류표준

도시 생활쓰레기는 유해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전문쓰레기(专业垃圾)⁵¹), 기타쓰레기로 구분한다. 생활쓰레기를 발생하는 기업(单位)과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하는 주체다. 기업 사무실과 생산 영업장에서는 유해쓰레기, 재활용품, 기타 쓰레기로 분류하며, 집중 급식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추가하며 자원화 이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주택단지는 유해쓰레기, 재활용품, 기타쓰레기로 분류하고, 여건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도 분류할 것을 권장한다. 시내 도로, 원림경관(园林景区), 교통허브(交通枢纽), 문화체육, 상업오락 등 공공장소에서는 재활용품, 기타쓰레기로 분류한다.

2. 과학 관리 강화, 전 과정 분류 시스템 구축

(1) 분류 투척

도시 생활쓰레기의 분류 및 배출은 책임제를 시행한다. 주택단지, 단위, 공공장소 등 다양한 주체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분한다. 관할 구역 내 각종 쓰레기 상세 목록, 배출빈도(投放频次), 배출장소(投放地点), 배출시간(投放时间)을 공개 공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대장을 작성하는 등 일상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정시간 및 장소(定时定点) 배출을 권장하고, 유해쓰레기를 기타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분류수집

표준화되고 통일된 생활쓰레기 수집 장소를 설치하고 각 지역 실제 상황에 맞추어 기존 수집장에 대하여 ‘배출 통을 하우스로 개량(통개방, 桶改房)⁵²’하는 방안과 수집 계량화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편이성, 안전성 원칙에 따라 유해쓰레기 수집과 임시 저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통계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분류하지 않으면 수집하지 않는(不分类、不收运)’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게 교육, 행정 처벌, 수집 거부와 사회신용시스템(社会征信体系)⁵³에 가입하는 등 방식을 취해 강제적으로 단속하여 생활쓰레기 투척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

51) 전문쓰레기(专业垃圾) : 인테리어쓰레기(装修垃圾), 대형쓰레기(大件垃圾), 정원쓰레기(园林垃圾)등을 말한다. 산동성 『빈저우시 생활쓰레기분류실시방안(滨州市生活垃圾分类工作实施方案)』에 분류 정의 인용 / 출처 : 빈저우시 인민정부(2020.5.7. 발표)

52) 통개방(桶改房) : 배출 쓰레기 통을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집장, 클린하우스 등 하우스(집) 형태로 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버드 학교, 휴지통 스마트하우스로 개조(哈佛大学将垃圾桶改装为智能小房子)』, / 출처 : 소후(SOHU) 기사인용 정리, (2018.4.11. 기사)

53) 사회신용시스템(社会征信体系) : 법인, 비법인 등 기업체나 자연인의 역사적 신용기록과 그 자질(资质), 품질(资质)을 구성하는 요소, 상태, 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현 신용상태를 진단하고 신용책임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 출처 : 바이두백과 요약 및 번역(2021.5.29.검색)

(3) 분류운송

쓰레기 분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선분후혼(先分後混)’⁵⁴⁾을 금지하며 전 과정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운송 빈도, 시간과 노선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규범화된 표시를 도색한 분류 운송 차량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유해쓰레기 중계(중간)운송을 규범화하고 유해쓰레기 수집의 임시 저장장소 계획 배치를 보완해야 한다. 재활용품의 수송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재활용 센터와 집산 시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재생 자원의 회수, 분류, 저장, 중계 등의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

(4) 분류 처리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등 시설건설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처리를 최적화하고 처리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유해쓰레기 처리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 과정 오염통제를 강화하며 유해쓰레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기적 배치와 과도기적 배치, 집중처리와 분산처리가 결합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 여건이 가능한 도시에서는 주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와 도시 분뇨, 시정(市政) 슬러지 등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형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을 계획하여 ‘인터넷+자원회수’ 모델을 모색하여 재활용품의 규범화, 전문화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각종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통일한다.

3. 사업 조치 강화, 상시 장기매커니즘 구축

(1) 제도 건설 강화

적시에 전 성의 시도(성진, 城镇)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14.5’규획에 편성해야 한다. 각 시, 현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특별계획 수립을 가속화하고 분류 방안을 제정해 목표 임무와 완료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 성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제정을 가속화하고, 각 지역의 지방성법규, 규장(規章)을 실시(出台)하도록 지도하며,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54) 선분후혼(先分後混) : 쓰레기 배출시 선(先)분류 하지만, 수집이나 운송에서 뒤섞이는 것을 말한다. 『선분후혼은 과도기적 해결책이 있는 것이 사실(垃圾先分後混确实存在 过渡期已有对策解决)』 기사 번역 및 정리, / 출처 : 허난교통방송(河南交通广播, 2019.11.20 기사 인용)

(2) 정책 보장을 강화

각급 정부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수집 처리 시스템 건설의 운영경비와 시설부지의 보장을 강화하여 분류 배출이 차질이 없이 처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도시 생활쓰레기 비용제도를 보완하고 분류질량과 연결되는 생활쓰레기 요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쓰레기 집중 수집처리 전문 프로젝트 지원 정책을 제정하여 유해쓰레기의 규범화된 수집과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저가치 재활용품(低价值可回收物)⁵⁵⁾ 회수보조금 정책을 제정하여 저가치 재활용품의 재활용을 유도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제품을 녹지, 임지 등 토양 개량에 사용하는 보조금 정책을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와 건축쓰레기의 자원화 보조정책을 보완하여 재활용품의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3) 과학기술 혁신 확대

쓰레기 관리의 신기술, 신소재, 신설비 개발 등 적용(应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차량 장비, 중개운송 시설, 자원화 이용시설, 말단 처리시설의 기술력과 과학기술 함량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유해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연구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유해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핵심기술과 장비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물인터넷(物联网, IoT), 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분류 전 과정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관리감독 매커니즘 완성

정부가 법에 따라 규제하고, 제3자 전문평가, 사회 전반을 감독하는 생활폐기물 분류 전 과정을 종합 감시하는 시스템 등을 정비해 업종 감시 수준을 높인다. 생활쓰레기 분류 민원 감독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원 상담 전화를 개설하여 제때에 대중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중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기층당조직(基层党组织)⁵⁶⁾의 동원조직 역할을 강화해 단위(单位)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분류하는 생활습관을 갖 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55) 저가치재활용품(低价值可回收物) : 회수 가치를 이용해 단순히 시장 조절만으로는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하기 어렵고, 규모화된 회수를 거쳐 집중 처리해야 재활용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폐유리류(废玻璃类), 폐목질류(废木质类), 폐(废)소프트포장류(废软包装类), 폐비닐류 등의 고체 폐기물 등을 말한다. / 출처 : 남경시 저가치 재활용품 회수처리잠정방법(南京市低价值可回收物回收处理暂行办法) 제2조 정의 요약 및 번역(2017.10.19. 발표)

56) 기층당조직(基层党组织) :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원, 가도사구(街道社区), 사회조직, 인민해방군 연대와 기타 하부단위의 하부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를 칭한다.(하부위원회가 기준을 거쳐 설치한 규율검사위원회도 포함한다.) / 출처 : 중국공산당신문망(中国共产党新闻网) 번역 및 요약(2012.9.18. 게재자료 인용)

4. 지도강화 실제효과 확보

(1) 조직 보장을 강화

성·도시·농촌(省城乡) 환경보호 일체화 업무 연석회의(联席会议)⁵⁷⁾ 제도를 조정 보완해야 한다. 성 정부 주요 지도자를 총소집인으로 지정하고 그 아래 관리인원을 소집인으로 임명한다. 연석회의 사무실은 성 주택도농건설청에 설치하며 주요 책임자가 판공실 주임직 겸하도록 하며, 종합 조율, 기술지도, 감독 평가와 홍보 유도 등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의 책임주체로서 주요 책임자가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사업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2) 협동 연동 추진

각급 관련 부문은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 협조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주택도시농촌(도시 관리)부문은 본 관할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의 추진, 검사지도와 감독평가를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문은 유치원, 초, 중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의 교육내용에 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지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 부문은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수집 처리시스템의 건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생태환경 부문은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후, 위험쓰레기 운송과 처리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며 상무부문은再生资源 재활용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홍보부문은 각종 매체의 생활쓰레기 분류 사업의 홍보를 조율, 조직 및 지도해야 한다. 기타 연석회의 구성원들은 직책에 따라 본 업계 생활쓰레기 분류와 관련되는 업무를 성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3) 습관 형성을 추진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제정하여 광범위한 홍보를 진행하여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전형 시범 활동을 통해 쓰레기 분류 시범구, 시범 가도(镇), 시범 단위, 시범 단지(촌), 시범 처리 기업, 시범 학교등을 설립하여 거점에서 전 지역으로 전면 추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학교, 교과서, 교실’로 보급하여 초, 중학생의 쓰레기 분류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지도자, 청소팀과 자원 봉사단체 구축을 강화하고 홍보 교육 활동을 심층 추진하여 대중의 습관을 양성시켜야 한다.

57) 연석회의(联席会议) :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발의해 자유롭게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연석회의의 형식을 통해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2007년 9월 21일 강소성 화이안에서 중국의 도시관리(법집행)국장 100여 명이 발기하여 정기적인 연석회의의 형식으로 도시 간 연락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관리와 도시관리 경험을 상호 거울삼아 공유한 사례가 있다. / 출처 : 바이두백과 요약 및 번역(2021.6.10.검색)

(4) 감독 검사를 강화

정기적인 조율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부문관리 집행 협동 체제를 건전히 하여 상황을 적시에 보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감독과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보상과 처벌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를 과학발전의 종합평가, 기관 단위 실적평가, 문명단위 건설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시켜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기층 관리 시스템을 모색하고 ‘현(구)-진(가도)-촌(거민)-대중’의 상시화 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中华人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十七次会议修订

(2020-04-29 修订·发布 / 2020-09-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目 录

第一章 总则	197
第二章 监督管理	199
第三章 工业固体废物	201
第四章 生活垃圾	203
第五章 建筑垃圾、农业固体废物等	206
第六章 危险废物	208
第七章 保障措施	211
第八章 法律责任	212
第九章 附则	217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四十三号)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于2020年4月29日修订通过，现予公布，自2020年9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20年4月29日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1995年10月30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通过2004年12月29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三次会议第一次修订根据2013年6月29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15年4月24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6年11月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2020年4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第二次修订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护和改善生态环境，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保障公众健康，维护生态安全，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适用本法。

固体废物污染海洋环境的防治和放射性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不适用本法。

第三条 国家推行绿色发展方式，促进清洁生产和循环经济发展。

国家倡导简约适度、绿色低碳的生活方式，引导公众积极参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

第四条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坚持减量化、资源化和无害化的原则。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采取措施，减少固体废物的产生量，促进固体废物的综合利用，降低固体废物的危害性。

第五条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坚持污染担责的原则。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措施，防止或者减少固体废物对环境的污染，对所造成的环境污染依法承担责任。

第六条 国家推行生活垃圾分类制度。

生活垃圾分类坚持政府推动、全民参与、城乡统筹、因地制宜、简便易行的原则。

第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负责。

国家实行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目标完成情况纳入考核评价的内容。

第八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领导，组织、协调、督促有关部门依法履行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

省、自治区、直辖市之间可以协商建立跨行政区域固体废物污染环境的联防联控机制，统筹规划制定、设施建设、固体废物转移等工作。

第九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对全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农业农村、商务、卫生健康、海关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农业农村、商务、卫生健康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

第十条 国家鼓励、支持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科学研究、技术开发、先进技术推广和科学普及，加强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科技支撑。

第十一条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基层群众性自治组织和新闻媒体应当加强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宣传教育和科学普及，增强公众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意识。学校应当开展生活垃圾分类以及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知识普及和教育。

第十二条 各级人民政府对在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以及相关的综合利用活动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章 监督管理

第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生态环境保护规划，并采取有效措施减少固体废物的产生量、促进固体废物的综合利用、降低固体废物的危害性，最大限度降低固体废物填埋量。

第十四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国家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术条件，制定固体废物鉴别标准、鉴别程序和国家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

第十五条 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生态环境、农业农村等主管部门，制定固体废物综合利用标准。

综合利用固体废物应当遵守生态环境法律法规，符合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使用固体废物综合利用产物应当符合国家规定的用途、标准。

第十六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全国危险废物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信息平台，推进固体废物收集、转移、处置等全过程监控和信息化追溯。

第十七条 建设产生、贮存、利用、处置固体废物的项目，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并遵守国家有关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的规定。

第十八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确定需要配套建设的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的要求，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内容纳入环境影响评价文件，落实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和破坏生态的措施以及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投资概算。

建设单位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对配套建设的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进行验收，编制验收报告，并向社会公开。

第十九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加强对相关设施、设备和场所的管理和维护，保证其正常运行和使用。

第二十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防扬散、防流失、防渗漏或者其他防止污染环境的措施，不得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固体废物。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向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及其最高水位线以下的滩地和岸坡以及法律法规规定的其他地点倾倒、堆放、贮存固体废物。

第二十一条 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禁止建设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集中贮存、利用、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

第二十二条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贮存、处置的，应当向固体废物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提出申请。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及时商经接受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同意后，在规定期限内批准转移该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未经批准的，不得转移。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利用的，应当报固体废物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备案信息通报接受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

第二十三条 禁止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

第二十四条 国家逐步实现固体废物零进口，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发展改革、海关等主管部门组织实施。

第二十五条 海关发现进口货物疑似固体废物的，可以委托专业机构开展属性鉴别，并根据鉴别结论依法管理。

第二十六条 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环境执法机构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有权对从事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等活动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现场检查。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并提供必要的资料。

实施现场检查，可以采取现场监测、采集样品、查阅或者复制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相关的资料等措施。检查人员进行现场检查，应当出示证件。对现场检查中知悉的商业秘密应当保密。

第二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对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的固体废物及设施、设备、场所、工具、物品予以查封、扣押：

- (一) 可能造成证据灭失、被隐匿或者非法转移的；
- (二) 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环境污染的。

第二十八条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信用记录制度，将相关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第二十九条 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住房城乡建设、农业农村、卫生健康等主管部门，定期向社会发布固体废物的种类、产生量、处置能力、利用处置状况等信息。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应当依法及时公开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信息，主动接受社会监督。

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应当依法向公众开放设施、场所，提高公众环境保护意识和参与程度。

第三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工业固体废物、生活垃圾、危险废物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情况纳入环境状况 and 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年度报告，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

第三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的单位和个人进行举报。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举报方式向社会公布，方便公众举报。

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处理并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对实名举报并查证属实的，给予奖励。

举报人举报所在单位的，该单位不得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对举报人进行打击报复。

第三章 工业固体废物

第三十二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等主管部门对工业固体废物对公众健康、生态环境的危害和影响程度等作出界定，制定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技术政策，组织推广先进的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生产工艺和设备。

第三十三条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研究开发、推广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量和降低工业固体废物危害性的生产工艺和设备，公布限期淘汰产生严重污染环境的工业固体废物的落后生产工艺、设备的名录。

生产者、销售者、进口者、使用者应当在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期限内分别停止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列入前款规定名录中的设备。生产工艺的采用者应当在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期限内停止采用列入前款规定名录中的工艺。

列入限期淘汰名录被淘汰的设备，不得转让给他人使用。

第三十四条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发展改革、生态环境等主管部门，定期发布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技术、工艺、设备和产品导向目录，组织开展工业固体废物资源综合利用评价，推动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

第三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规划，组织建设工业固体废物集中处置等设施，推动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

第三十六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建立健全工业固体废物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全过程的污染环境防治责任制度，建立工业固体废物管理台账，如实记录产生工业固体废物的种类、数量、流向、贮存、利用、处置等信息，实现工业固体废物可追溯、可查询，并采取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措施。

禁止向生活垃圾收集设施中投放工业固体废物。

第三十七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委托他人运输、利用、处置工业固体废物的，应当对受托方的主体资格和技术能力进行核实，依法签订书面合同，在合同中约定污染防治要求。

受托方运输、利用、处置工业固体废物，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和合同约定履行污染防治要求，并将运输、利用、处置情况告知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违反本条第一款规定的，除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外，还应当与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受托方承担连带责任。

第三十八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依法实施清洁生产审核，合理选择和利用原材料、能源和其他资源，采用先进的生产工艺和设备，减少工业固体废物的产生量，降低工业固体废物的危害性。

第三十九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取得排污许可证。排污许可的具体办法和实施步骤由国务院规定。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提供工业固体废物的种类、数量、流向、贮存、利用、处置等有关资料，以及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促进综合利用的具体措施，并执行排污许可管理制度的相关规定。

第四十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根据经济、技术条件对工业固体废物加以利用；对暂时不利用或者不能利用的，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等主管部门的规定建设贮存设施、场所，安全分类存放，或者采取无害化处置措施。贮存工业固体废物应当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

建设工业固体废物贮存、处置的设施、场所，应当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

第四十一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终止的，应当在终止前对工业固体废物的贮存、处置的设施、场所采取污染防治措施，并对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作出妥善处置，防止污染环境。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发生变更的，变更后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的规定对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进行安全处置或者采取有效措施保证该设施、场所安全运行。变更前当事人对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的污染防治责任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不得免除当事人的污染防治义务。

对2005年4月1日前已经终止的单位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进行安全处置的费用，由有关人民政府承担；但是，该单位享有的土地使用权依法转让的，应当由土地使用权受让人承担处置费用。当事人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不得免除当事人的污染防治义务。

第四十二条 矿山企业应当采取科学的开采方法和选矿工艺，减少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的产生量和贮存量。

国家鼓励采取先进工艺对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进行综合利用。

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贮存设施停止使用后，矿山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等规定进行封场，防止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四章 生活垃圾

第四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快建立分类投放、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的生活垃圾管理系统，实现生活垃圾分类制度有效覆盖。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生活垃圾分类工作协调机制，加强和统筹生活垃圾分类管理能力建设。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生活垃圾分类宣传，教育引导公众养成生活垃圾分类习惯，督促和指导生活垃圾分类工作。

第四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有计划地改进燃料结构，发展清洁能源，减少燃料废渣等固体废物的产生量。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产品生产和流通过程管理，避免过度包装，组织净菜上市，减少生活垃圾的产生量。

第四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统筹安排建设城乡生活垃圾收集、运输、处理设施，确定设施厂址，提高生活垃圾的综合利用和无害化处置水平，促进生活垃圾收集、处理的产业化发展，逐步建立和完善生活垃圾污染环境防治的社会服务体系。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统筹规划，合理安排回收、分拣、打包网点，促进生活垃圾的回收利用工作。

第四十六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农村生活垃圾污染环境的防治，保护和改善农村人居环境。

国家鼓励农村生活垃圾源头减量。城乡结合部、人口密集的农村地区和其他有条件的地方，应当建立城乡一体的生活垃圾管理系统；其他农村地区应当积极探索生活垃圾管理模式，因地制宜，就近就地利用或者妥善处理生活垃圾。

第四十七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应当制定生活垃圾清扫、收集、贮存、运输和处理设施、场所建设运行规范，发布生活垃圾分类指导目录，加强监督管理。

第四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等主管部门应当组织对城乡生活垃圾进行清扫、收集、运输和处理，可以通过招标等方式选择具备条件的单位从事生活垃圾的清扫、收集、运输和处理。

第四十九条 产生生活垃圾的单位、家庭和个人应当依法履行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义务，承担生活垃圾产生者责任。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依法在指定的地点分类投放生活垃圾。禁止随意倾倒、抛撒、堆放或者焚烧生活垃圾。

机关、事业单位等应当在生活垃圾分类工作中起示范带头作用。

已经分类投放的生活垃圾，应当按照规定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

第五十条 清扫、收集、运输、处理城乡生活垃圾，应当遵守国家有关环境保护和环境卫生管理的规定，防止污染环境。

从生活垃圾中分类并集中收集的有害垃圾，属于危险废物的，应当按照危险废物管理。

第五十一条 从事公共交通运输的经营单位，应当及时清扫、收集运输过程中产生的生活垃圾。

第五十二条 农贸市场、农产品批发市场等应当加强环境卫生管理，保持环境卫生清洁，对所产生的垃圾及时清扫、分类收集、妥善处理。

第五十三条 从事城市新区开发、旧区改建和住宅小区开发建设、村镇建设的单位，以及机场、码头、车站、公园、商场、体育场馆等公共设施、场所的经营管理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卫生的规定，配套建设生活垃圾收集设施。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统筹生活垃圾公共转运、处理设施与前款规定的收集设施的有效衔接，并加强生活垃圾分类收运体系和再生资源回收体系在规划、建设、运营等方面的融合。

第五十四条 从生活垃圾中回收的物质应当按照国家规定的用途、标准使用，不得用于生产可能危害人体健康的产品。

第五十五条 建设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应当符合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和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的环境保护和环境卫生标准。

鼓励相邻地区统筹生活垃圾处理设施建设，促进生活垃圾处理设施跨行政区域共建共享。

禁止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确有必要关闭、闲置或者拆除的，应当经所在地的市、县级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商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同意后核准，并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

第五十六条 生活垃圾处理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安装使用监测设备，实时监测污染物的排放情况，将污染排放数据实时公开。监测设备应当与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

第五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负责组织开展厨余垃圾资源化、无害化处理工作。

产生、收集厨余垃圾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将厨余垃圾交由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进行无害化处理。

禁止畜禽养殖场、养殖小区利用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喂畜禽。

第五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产生者付费原则，建立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生活垃圾处理收费标准，应当根据本地实际，结合生活垃圾分类情况，体现分类计价、计量收费等差别化管理，并充分征求公众意见。生活垃圾处理收费标准应当向社会公布。

生活垃圾处理费应当专项用于生活垃圾的收集、运输和处理等，不得挪作他用。

第五十九条 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可以结合实际，制定本地方生活垃圾具体管理办法。

第五章 建筑垃圾、农业固体废物等

第六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建筑垃圾污染环境的防治，建立建筑垃圾分类处理制度。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包括源头减量、分类处理、消纳设施和场所布局及建设等在内的建筑垃圾污染环境防治工作规划。

第六十一条 国家鼓励采用先进技术、工艺、设备和管理措施，推进建筑垃圾源头减量，建立建筑垃圾回收利用体系。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推动建筑垃圾综合利用产品应用。

第六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负责建筑垃圾污染环境防治工作，建立建筑垃圾全过程管理制度，规范建筑垃圾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行为，推进综合利用，加强建筑垃圾处置设施、场所建设，保障处置安全，防止污染环境。

第六十三条 工程施工单位应当编制建筑垃圾处理方案，采取污染防治措施，并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备案。

工程施工单位应当及时清运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等固体废物，并按照环境卫生主管部门的规定进行利用或者处置。

工程施工单位不得擅自倾倒、抛撒或者堆放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

第六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指导农业固体废物回收利用体系建设，鼓励和引导有关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农业固体废物，加强监督管理，防止污染环境。

第六十五条 产生秸秆、废弃农用薄膜、农药包装废弃物等农业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回收利用和其他防止污染环境的措施。

从事畜禽规模养殖应当及时收集、贮存、利用或者处置养殖过程中产生的畜禽粪污等固体废物，避免造成环境污染。

禁止在人口集中地区、机场周围、交通干线附近以及当地人民政府划定的其他区域露天焚烧秸秆。

国家鼓励研究开发、生产、销售、使用在环境中可降解且无害的农用薄膜。

第六十六条 国家建立电器电子、铅蓄电池、车用动力电池等产品的生产者责任延伸制度。

电器电子、铅蓄电池、车用动力电池等产品的生产者应当按照规定以自建或者委托等方式建立与产品销售量相匹配的废旧产品回收体系，并向社会公开，实现有效回收和利用。

国家鼓励产品的生产者开展生态设计，促进资源回收利用。

第六十七条 国家对废弃电器电子产品等实行多渠道回收和集中处理制度。

禁止将废弃机动车船等交由不符合规定条件的企业或者个人回收、拆解。

拆解、利用、处置废弃电器电子产品、废弃机动车船等，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

第六十八条 产品和包装物的设计、制造，应当遵守国家有关清洁生产的规定。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应当根据国家经济和技术条件、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状况以及产品的技术要求，组织制定有关标准，防止过度包装造成环境污染。

生产经营者应当遵守限制商品过度包装的强制性标准，避免过度包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加强对过度包装的监督管理。

生产、销售、进口依法被列入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的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该产品和包装物进行回收。

电子商务、快递、外卖等行业应当优先采用可重复使用、易回收利用的包装物，优化物品包装，减少包装物的使用，并积极回收利用包装物。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商务、邮政等主管部门应当加强监督管理。

国家鼓励和引导消费者使用绿色包装和减量包装。

第六十九条 国家依法禁止、限制生产、销售和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

商品零售场所开办单位、电子商务平台企业和快递企业、外卖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商务、邮政等主管部门报告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回收情况。

国家鼓励和引导减少使用、积极回收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推广应用可循环、易回收、可降解的替代产品。

第七十条 旅游、住宿等行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推行不主动提供一次性用品。

机关、企业事业单位等的办公场所应当使用有利于保护环境的产品、设备和设施，减少使用一次性办公用品。

第七十一条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单位应当安全处理污泥，保证处理后的污泥符合国家有关标准，对污泥的流向、用途、用量等进行跟踪、记录，并报告城镇排水主管部门、生态环境主管部门。

县级以上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将污泥处理设施纳入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推动同步建设污泥处理设施与污水处理设施，鼓励协同处理，污水处理费征收标准和补偿范围应当覆盖污泥处理成本和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成本。

第七十二条 禁止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城镇污水处理设施产生的污泥和处理后的污泥。禁止重金属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含量超标的污泥进入农用地。

从事水体清淤疏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清淤疏浚过程中产生的底泥，防止污染环境。

第七十三条 各级各类实验室及其设立单位应当加强对实验室产生的固体废物的管理，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实验室固体废物。实验室固体废物属于危险废物的，应当按照危险废物管理。

第六章 危险废物

第七十四条 危险废物污染环境的防治，适用本章规定；本章未作规定的，适用本法其他有关规定。

第七十五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国家危险废物名录，规定统一的危险废物鉴别标准、鉴别方法、识别标志和鉴别单位管理要求。国家危险废物名录应当动态调整。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危险废物的危害特性和产生数量，科学评估其环境风险，实施分级分类管理，建立信息化监管体系，并通过信息化手段管理、共享危险废物转移数据和信息。

第七十六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编制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建设规划，科学评估危险废物处置需求，合理布局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确保本行政区域的危险废物得到妥善处置。

编制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建设规划，应当征求有关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专家和公众等方面的意见。

相邻省、自治区、直辖市之间可以开展区域合作，统筹建设区域性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

第七十七条 对危险废物的容器和包装物以及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设施、场所，应当按照规定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

第七十八条 产生危险废物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危险废物管理计划；建立危险废物管理台账，如实记录有关信息，并通过国家危险废物信息管理系统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申报危险废物的种类、产生量、流向、贮存、处置等有关资料。

前款所称危险废物管理计划应当包括减少危险废物产生量和降低危险废物危害性的措施以及危险废物贮存、利用、处置措施。危险废物管理计划应当报产生危险废物的单位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产生危险废物的单位已经取得排污许可证的，执行排污许可管理制度的规定。

第七十九条 产生危险废物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环境保护标准要求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不得擅自倾倒、堆放。

第八十条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取得许可证。许可证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制定。

禁止无许可证或者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禁止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活动。

第八十一条 收集、贮存危险废物，应当按照危险废物特性分类进行。禁止混合收集、贮存、运输、处置性质不相容而未经安全性处置的危险废物。

贮存危险废物应当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禁止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贮存。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贮存危险废物不得超过一年；确需延长期限的，应当报经颁发许可证的生态环境主管部门批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八十二条 转移危险废物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填写、运行危险废物电子或者纸质转移联单。

跨省、自治区、直辖市转移危险废物的，应当向危险废物移出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移出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及时商经接受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同意后，在规定期限内批准转移该危险废物，并将批准信息通报相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交通运输主管部门。未经批准的，不得转移。

危险废物转移管理应当全程管控、提高效率，具体办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公安部门制定。

第八十三条 运输危险废物，应当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并遵守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

禁止将危险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

第八十四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转作他用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消除污染处理，方可使用。

第八十五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单位，应当依法制定意外事故的防范措施和应急预案，并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进行检查。

第八十六条 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性事件，造成危险废物严重污染环境的单位，应当立即采取有效措施消除或者减轻对环境的污染危害，及时通报可能受到污染危害的单位和居民，并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和有关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

第八十七条 在发生或者有证据证明可能发生危险废物严重污染环境、威胁居民生命财产安全时，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立即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有关部门报告，由人民政府采取防止或者减轻危害的有效措施。有关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责令停止导致或者可能导致环境污染事故的作业。

第八十八条 重点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退役前，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设施、场所采取污染防治措施。退役的费用应当预提，列入投资概算或者生产成本，专门用于重点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退役。具体提取和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

第八十九条 禁止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

第九十条 医疗废物按照国家危险废物名录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医疗废物集中处置能力建设。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健康、生态环境等主管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加强对医疗废物收集、贮存、运输、处置的监督管理，防止危害公众健康、污染环境。

医疗卫生机构应当依法分类收集本单位产生的医疗废物，交由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及时收集、运输和处置医疗废物。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医疗废物流失、泄漏、渗漏、扩散。

第九十一条 重大传染病疫情等突发事件发生时，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统筹协调医疗废物等危险废物收集、贮存、运输、处置等工作，保障所需的车辆、场地、处置设施和防护物资。卫生健康、生态环境、环境卫生、交通运输等主管部门应当协同配合，依法履行应急处置职责。

第七章 保障措施

第九十二条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编制国土空间规划和相关专项规划时，应当统筹生活垃圾、建筑垃圾、危险废物等固体废物转运、集中处置等设施建设需求，保障转运、集中处置等设施用地。

第九十三条 国家采取有利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鼓励、支持有关方面采取有利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措施，加强对从事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人员的培训和指导，促进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产业专业化、规模化发展。

第九十四条 国家鼓励和支持科研单位、固体废物产生单位、固体废物利用单位、固体废物处置单位等联合攻关，研究开发固体废物综合利用、集中处置等的新技术，推动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进步。

第九十五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按照事权划分的原则安排必要的资金用于下列事项：

- （一）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科学研究、技术开发；
- （二）生活垃圾分类；
- （三）固体废物集中处置设施建设；
- （四）重大传染病疫情等突发事件产生的医疗废物等危险废物应急处置；
- （五）涉及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其他事项。

使用资金应当加强绩效管理和审计监督，确保资金使用效益。

第九十六条 国家鼓励和支持社会力量参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并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政策扶持。

第九十七条 国家发展绿色金融，鼓励金融机构加大对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项目的信贷投放。

第九十八条 从事固体废物综合利用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享受税收优惠。

国家鼓励并提倡社会各界为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捐赠财产，并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税收优惠。

第九十九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投保环境污染责任保险。

第一百条 国家鼓励单位和个人购买、使用综合利用产品和可重复使用产品。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政府采购过程中，应当优先采购综合利用产品和可重复使用产品。

第八章 法律责任

第一百零一条 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 (一) 未依法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的；
- (二) 对违法行为进行包庇的；
- (三) 未依法查封、扣押的；
- (四) 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后未予查处的；
- (五) 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行为的。

依照本法规定应当作出行政处罚决定而未作出的，上级主管部门可以直接作出行政处罚决定。

第一百零二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 (一)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未依法及时公开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信息的；
- (二) 生活垃圾处理单位未按照国家有关规定安装使用监测设备、实时监测污染物的排放情况并公开污染排放数据的；
- (三) 将列入限期淘汰名录被淘汰的设备转让给他人使用的；
- (四) 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建设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集中贮存、利用、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的；
- (五)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贮存、处置未经批准的；
- (六)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利用未报备案的；
- (七) 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工业固体废物，或者未采取相应防范措施，造成工业固体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其他环境污染的；

- (八)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未建立固体废物管理台账并如实记录的；
- (九)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违反本法规定委托他人运输、利用、处置工业固体废物的；
- (十) 贮存工业固体废物未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的；
- (十一) 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固体废物管理其他要求，污染环境、破坏生态的。

有前款第一项、第八项行为之一，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第九项、第十项、第十一项行为之一，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七项行为，处所需处置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十万元的，按十万元计算。对前款第十一项行为的处罚，有关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一百零三条 违反本法规定，以拖延、围堵、滞留执法人员等方式拒绝、阻挠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四条 违反本法规定，未依法取得排污许可证产生工业固体废物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第一百零五条 违反本法规定，生产经营者未遵守限制商品过度包装的强制性标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六条 违反本法规定，未遵守国家有关禁止、限制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规定，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报告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情况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商务、邮政等主管部门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七条 从事畜禽规模养殖未及时收集、贮存、利用或者处置养殖过程中产生的畜禽粪污等固体废物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第一百零八条 违反本法规定，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单位对污泥流向、用途、用量等未进行跟踪、记录，或者处理后的污泥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违反本法规定，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城镇污水处理设施产生的污泥和处理后的污泥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二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第一百零九条 违反本法规定，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淘汰的设备，或者采用淘汰的生产工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提出意见，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第一百一十条 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贮存设施停止使用后，未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规定进行封场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一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

- (一) 随意倾倒、抛撒、堆放或者焚烧生活垃圾的；
- (二) 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的；
- (三) 工程施工单位未编制建筑垃圾处理方案报备案，或者未及时清运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的；
- (四) 工程施工单位擅自倾倒、抛撒或者堆放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或者未按规定对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进行利用或者处置的；
- (五) 产生、收集厨余垃圾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未将厨余垃圾交由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进行无害化处理的；
- (六) 畜禽养殖场、养殖小区利用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喂畜禽的；
- (七) 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生活垃圾的。

单位有前款第一项、第七项行为之一，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单位有前款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行为之一，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个人有前款第一项、第五项、第七项行为之一，处一百元以上五百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未在指定的地点分类投放生活垃圾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单位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依法处以罚款。

第一百一十二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 (一) 未按照规定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的；
- (二) 未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危险废物管理计划或者申报危险废物有关资料的；
- (三) 擅自倾倒、堆放危险废物的；
- (四) 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从事经营活动的；
- (五) 未按照国家有关规定填写、运行危险废物转移联单或者未经批准擅自转移危险废物的；
- (六) 未按照国家环境保护标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或者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贮存的；
- (七) 未经安全性处置，混合收集、贮存、运输、处置具有不相容性质的危险废物的；
- (八) 将危险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的；
- (九) 未经消除污染处理，将收集、贮存、运输、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转作他用的；
- (十) 未采取相应防范措施，造成危险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其他环境污染的；
- (十一) 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危险废物的；
- (十二) 未制定危险废物意外事故防范措施和应急预案的；
- (十三) 未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危险废物管理台账并如实记录的。

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五项、第六项、第七项、第八项、第九项、第十二项、第十三项行为之一，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三项、第四项、第十项、第十一项行为之一，处所需处置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二十万元的，按二十万元计算。

第一百一十三条 违反本法规定，危险废物产生者未按照规定处置其产生的危险废物被责令改正后拒不改正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组织代为处置，处置费用由危险废物产生者承担；拒不承担代为处置费用的，处代为处置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四条 无许可证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一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并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

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限制生产、停产整治，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还可以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一百一十五条 违反本法规定，将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输入境内的，由海关责令退运该固体废物，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承运人对前款规定的固体废物的退运、处置，与进口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一十六条 违反本法规定，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的，由海关责令退运该危险废物，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七条 对已经非法入境的固体废物，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依法向海关提出处理意见，海关应当依照本法第一百一十五条的规定作出处罚决定；已经造成环境污染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进口者消除污染。

第一百一十八条 违反本法规定，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除依法承担赔偿责任外，由生态环境主管部门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处以罚款，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造成重大或者特大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还可以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关闭。

造成一般或者较大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按照事故造成的直接经济损失的一倍以上三倍以下计算罚款；造成重大或者特大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按照事故造成的直接经济损失的三倍以上五倍以下计算罚款，并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的收入百分之五十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九条 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本法规定排放固体废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应当组织复查，发现其继续实施该违法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按日连续处罚。

第一百二十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的拘留；情节较轻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的拘留：

- (一) 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固体废物，造成严重后果的；
- (二) 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建设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集中贮存、利用、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的；
- (三) 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堆放、利用、处置的；
- (四) 无许可证或者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

(五) 未经批准擅自转移危险废物的；

(六) 未采取防范措施，造成危险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其他严重后果的。

第一百二十一条 固体废物污染环境、破坏生态，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有关机关和组织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一百二十二条 固体废物污染环境、破坏生态给国家造成重大损失的，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指定的部门、机构组织与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磋商，要求其承担损害赔偿责任；磋商未达成一致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对于执法过程中查获的无法确定责任人或者无法退运的固体废物，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处理。

第一百二十三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人身、财产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九章 附则

第一百二十四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 (一) 固体废物，是指在生产、生活和其他活动中产生的丧失原有利用价值或者虽未丧失利用价值但被抛弃或者放弃的固态、半固态和置于容器中的气态的物品、物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纳入固体废物管理的物品、物质。经无害化加工处理，并且符合强制性国家产品质量标准，不会危害公众健康和生态安全，或者根据固体废物鉴别标准和鉴别程序认定为不属于固体废物的除外。
- (二) 工业固体废物，是指在工业生产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
- (三) 生活垃圾，是指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生活垃圾的固体废物。
- (四) 建筑垃圾，是指建设单位、施工单位新建、改建、扩建和拆除各类建筑物、构筑物、管网等，以及居民装饰装修房屋过程中产生的弃土、弃料和其他固体废物。
- (五) 农业固体废物，是指在农业生产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
- (六) 危险废物，是指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或者根据国家规定的危险废物鉴别标准和鉴别方法认定的具有危险特性的固体废物。

(七) 贮存，是指将固体废物临时置于特定设施或者场所中的活动。

(八) 利用，是指从固体废物中提取物质作为原材料或者燃料的活动。

(九) 处置，是指将固体废物焚烧和用其他改变固体废物的物理、化学、生物特性的方法，达到减少已产生的固体废物数量、缩小固体废物体积、减少或者消除其危险成分的活动，或者将固体废物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规定要求的填埋场的活动。

第一百二十五条 液态废物的污染防治，适用本法；但是，排入水体的废水的污染防治适用有关法律，不适用本法。

第一百二十六条 本法自2020年9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GB 18599-2020)

2.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

(代替 GB 18599-2016)

生态环境部,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发布

(2020-11-26 发布 / 2021-07-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

目 录

前言	223
1. 适用范围	225
2. 规范性引用文件	225
3. 术语和定义	226
4. 贮存场和填埋场选址要求	228
5. 贮存场和填埋场技术要求	228
6. 入场要求	230
7. 贮存场和填埋场运行要求	230
8. 充填及回填利用污染控制要求	231
9. 封场及土地复垦要求	232
10. 污染物监测要求	232
11. 实施与监督	234
附录A（资料性附录）单人工复合衬层系统说明	236

前 言

为贯彻《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等法律法规，防治环境污染，改善生态环境质量，推动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填埋技术进步，制定本标准。

本标准规定了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的选址、建设、运行、封场、土地复垦等过程的环境保护要求，以及替代贮存、填埋处置的一般工业固体废物充填及回填利用环境保护要求，以及监测要求和实施与监督等内容。

本标准强制性标准。

本标准首次发布于2001年，本次为首次修订。

此次修订的主要内容：

- 修改标准名称为《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
- 明确了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的定义；
- 明确了第I类及第II类一般工业固体废物的定义；
- 细化了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的选址要求；
- 增加了一般工业固体废物充填、回填利用污染控制技术要求；
- 完善了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运行期，封场及后期管理污染控制技术要求；
- 增加了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土地复垦污染控制技术要求。

本标准附录A是资料性附录。

本标准规定的污染物排放限值为基本要求。省级人民政府对本标准中未作规定的大气、水污染物控制项目，可以制定地方污染物排放标准；对本标准已作规定的大气、水污染物控制项目，可以制定严于本标准的地方污染物排放标准。

本标准由生态环境部固体废物与化学品司、法规与标准司组织制订。

本标准主要起草单位：中国环境科学研究院、上海交通大学、中节能清洁技术发展有限公司、生态环境部固体废物与化学品管理技术中心。

本标准生态环境部2020年11月26日批准。

本标准自2021年7月1日起实施。自本标准实施之日起，《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处置场污染控制标准》（GB 18599-2001）废止。各地可根据当地生态环境保护的需要和经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GB 18599-2020)

济、技术条件，由省级人民政府批准提前实施本标准。

本标准由生态环境部解释。

为贯彻<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和<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保护和改善生活环境、生态环境，保障人体健康，制定本标准。

本标准规定了环境空气功能区分类、标准分级、污染物项目、平均时间及浓度限值、监测方法、数据统计的有效性规定及实施与监督等内容。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本标准中未作规定的污染物项目，可以制定地方环境空气质量标准。

本标准中的污染物浓度均为质量浓度。

本标准首次发布于1982年。1996年第一次修订，2000年第二次修订，本次为第三次修订。本标准将根据国家经济社会发展状况和环境保护要求适时修订。

本次修订的主要内容：

- 调整了环境空气功能区分类，将三类区并入二类区；
- 增设了颗粒物（粒径小于等于 $2.5\mu\text{m}$ ）浓度限值和臭氧8小时平均浓度限值；
- 调整了颗粒物（粒径小于等于 $10\mu\text{m}$ ）、二氧化氮、铅和苯并[a]芘等的浓度限值；
- 调整了数据统计的有效性规定。自本标准实施之日起，<环境空气质量标准>（GB 3095—1996）、<〈环境空气质量标准〉（GB 3095—1996）修改单〉（环发〔2000〕1号）和<保护农作物的大气污染物最高允许浓度〉（GB 9137—88）废止。

本标准附录A为资料性附录，为各省级人民政府制定地方环境空气质量标准提供参考。

本标准由环境保护部科技标准司组织制订。

本标准主要起草单位：中国环境科学研究院、中国环境监测总站。

本标准环境保护部2012年2月29日批准。本标准由环境保护部解释。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

1. 适用范围

本标准规定了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的选址、建设、运行、封场、土地复垦等过程的环境保护要求，以及替代贮存、填埋处置的一般工业固体废物充填及回填利用环境保护要求，以及监测要求和实施与监督等内容。

本标准适用于新建、改建、扩建的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和填埋场的选址、建设、运行、封场、土地复垦的污染控制和环境管理，现有的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和填埋场的运行、封场、土地复垦的污染控制和环境管理，以及替代贮存、填埋处置的一般工业固体废物充填及回填利用的污染控制及环境管理。

针对特定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发布的专用国家环境保护标准的，其贮存、填埋过程执行专用环境保护标准。

采用库房、包装工具（罐、桶、包装袋等）贮存一般工业固体废物过程的污染控制，不适用本标准，其贮存过程应满足相应防渗漏、防雨淋、防扬尘等环境保护要求。

2. 规范性引用文件

下列文件对于本标准的应用是必不可少的。凡是注日期的引用文件，仅注日期的版本适用于本标准。凡是不注日期的引用文件，其最新版本（包括所有的修改单）适用于本标准。

GB 8978	污水综合排放标准
GB 12348	工业企业厂界环境噪声排放标准
GB 14554	恶臭污染物排放标准
GB 15562.2	环境保护图形标志—固体废物贮存（处置）场
GB 15618	土壤环境质量农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试行）
GB 16297	大气污染物综合排放标准
GB 16889	生活垃圾填埋场污染控制标准
GB 36600	土壤环境质量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试行）
GB/T 14848	地下水质量标准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和填埋污染控制标准(GB 18599-2020)

GB/T 15432	环境空气总悬浮颗粒物的测定重量法
GB/T 17643	土工合成材料聚乙烯土工膜
HJ 25.3	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评估技术导则
HJ 91.1	污水监测技术规范
HJ/T 164	地下水环境监测技术规范
HJ 557	固体废物浸出毒性浸出方法水平振荡法
HJ 761	固体废物有机质的测定灼烧减量法
HJ 819	排污单位自行监测技术指南总则
NY/T 1121.16	土壤检测第16部分：土壤水溶性盐总量的测定
TD/T 1036	土地复垦质量控制标准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原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31号）
《环境监测管理办法》（原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39号）

3. 术语和定义

3.1 一般工业固体废物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企业在工业生产过程中产生且不属于危险废物的工业固体废物。

3.2 贮存 storage

将固体废物临时置于特定设施或者场所中的活动。

3.3 填埋 landfill

将固体废物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规定要求的填埋场的活动。

3.4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storage facility

用于临时堆放一般工业固体废物的土地贮存设施。封场后的贮存场按照填埋场进行管理。

3.5 一般工业固体废物填埋场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landfill

用于最终处置一般工业固体废物的填埋设施。

3.6 第I类一般工业固体废物class 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按照HJ 557规定方法获得的浸出液中任何一种特征污染物浓度均未超过GB 8978最高允许排放浓度（第二类污染物最高允许排放浓度按照一级标准执行），且pH值在6~9范围之内的一般工业固体废物。

3.7 第II类一般工业固体废物class I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按照HJ 557规定方法获得的浸出液中有一种或一种以上的特征污染物浓度超过GB 8978最高允许排放浓度（第二类污染物最高允许排放浓度按照一级标准执行），或pH值在6~9范围之外的一般工业固体废物。

3.8 I类场class 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storage and landfill facility

可接受本标准6.1条规定的各类一般工业固体废物并符合本标准相关污染控制技术要求规定的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及填埋场。

3.9 II类场class II non-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storage and landfill facility

可接受本标准6.2条、6.3条规定的各类一般工业固体废物并符合本标准相关污染控制技术要求规定的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及填埋场。

3.10 充填 mining with backfilling

为满足采矿工艺需要，以支撑围岩、防止岩石移动、控制地压为目的，利用一般工业固体废物为充填材料填充采空区的活动。

3.11 回填 backfilling

在复垦、景观恢复、建设用地平整、农业用地平整以及防止地表塌陷的地貌保护等工程中，以土地复垦为目的，利用一般工业固体废物替代土、砂、石等生产材料填充地下采空空间、露天开采地表挖掘区、取土场、地下开采塌陷区以及天然坑洼区的活动。

3.12 天然基础层native foundation

位于防渗衬层下部，未经扰动的岩土层。

3.13 人工防渗衬层artificial liner

人工构筑的防止渗滤液进入土壤及地下水的隔水层。

3.14 单人工复合衬层single composite liner system

由一层人工合成材料衬层和粘土类衬层构成的防渗衬层，其结构参见附录A。

3.15 相容性 compatibility

某种固体废物同其他固体废物接触时不会产生有害物质，不会燃烧或爆炸，不发生其他可能对贮存、填埋产生不利影响的化学反应和物理变化。

3.16 人工防渗衬层完整性检测artificial liner integrity testing

采用电法及其他方法对高密度聚乙烯膜等人工合成材料衬层是否发生破损及破损位置进行检测。

3.17 封场 closure

贮存场及填埋场停止使用后，对其采取关闭的措施。尾矿库的封场也称闭库。

4. 贮存场和填埋场选址要求

4.1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填埋场的选址应符合环境保护法律法规及相关法定规划要求。

4.2 贮存场、填埋场的位置与周围居民区的距离应依据环境影响评价文件及审批意见确定。

4.3 贮存场、填埋场不得选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

4.4 贮存场、填埋场应避开活动断层、溶洞区、天然滑坡或泥石流影响区以及湿地等区域。

4.5 贮存场、填埋场不得选在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最高水位线以下的滩地和岸坡，以及国家和地方长远规划中的水库等人工蓄水设施的淹没区和保护区之内。

4.6 上述选址规定不适用于一般工业固体废物的充填和回填。

5. 贮存场和填埋场技术要求

5.1 一般规定

5.1.1 根据建设、运行、封场等污染控制技术要求不同，贮存场、填埋场分为I类场和II类场。

5.1.2 贮存场、填埋场的防洪标准应按重现期不小于50年一遇的洪水位设计，国家已有标准提出更高要求的除外。

5.1.3 贮存场和填埋场一般应包括以下单元：

- a) 防渗系统、渗滤液收集和导排系统；
- b) 雨污分流系统；
- c) 分析化验与环境监测系统；
- d) 公用工程和配套设施；
- e) 地下水导排系统和废水处理系统（根据具体情况选择设置）。

5.1.4 贮存场及填埋场施工方案中应包括施工质量保证和施工质量控制内容，明确环保条

款和责任，作为项目竣工环境保护验收的依据，同时可作为建设环境监理的主要内容。

5.1.5 贮存场及填埋场在施工完毕后应保存施工报告、全套竣工图、所有材料的现场及实验室检测报告。采用高密度聚乙烯膜作为人工合成材料衬层的贮存场及填埋场还应提交人工防渗衬层完整性检测报告。上述材料连同施工质量保证书作为竣工环境保护验收的依据。

5.1.6 贮存场及填埋场渗滤液收集池的防渗要求应不低于对应贮存场、填埋场的防渗要求。

5.1.7 贮存场除应符合本标准规定污染控制技术要求之外，其设计、施工、运行、封场等还应符合相关行政法规规定、国家及行业标准要求。

5.1.8 食品制造业、纺织服装和服饰业、造纸和纸制品业、农副食品加工业等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与生活垃圾性质相近的一般工业固体废物，以及有机质含量超过5%的一般工业固体废物（煤矸石除外），其直接贮存、填埋处置应符合GB 16889要求。

5.2 I类场技术要求

5.2.1 当天然基础层饱和渗透系数不大于 1.0×10^{-5} cm/s，且厚度不小于0.75 m时，可以采用天然基础层作为防渗衬层。

5.2.2 当天然基础层不能满足5.2.1条防渗要求时，可采用改性压实粘土类衬层或具有同等以上隔水效力的其他材料防渗衬层，其防渗性能应至少相当于渗透系数为 1.0×10^{-5} cm/s且厚度为0.75 m的天然基础层。

5.3 II类场技术要求

5.3.1 II类场应采用单人工复合衬层作为防渗衬层，并符合以下技术要求：

- a) 人工合成材料应采用高密度聚乙烯膜，厚度不小于1.5 mm，并满足GB/T 17643 规定的技术指标要求。采用其他人工合成材料的，其防渗性能至少相当于1.5 mm高密度聚乙烯膜的防渗性能。
- b) 粘土衬层厚度应不小于0.75 m，且经压实、人工改性等措施处理后的饱和渗透系数不应大于 1.0×10^{-7} cm/s。使用其他粘土类防渗衬层材料时，应具有同等以上隔水效力。

5.3.2 II类场基础层表面应与地下水年最高水位保持1.5 m以上的距离。当场区基础层表面与地下水年最高水位距离不足1.5 m时，应建设地下水导排系统。地下水导排系统应确保II类场运行期地下水水位维持在基础层表面1.5 m以下。

5.3.3 II类场应设置渗漏监控系统，监控防渗衬层的完整性。渗漏监控系统的构成包括但不限于防渗衬层渗漏监测设备、地下水监测井。

5.3.4 人工合成材料衬层、渗滤液收集和导排系统的施工不应破坏粘土衬层。

6. 入场要求

6.1 进入I类场的一般工业固体废物应同时满足以下要求：

- a) 第I类一般工业固体废物（包括第II类一般工业固体废物经处理后属于第I类一般工业固体废物的）；
- b) 有机质含量小于2%（煤矸石除外），测定方法按照HJ 761进行；
- c) 水溶性盐总量小于2%，测定方法按照NY/T 1121.16进行。

6.2 进入II类场的一般工业固体废物应同时满足以下要求：

- a) 有机质含量小于5%（煤矸石除外），测定方法按照HJ 761进行；
- b) 水溶性盐总量小于5%，测定方法按照NY/T 1121.16进行。

6.3 5.1.8条所规定的一般工业固体废物经处理并满足6.2条要求后仅可进入II类场贮存、填埋。

6.4 不相容的一般工业固体废物应设置不同的分区进行贮存和填埋作业。

6.5 危险废物和生活垃圾不得进入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场及填埋场。国家及地方有关法律、法规、标准另有规定的除外。

7. 贮存场和填埋场运行要求

7.1 贮存场、填埋场投入运行之前，企业应制定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或在突发事件应急预案中制定环境应急预案专章，说明各种可能发生的突发环境事件情景及应急处置措施。

7.2 贮存场、填埋场应制定运行计划，运行管理人员应定期参加企业的岗位培训。

7.3 贮存场、填埋场运行企业应建立档案管理制度，并按照国家档案管理等法律法规进行整理与归档，永久保存。档案资料主要包括但不限于以下内容：

- a) 场址选择、勘察、征地、设计、施工、环评、验收资料；
- b) 废物的来源、种类、污染特性、数量、贮存或填埋位置等资料；
- c) 各种污染防治设施的检查维护资料；
- d) 渗滤液、工艺水总量以及渗滤液、工艺水处理设备工艺参数及处理效果记录资料；
- e) 封场及封场后管理资料；

f) 环境监测及应急处置资料。

7.4 贮存场、填埋场的环境保护图形标志应符合GB 15562.2的规定，并应定期检查和维护。

7.5 易产生扬尘的贮存或填埋场应采取分区作业、覆盖、洒水等有效抑尘措施防止扬尘污染。尾矿库应采取均匀放矿、洒水抑尘等措施防止干滩扬尘污染。

7.6 污染物排放控制要求

7.6.1 贮存场、填埋场产生的渗滤液应进行收集处理，达到GB 8978要求后方可排放。已有行业、区域或地方污染物排放标准规定的，应执行相应标准。

7.6.2 贮存场、填埋场产生的无组织气体排放应符合GB 16297规定的无组织排放限值的相关要求。

7.6.3 贮存场、填埋场排放的环境噪声、恶臭污染物应符合GB 12348、GB 14554的规定。

8. 充填及回填埋利用污染控制要求

8.1 第I类一般工业固体废物可按下列途径进行充填或回填埋作业：

- a) 粉煤灰可在煤炭开采矿区的采空区中充填或回填埋；
- b) 煤矸石可在煤炭开采矿井、矿坑等采空区中充填或回填埋；
- c) 尾矿、矿山废石等可在原矿开采区的矿井、矿坑等采空区中充填或回填埋。

8.2 第II类一般工业固体废物以及不符合8.1条充填或回填埋途径的第I类一般工业固体废物，其充填或回填埋活动前应开展环境本底调查，并按照HJ 25.3等相关标准进行环境风险评估，重点评估对地下水、地表水及周边土壤的环境污染风险，确保环境风险可以接受。充填或回填埋活动结束后，应根据风险评估结果对可能受到影响的土壤、地表水及地下水开展长期监测，监测频次至少每年1次。

8.3 不应在充填物料中掺加除充填作业所需要的添加剂之外的其他固体废物。

8.4 一般工业固体废物回填埋作业结束后应立即实施土地复垦（回填埋地下的除外），土地复垦应符合本标准9.9条的规定。

8.5 食品制造业、纺织服装和服饰业、造纸和纸制品业、农副食品加工业等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与生活垃圾性质相近的一般工业固体废物以及其他有机物含量超过

5%的一般工业固体废物（煤矸石除外）不得进行充填、回填作业。

9. 封场及土地复垦要求

9.1 当贮存场、填埋场服务期满或不再承担新的贮存、填埋任务时，应在2年内启动封场作业，并采取相应的污染防治措施，防止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封场计划可分期实施。尾矿库的封场时间和封场过程还应执行闭库的相关行政法规和管理规定。

9.2 贮存场、填埋场封场时应控制封场坡度，防止雨水侵蚀。

9.3 I类场封场一般应覆盖土层，其厚度视固体废物的颗粒度大小和拟种植物种类确定。

9.4 II类场的封场结构应包括阻隔层、雨水导排层、覆盖土层。覆盖土层的厚度视拟种植物种类及其对阻隔层可能产生的损坏确定。

9.5 封场后，仍需对覆盖层进行维护管理，防止覆盖层不均匀沉降、开裂。

9.6 封场后的贮存场、填埋场应设置标志物，注明封场时间以及使用该土地时应注意的事项。

9.7 封场后渗滤液处理系统、废水排放监测系统应继续正常运行，直到连续2年内没有渗滤液产生或产生的渗滤液未经处理即可稳定达标排放。

9.8 封场后如需对一般工业固体废物进行开采再利用，应进行环境影响评价。

9.9 贮存场、填埋场封场完成后，可依据当地地形条件、水资源及表土资源等自然环境条件和社会发展需求并按照相关规定进行土地复垦。土地复垦实施过程应满足TD/T 1036规定的相应土地复垦质量控制要求。土地复垦后用作建设用地的，还应满足GB 36600的要求；用作农用地的，还应满足GB 15618的要求。

9.10 历史堆存一般工业固体废物场地经评估确保环境风险可以接受时，可进行封场或土地复垦作业。

10. 污染物监测要求

10.1 一般规定

10.1.1 企业应按照有关法律和《环境监测管理办法》《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等规定，建立企业监测制度，制定监测方案，对污染物排放状况及对周边环境质量的影响开展自行监测，并公开监测结果。

10.1.2 企业安装、运维污染源自动监控设备的要求，按照相关法律法规规章及标准的规定执行。

10.1.3 企业应按照环境监测管理规定和技术规范的要求，设计、建设、维护永久性采样口、采样测试平台和排污口标志。

10.2 废水污染物监测要求

10.2.1 采样点的设置与采样方法，按HJ 91.1的规定执行。

10.2.2 渗滤液及其处理后排放废水污染物的监测频次，应根据废物特性、覆盖层和降水等条件加以确定，至少每月1次。废水污染物的监测分析方法按照GB 8978的规定执行。

10.3 地下水监测要求

10.3.1 贮存场、填埋场投入使用之前，企业应监测地下水本底水平。

10.3.2 地下水监测井的布置应符合以下要求：

- a) 在地下水流场上游应布置1个监测井，在下游至少应布置1个监测井，在可能出现污染扩散区域至少应布置1个监测井。设置有地下水导排系统的，应在地下水主管出口处至少布置1个监测井，用以监测地下水导排系统排水的水质；
- b) 岩溶发育区以及环境影响评价文件中确定地下水评价等级为一级的贮存场、填埋场，应根据环境影响评价结论加大下游监测井布设密度；
- c) 当地下水含水层埋藏较深或地下水监测井较难布设的基岩山区，经环境影响评价确认地下水不会受到污染时，可减少地下水监测井的数量；
- d) 监测井的位置、深度应根据场区水文地质特征进行针对性布置；
- e) 监测井的建设与管理应符合HJ/T 164的技术要求；
- f) 已有的地下水取水井、观测井和勘测井，如果满足上述要求可以作为地下水监测井使用。

10.3.3 贮存场、填埋场地下水监测频次应符合以下要求：

- a) 运行期间，企业自行监测频次至少每季度1次，每两次监测之间间隔不少于1个月，国家另有规定的除外；如周边有环境敏感区应增加监测频次，具体监测点位和频次依据环境影响评价结论确定。当发现地下水水质有被污染的迹象时，应及时查找原因并采取补救措施，防止污染进一步扩散；
- b) 封场后，地下水监测系统应继续正常运行，监测频次至少每半年1次，直到地下水水质连续2年不超出地下水本底水平。

10.3.4 地下水监测因子由企业根据贮存及填埋废物的特性提出，必须具有代表性且能表征固体废物特性。常规测定项目应至少包括：浑浊度、pH、溶解性总固体、氯化物、硝酸盐

(以N计)、亚硝酸盐(以N计)。地下水监测因子分析方法按照GB/T 14848执行。

10.4 地表水监测要求

10.4.1 应在满足废水排放标准与环境管理要求基础上,针对项目建设、运行、封场后等不同阶段可能造成地表水环境影响制定地表水监测计划。

10.4.2 地表水监测点位、分析方法、监测频次应按照HJ 819执行,岩溶地区应增加地表水的监测频次。

10.5 大气监测要求

10.5.1 无组织气体排放的监测因子由企业根据贮存及填埋废物的特性提出,必须具有代表性且能表征固体废物特性。采样点布设、采样及监测方法按GB 16297的规定执行,污染源下风方向应为主要监测范围。

10.5.2 运行期间,企业自行监测频次至少每季度1次。如监测结果出现异常,应及时进行重新监测,间隔时间不得超过1周。

10.5.3 企业周边应安装总悬浮颗粒物(TSP)浓度监测设施,并保存1年以上数据记录。总悬浮颗粒物(TSP)浓度的测定方法按照GB/T 15432执行。

10.6 土壤监测要求

10.6.1 贮存场、填埋场投入使用之前,企业应监测土壤本底水平。

10.6.2 应布设1个土壤监测对照点,对照点应尽量保证不受企业生产过程影响,对照点作为土壤背景值。

10.6.3 依据地形特征、主导风向和地表径流方向,在可能产生影响的土壤环境敏感目标处布设土壤监测点。

10.6.4 运行期间,土壤监测点的自行监测频次一般每3年1次,采样深度根据可能影响的深度适当调整,以表层土壤为重点采样层。

10.6.5 土壤监测因子由企业根据贮存及填埋废物的特性提出,必须具有代表性且能表征固体废物特性。土壤监测因子的分析方法按照GB 36600的规定执行。

11. 实施与监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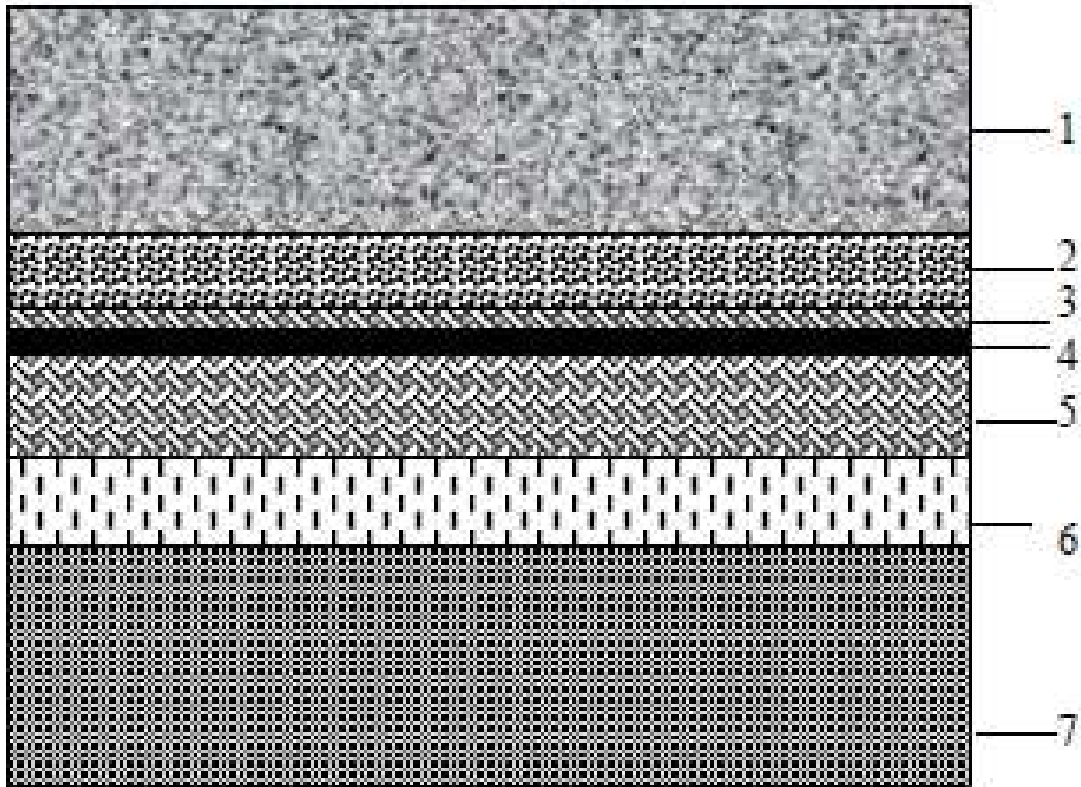
11.1 本标准由县级以上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监督实施。

11.2 在任何情况下，企业均应遵守本标准的污染物排放控制要求，采取必要措施保证污染防治设施正常运行。各级生态环境主管部门在对其进行监督检查时，对于水污染物，可以现场即时采样或监测的结果，作为判定排污行为是否符合排放标准以及实施相关生态环境保护管理措施的依据；对于无组织排放的大气污染物，可以采用手工监测并按照监测规范要求测得的任意1小时平均浓度值，作为判定排污行为是否符合排放标准以及实施相关生态环境保护管理措施的依据。

附录A (资料性附录) 单人工复合衬层系统说明

单人工复合衬层系统 (HDPE土工膜+粘土) 结构如图A.1所示, 部分结构说明如下:

- a) 渗滤液导排层: 宜采用卵石, 厚度不应小于30 cm, 卵石下可增设土工复合排水网;
- b) 人工防渗衬层: 采用HDPE土工膜时厚度不应小于1.5 mm;
- c) 粘土衬层: 渗透系数不应大于 1.0×10^{-7} cm/s, 厚度不宜小于75 cm;
- d) 保护层: 可采用非织造土工布、保护粘土层及粉末状尾矿;
- e) 地下水导排层 (可选): 采用卵 (砾) 石等石料。
- f) 基础层: 具有承载填埋堆体负荷的天然岩土层或经过地基处理的稳定岩土层。



1—一般工业固体废物; 2—渗滤液导排层; 3—保护层; 4—人工防渗衬层 (高密度聚乙烯膜);
废物; 2—渗滤液导排层; 3—保护层; 4—人工防渗衬层 (高密度聚乙烯膜);
5—粘土衬层; 6—地下水导排层 (可选); 7—基础层

图A.1 单人工复合衬层系统示意图

中华人民共和国国家环境保护标准(HJ 1091-2020)

3. 固体废物再生利用污染防治技术导则

生态环境部 发布

(2020-01-14 发布 / 2020-01-14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固体废物再生利用污染防治技术导则

目 录

前言	241
1. 适用范围	243
2. 规范性引用文件	243
3. 术语和定义	244
4. 总体要求	244
5. 主要工艺单元污染防治技术要求	245
6. 固体废物建材利用污染防治技术要求	253
7. 固体废物土地利用污染防治技术要求	253
8. 监测	254

前言

为贯彻<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等法律法规，防治环境污染，改善生态环境质量，规范固体废物再生利用项目的建设和运行，制定本标准。

本标准规定了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污染防治的通用技术要求。本标准为指导性标准。

本标准首次发布。

本标准由生态环境部科技与财务司、法规与标准司组织制订。

本标准主要起草单位：中国环境科学研究院、清华大学、四川大学。本标准生态环境部2020年1月13日批准。

本标准自2020年1月14日起实施。本标准由生态环境部解释。

固体废物再生利用污染防治技术导则

1. 适用范围

本标准规定了固体废物再生利用工程的选址、建设、运行过程的总体要求，再生利用过程的污染防治技术要求和监测要求。

本标准适用于现有、新建、改建、扩建的固体废物再生利用工程，可作为固体废物再生利用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设计、施工、验收及建成后运行与管理的技术依据。

本标准作为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污染防治的通用技术要求；有特定固体废物再生利用专用标准的，执行专用标准。

2. 规范性引用文件

本标准内容引用了下列文件中的条款。凡是不注日期的引用文件，其有效版本适用于本标准。

GB 8172	城镇垃圾农用控制标准
GB 8978	污水综合排放标准
GB 12348	工业企业厂界环境噪声排放标准
GB 14554	恶臭污染物排放标准
GB/T 14848	地下水质量标准
GB 15603	常用化学危险品贮存通则
GB 15618	土壤环境质量 农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试行）
GB 16297	大气污染物综合排放标准
GB/T 17420	微量元素叶面肥料
GB 18484	危险废物焚烧污染控制标准
GB 18597	危险废物贮存污染控制标准
GB/T 23486	城镇污水处理厂污泥处置 园林绿化用泥质
GB/T 24600	城镇污水处理厂污泥处置 土地改良用泥质
GB 30485	水泥窑协同处置固体废物污染控制标准
GB 30760	水泥窑协同处置固体废物技术规范
GB 34330	固体废物鉴别标准 通则
GB 36600	土壤环境质量 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试行）
GB 38400	肥料中有毒有害物质的限量标准
GBZ 2.1	工作场所有害因素职业接触限值 第 1 部分：化学有害因素
GBZ 2.2	工作场所有害因素职业接触限值 第 2 部分：物理因素
CJ/T 309	城镇污水处理厂污泥处置 农用泥质
CJ/T 362	城镇污水处理厂污泥处置 林地用泥质
HJ 662	水泥窑协同处置固体废物环境保护技术规范
HJ 2042	危险废物处置工程技术导则

3. 术语和定义

3.1 固体废物 solid waste

在生产、生活和其他活动中产生的丧失原有利用价值或者虽未丧失利用价值但被抛弃或者放弃的固态、半固态和置于容器中的气态的物品、物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纳入固体废物管理的物品、物质。

3.2 固体废物再生利用 solid waste recycling

将固体废物直接作为原料或燃料利用，或者通过分离、纯化等工艺处理后进行物质资源化利用的过程，分为用作原料或替代材料的物质再生利用和用作替代燃料的能量再生利用。

3.3 固体废物建材利用 utilization of solid waste as building materials

利用固体废物直接代替传统建筑材料生产原料，或将其转化为建筑材料生产原料来生产建材的过程。固体废物建材利用的主要形式包括利用固体废物生产水泥、砖瓦、轻骨料、混凝土、玻璃、陶瓷、陶粒、路基材料等。

3.4 固体废物土地利用 application of solid waste to land use

利用固体废物本身具备的部分营养成分，将固体废物直接利用或间接转化用作土壤改良剂或肥料的过程。固体废物土地利用通常需要进行必要的生物处理、热干化等预处理及加工。固体废物土地利用不包括固体废物矿区回填。

3.5 工艺单元 process unit

固体废物再生利用工艺过程中的任一主要单元，包括涉及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的物理与化学反应、机械加工、贮存、包装和污染防治等在内的整个生产工序。

4. 总体要求

4.1 固体废物再生利用应遵循环境安全优先的原则，保证固体废物再生利用全过程的环境安全与人体健康。

4.2 进行固体废物再生利用技术选择时，应在固体废物再生利用技术生命周期评价结果的基础上，结合相关法规及行业的产业政策要求。

4.3 固体废物再生利用建设项目的选址应符合区域性环境保护规划和当地的城乡总体规划。

4.4 固体废物再生利用建设项目的设计、施工、验收和运行应遵守国家现行的相关法规的规定，同时建立完善的环境管理制度，包括环境影响评价、环境管理计划、环境保护责任、排污许可、监测、信息公开、环境应急预案和环境保护档案管理等制度。

4.5 应对固体废物再生利用各技术环节的环境污染因子进行识别，采取有效污染控制措施，配备污染物监测设备设施，避免污染物的无组织排放，防止发生二次污染，妥善处置产生的废物。

4.6 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产生的各种污染物的排放应满足国家和地方的污染物排放（控制）标准与排污许可要求。

4.7 固体废物再生利用产物作为产品的，应符合GB 34330 中要求的国家、地方制定或行业通行的产品质量标准，与国家相关污染控制标准或技术规范要求，包括该产物生产过程中排放到环境中的特征污染物含量标准和该产物中特征污染物的含量标准。

当没有国家污染控制标准或技术规范时，应以再生利用的固体废物中的特征污染物为评价对象，综合考虑其在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中的迁移转化行为以及再生利用产物的用途，进行环境风险定性评价，依据评价结果来识别该产物中的有害成分。

根据定性评价结果开展产物的环境风险定量评价。环境风险定量评价的主要步骤应包括：确定环境保护目标、建立评价场景、构建污染物释放模型、构建污染物在环境介质中的迁移转化模型、影响评估等。对于无法明确产品用途时，应根据最不利暴露条件开展环境风险评价。

5. 主要工艺单元污染防治技术要求

5.1 一般规定

5.1.1 进行再生利用作业前，应明确固体废物的理化特性，并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以防止固体废物在清洗、破碎、中和反应等过程中引起有毒有害物质的释放。

5.1.2 具有物理化学危险特性的固体废物，应首先进行稳定化处理。

5.1.3 应根据固体废物的特性设置必要的防扬撒、防渗漏、防腐蚀设施，配备废气处理、废水处理、噪声控制等污染防治设施，按要求对主要环境影响指标进行在线监测。

5.1.4 产生粉尘和有毒有害气体的作业区应采取除尘和有毒有害气体收集措施。扬尘点应设置吸尘罩和收尘设备，有毒有害气体逸散区应设置吸附（吸收）转化装置，保证作业区粉尘、有害气体浓度满足GBZ 2.1的要求。

5.1.5 应采取大气污染控制措施，大气污染物排放应满足特定行业排放（控制）标准的要求。没有特定行业污染排放（控制）标准的，应满足GB 16297的要求，特征污染物排放（控制）应满足环境影响评价要求。

5.1.6 应采取必要的措施防止恶臭物质扩散，周界恶臭污染物浓度应符合GB 14554的要求。

5.1.7 产生的冷凝液、浓缩液、渗滤液等废液应进行有效收集后集中处理。处理后产生的废水应优先考虑循环利用；排放时应满足特定行业排放（控制）标准的要求；没有特定行业污染排放（控制）标准的，应满足GB 8978的要求，特征污染物排放（控制）应满足环境影响评价要求。

5.1.8 应防止噪声污染。设备运转时厂界噪声应符合GB12348的要求，作业车间噪声应符合GBZ 2.2的要求。

5.1.9 产生的污泥、底渣、废油类等固体废物应按照其管理属性分别处置。不能自行综合利用或处置的，应交给有相应资质和处理能力的企业进行综合利用或处置。

5.1.10 危险废物的贮存、包装、处置等应符合GB 18597、HJ 2042等危险废物专用标准的要求。

5.2 清洗技术要求

5.2.1 清洗是采用水、其他溶剂或气体从被洗涤对象中除去杂质成分，以达到分离纯化目的的过程。

5.2.2 遇水或其他溶剂易燃或产生易燃气体、易释放挥发性毒性物质的固体废物，不应采用清洗处理。

5.2.3 可根据洗涤目的对固体废物进行多级清洗，清洗工艺可采用顺流清洗或逆流清洗。

5.2.4 固体废物清洗设备应具备耐磨、防腐蚀等性能。

5.3 干燥技术要求

5.3.1 干燥是用热空气、烟道气、红外线、水蒸气、导热油等热源加热烘干固体废物，除去其中所含的水分等溶剂，以达到减容、减量，便于处理、处置和再利用目的的过程。

5.3.2 固体废物干燥技术包括喷雾干燥、流化床干燥、气流干燥、回转圆筒干燥、厢式干燥等技术。

5.3.3 应根据固体废物的物理性质、化学性质及其它性质，结合干燥技术的适用性合理选择干燥技术。

溶液、悬浮液或泥浆状废物的干燥宜选择喷雾干燥技术；无凝聚作用的散粒状废物的干燥宜选择流化床干燥技术；粉粒状废物的干燥宜选择气流干燥技术；粒状或小块状废物的干燥宜选择回转圆筒干燥技术；少量热敏性、易氧化废物的干燥宜选择厢式干燥技术。

5.3.4 应在干燥前明确固体废物的理化特性，以确定干燥介质的种类、干燥方法和干燥设备，具体包括：

- (1) 物理性质。如主要组成、含水率、比热容、热导率等；液态废物还应明确浓度、粘度及表面张力等；
- (2) 化学性质。如热敏性、毒性、可燃性、氧化性、酸碱度、摩擦带电性、吸水性等；
- (3) 其他性质。如膏糊状废物的粘附性、触变性等。

5.3.5 有下列任一种情况时，应选择闭路循环式干燥设备及废气处理设施，避免气体和颗粒状物质逸出造成大气污染。包括但不限于：

- (1) 固体废物中含有挥发性有机类物质；
- (2) 固体废物中含有有毒有害固体粉粒状物质；
- (3) 固体废物中含有恶臭类物质；
- (4) 固体废物干燥过程产生的粉尘在空气中可能形成爆炸混合物；
- (5) 固体废物干燥过程中与氧接触易发生氧化反应的。

5.3.6 喷雾干燥系统配备的风机及各类泵，应采取有效减振措施。

5.3.7 干燥设备应按要求定期停机，排空并清理设备内残余物。

5.3.8 固体废物干燥工艺单元独立排放污染物时，应配备废气收集和处理设施，防止粉尘、恶臭、有毒有害气体等逸出引起二次污染。

5.4 破碎技术要求

5.4.1 破碎是通过机械等外力的作用，破坏固体废物内部的凝聚力和分子间作用力，使固体废物破裂变碎的过程。将小块固体废物颗粒通过研磨等方式分裂成细粉状的过程称之为磨碎。

5.4.2 固体废物破碎技术包括锤式破碎、冲击式破碎、剪切破碎、颚式破碎、圆锥破碎、辊式破碎、球磨破碎等。

5.4.3 易燃易爆或易释放挥发性毒性物质的固体废物，不应直接进行破碎处理。为防止爆燃，内部含有液体的固体废物（如废铅酸蓄电池、废溶剂桶等）在破碎处理前，应采用有效措施将液体清空，再进行破碎处理。含有不相容成分的固体废物不应进行混合破碎处理。

5.4.4 废塑料、废橡胶等固体废物的破碎宜采用干法破碎；铬渣、硼泥等固体废物的破碎宜采用湿法破碎。

5.4.5 固体废物破碎处理前应对其进行预处理，以保证给料的均匀性，防止非破碎物混入，引起破碎机械的过载损坏。

5.4.6 固体废物粉磨过程应严格控制粉尘的颗粒度、挥发性和火源等，防止发生粉尘爆炸。

5.5 分选技术要求

5.5.1 分选是用人工或机械的方法将固体废物中各种可再生利用的成分或不利于后续处理的杂质成分分类分离的处理过程。

5.5.2 固体废物分选技术包括人工分选、水力分选、风力分选、重力分选、磁力分选、浮力分选、电力分选、涡电流分选、光学分选等。

5.5.3 应根据固体废物的理化特性和后续处理的要求，对固体废物的分选技术和设备进行选择与组合。

人工分选适用于生活垃圾等混合废物；水力分选适用于亲水性和疏水性固体废物的分选；重力分选适用于密度相差较大的固体废物的分选；磁力分选适用于磁性和非磁性废物的分选；电力分选适用于导体、半导体和非导体固体废物的分选；涡电流分选适用于固体废物破碎切片中回收各类有色金属的分选；光学分选适用于具光学特性差异较大的固体废物的分选。轻质固体废物的分选可采用风力分选和电力分选；含黑色金属固体废物的分选可采用磁力分选或电力分选；含有色金属固体废物的分选可采用涡电流分选或水力分选。

5.5.4 固体废物分选前应对其进行预处理，清除有毒有害成分或物质，将大块固体废物破碎、筛分，以改善废物的分离特性。

5.5.5 对生活垃圾进行分选时，采用的水力分选、磁选和涡流分选设备的效率应大于 90%，其它分选设备的效率不应小于 70%。采用水力分选技术时，应采用密闭循环系统，提高水资源再生利用率。

5.5.6 分选设备应具有防粘、防缠绕、自清洁、耐磨和耐腐蚀的性能。

5.5.7 固体废物的分选设备应加设罩/盖，以保证分选系统封闭。

5.6 中和技术要求

5.6.1 中和是通过加入药剂将溶液的 pH 值调节到中性的反应过程。

5.6.2 中和工艺适用于液体、泥浆、污泥等液态、半固态废物的 pH 值调节。应优先考虑利用废碱（酸）液、碱性（酸性）废渣对酸性（碱性）废物进行中和反应。

5.6.3 将酸性废物溶于水时，应向水里缓慢添加酸性废物，不可将水直接倾倒至酸性废物中，避免产生大量热量。

5.6.4 中和工艺装置和管路应采用抗压、防腐蚀、耐高温材料，同时配备液位计和pH计，对液位和pH值进行在线监控。

5.6.5 待处理的腐蚀性废物的贮存应满足GB 15603和GB 18597的相关要求。

5.7 絮凝沉淀技术要求

5.7.1 絮凝是将悬浮于液态介质中的微小、不沉降的微粒凝聚成较大、易沉降的颗粒的过程。沉淀是将原液中的一种或几种成分通过化学反应转变为固相物质的过程。絮凝和沉淀过程通常在同一装置内进行。

5.7.2 固体废物的絮凝沉淀类型包括氢氧化物沉淀、硫化物沉淀、硅酸盐沉淀、碳酸盐沉淀、无机或有机配合物沉淀等。

5.7.3 固体废物絮凝沉淀前应对其进行必要的预处理，以保证固体废物的均匀性，提高絮凝沉淀过程的提取效率。

5.7.4 絮凝设备、连接管道、投配机和搅拌机等应采用防腐蚀材料或进行防腐处理。

5.7.5 絮凝沉淀过程应严格控制 pH 值。有条件时应设置 pH 值自动控制仪，并与加药计量泵耦合，以保证最佳的絮凝沉淀效果。

5.7.6 处理含挥发性或半挥发性成分的固体废物絮凝沉淀池应密闭并远离火种，以避免毒性物质释放、爆炸和火灾等危险。

5.8 氧化/还原技术要求

5.8.1 氧化/还原是通过氧化或还原反应，使固体废物中的有毒有害成分价态发生变化，转化为无毒害或低毒害且具有化学稳定性物质的过程。氧化还原常作为含重金属废物、金属硫化物、金属氰化物等有毒有害无机物的固体废物再生利用前的预处理技术。

5.8.2 固体废物的氧化/还原技术包括湿法氧化/还原和火法氧化/还原。

湿法氧化/还原适用于处理废液、污泥和泥浆等液态或半固态废物，也适用于酸法处理废电路板等固态废物。火法氧化/还原适用于处理固态废物。

5.8.3 固体废物氧化/还原前应对其进行必要的预处理，以保证固体废物粒度的均匀性，提高固体废物在氧化/还原处置过程中的转化效率。

5.8.4 常用氧化剂包括氯和次氯酸盐、过氧化氢、高锰酸钾和臭氧等。氧化剂的使用、贮存应符合以下要求：

- (1) 采用氯和次氯酸盐作为氧化剂处理废物应严格控制 pH 值以保证氧化效果。应采取预防措施预防氯气贮存和搬运过程的潜在危险；
- (2) 过氧化氢适用于处理含有氰化物、甲醛、硫化氢、对苯二酚、硫醇、苯酚和亚硫酸盐等成分的废物。过氧化氢应保存于专用贮存容器，并加入抑制剂保证过氧化氢贮存过程的分解率小于1%；

(3) 高锰酸钾适用于处理含有酚类化合物、氰化物等物质的废物，如含可溶性铁和锰的酸性废液等；

(4) 臭氧适用于处理含有氰化物、酚类化合物和卤代有机化合物等成分的废物。

5.8.5 常用还原剂包括二氧化硫、硫酸亚铁、亚硫酸盐、硼氢化钠、煤粉等。还原剂的使用应符合以下要求：

(1) 二氧化硫、硫酸亚铁、亚硫酸盐适合于处理含铬废物，应严格调节 pH 值和氧化-还原电位控制反应进程；

(2) 硼氢化钠适用于处理含铅、汞、银、镉等重金属的废物，以及含酮、有机酸、氨基化合物等有机化合物的废物。

5.8.6 湿法氧化/还原应符合以下要求：

(1) 应确保引入的其他物质不造成二次污染；

(2) 应根据固体废物特点确定废物粒度、液固比、pH值、反应时间等工艺参数；

(3) 应控制氧化/还原反应残渣的产生量。

5.8.7 火法氧化/还原应符合以下要求：

(1) 应根据废物成分确定氧化剂（或还原剂）的用量，固体废物与氧化剂（或还原剂）在进入氧化/还原设施之前应混合均匀；

(2) 采用回转窑进行火法氧化/还原时，应控制进入回转窑的空气量以保证氧化（或还原）气氛，确保回转窑中氧气和一氧化碳含量有利于高温氧化（或还原）反应的进行；

(3) 火法氧化/还原设施应配备自动控制系统，以控制转速（回转窑）、进料量、风量、温度等运行参数，在线显示气体浓度、风量、温度等运行工况；

(4) 火法氧化/还原设施应配备烟气脱硫、脱硝净化装置和除尘设施，并对废气中的粉尘、二氧化硫、氮氧化物浓度进行在线监测。

5.8.8 火法氧化/还原过程产生的烟气应进行必要的收尘处理，收集的烟尘应返回原火法氧化/还原系统，或委托有相应资质和处理能力的企业进行综合利用或处置。

5.9 蒸发结晶技术要求

5.9.1 蒸发结晶是固体废物形成溶液后，使溶剂不断挥发而析出溶质的过程。

5.9.2 蒸发结晶适用于水溶液或有机溶液的蒸发浓缩处理，尤其是热敏性废物；冷却结晶适用于对晶体粒度要求高且产量较大的固体废物分离。

5.9.3 固体废物结晶处理前应对其进行必要的预处理，以保证固体废物的均匀性。

5.9.4 蒸发结晶器应具备观察孔、目镜、清洗和排净孔。应对温度、液位、压力等参数进行实时监控；受压力容器（包括蒸发器、预热器等）不应超温、超压、超液位运行。不可在蒸发结晶器运行时用水冲洗目镜或带压紧目镜螺丝；更换目镜应在蒸发结晶器内压力降至常压后进行。

5.9.5 蒸发结晶器运行过程中蒸发效能下降时，应进行蒸发器碱洗或酸洗除垢。清洗后产生的酸性（碱性）废水应倒入稀酸（碱）槽，经处理后优先循环利用。

5.9.6 固体废物蒸发结晶过程如产生有毒有害气体，应采用密闭装置（应留有泄气孔）和气体收集设施。

5.9.7 蒸发结晶过程产生的冷凝液和粘稠剩余物，应经浓缩、脱水等预处理后优先进行回收利用，或送至有相应资质和处理能力的企业进行综合利用或处置。

5.9.8 固体废物蒸馏再生利用工艺单元的污染控制要求可参考本节。

5.10 烧结技术要求

5.10.1 烧结是通过固体废物颗粒间的粘结以实现有害成分固定化的热处理过程。烧结适用于含重金属废物（含砷和含汞废物除外）的处理。

5.10.2 固体废物的烧结技术包括抽风烧结和窑内烧结。抽风烧结分为连续式烧结和间歇式烧结，窑内烧结分为回转窑烧结和悬浮式烧结。

5.10.3 含重金属废物的烧结处理应控制氧化还原气氛、烧结温度等，防止重金属的活化。

5.10.4 固体废物烧结过程的工艺布置应尽量减少物料的转运次数并降低其落差，以减少扬尘量。应对产生或散发的粉尘采取密封和收尘措施。

5.10.5 固体废物烧结过程应推行清洁生产工艺，优化工程设计，实现常规污染物与二噁英协同减排；为减少二噁英等的产生与排放，可选用低氯化物含量原料、减少氯化钙使用、对原料进行除油预处理、增加料层透气性、采用粉尘返料造球等方式。

5.10.6 固体废物烧结过程应采用循环技术减少烧结废气产生量和排放量。

5.10.7 固体废物烧结过程应防止噪声污染。工艺设计应选用低噪声工艺和设备。应对高噪声设备采取消声、减振或隔声等措施，确保设备运转时厂界噪声符合 GB 12348 的要求。

5.11 热解技术要求

5.11.1 热解是在无氧或接近无氧的状态下，固态或液态有机废物中的大分子链被切断、裂解成低分子链的油气，油气经过冷凝及分离得到轻质油或重质燃油等资源化物质，同时产生气体及固体残渣的过程。

5.11.2 固体废物的热解技术包括固定床热解、移动床热解、回转窑热解和流化床热解等。

5.11.3 固体废物热解前应对其进行破碎、分选等预处理，以保证废物的均匀性，提高废物的热解效率，减少热解废气的产生。采用热解技术处理污泥的含水率宜低于30%。

5.11.4 热解设备应配备温度自动控制装置，应具备良好的密封性，操作过程应防止裂解气体外泄，热解设备和烟气管道应采取绝热措施。

5.11.5 在启动热解炉时，应先将炉内温度升至热解炉设计温度后才能投入固体废物。固体废物投入量应逐渐增加，直至达到额定热解处理量。在关闭热解炉时，停止投入固体废物后，应立即启动助燃系统，以保证炉内固体废物裂解完全。热解炉运行时应减少停机或启动次数。

5.11.6 固体废物热解作业应实时监测除尘器的运行状态，排放不能满足要求时应及时停炉进行处理。

5.11.7 固体废物热解产生的气体应优先循环利用作为热解的燃料，不能回收利用的应焚烧处理后排放。

5.11.8 固体废物热解产生的炭黑和底渣，应采取分离、造粒等方法综合利用，分离、造粒过程应采取设备密闭和水法造粒等措施以防止炭黑粉尘散逸。对不回收利用的残余物的处置应符合本标准第5.1.9条的要求。

5.12 生物处理技术要求

5.12.1 生物处理是利用微生物的代谢活动降解有机固体废物的过程。

5.12.2 固体废物的生物处理技术包括堆肥和厌氧消化等。

5.12.3 堆肥工艺应符合以下要求：

- (1) 应对堆肥原料进行脱水、脱盐、碳氮比调节等预处理；
- (2) 应合理控制堆肥温度、持续时间；
- (3) 应采取控制堆肥预处理车间和堆肥车间的臭气排放；
- (4) 固体废物堆肥过程产生的渗滤液收集后应进行集中处理，处理后的渗滤液应优先考虑循环利用；
- (5) 堆肥产品符合 GB 8172、GB 38400、GB/T 23486、GB/T 24600、CJ/T 309、CJ/T 362的相关质量要求。

5.12.4 厌氧消化工艺应符合以下要求：

- (1) 应根据固体废物的特点、所在地气候条件选择湿式或干式厌氧消化工艺；
- (2) 应合理控制消化物料碳氮比 (C/N)、碱度 (以 CaCO_3 计)、含固率等指标；
- (3) 应合理控制厌氧消化温度和物料停留时间；

(4) 产生的沼液应有效收集后集中处理，处理后的水应优先考虑循环利用；

(5) 厌氧消化后产生的沼渣应进行回收利用；

(6) 沼液做液体肥料时，应符合 GB/T 17420 的要求。

5.12.5 厌氧消化器应满足以下要求：

(1) 应具有良好的防渗、防腐、保温和密闭性；

(2) 应根据处理规模、发酵周期、容器强度等因素确定合适的容量；

(3) 结构应有利于物料流动，避免产生滞流死角；

(4) 应具有良好的物料搅拌、匀化功能，防止物料在消化器中形成沉淀。

5.12.6 厌氧消化场所应配置完善的通风除臭设施及噪声控制设施。

5.12.7 固体废物生物处理过程使用微生物菌剂的，应按照生态环境部门和卫生防疫部门的有关规定，使用符合规定的微生物菌剂，并采取相应的安全控制措施。

6. 固体废物建材利用污染防治技术要求

6.1 固体废物建材利用设施应配备必要的废气处理、防止或降低噪声与粉尘处理等污染防治装置。

6.2 利用固体废物生产水泥过程及产品的污染控制应满足 GB 30485、HJ 662 与 GB 30760 的要求。

6.3 利用固体废物生产砖瓦、轻骨料、集料、玻璃、陶瓷、陶粒、路基材料等建材过程的污染控制执行相关行业污染物排放标准，相关产品中有害物质含量参照 GB 30760 的要求执行。

6.4 固体废物建材利用过程中的再生利用工艺单元的污染控制应分别满足本标准中相应再生利用工艺单元的要求。

7. 固体废物土地利用污染防治技术要求

7.1 固体废物土地利用的前处理设施应具备必要的废水处理、废气处理、防止或降低噪声、粉尘处理等污染防治设施。废水排放应符合GB 8978的要求，废气排放应符合GB 18484、GB 16297、GB 14554的要求，周界恶臭污染物浓度应符合GB 14554的规定，厂界噪声应达到GB 12348的要求，作业区粉尘和有毒有害气体的允许浓度应符合GBZ 2.1的规定。

7.2 生活污泥的土地利用应符合GB/T 23486、GB/T 24600、CJ/T 309、CJ/T 362等的有关要求。

7.3 为防范固体废物土地利用的环境风险，应按照GB 15618、GB 36600和GB/T 14848的要求对土地利用区域内的土壤和地下水进行采样监测。

7.4 固体废物土地利用过程中的再生利用工艺单元的污染控制应分别满足本标准中相应再生利用工艺单元的要求。

8. 监测

8.1 固体废物再生利用企业应定期对固体废物再生利用产品进行采样监测，监测频次应满足以下要求：

- (1) 当首次再生利用某种危险废物时，针对再生利用产品中的特征污染物监测频次不低于每天1次；连续一周监测结果均不超出环境风险评价结果时，在该危险废物来源及投加量稳定的前提下，频次可减为每周1次；连续两个月监测结果均不超出环境风险评价结果时，频次可减为每月1次；若在此期间监测结果出现异常或危险废物来源发生变化或再生利用中断超过半年以上，则监测频次重新调整为每天 1 次，依次重复。
- (2) 当首次再生利用除危险废物外的某种固体废物时，针对再生利用产品中的特征污染物监测频次不低于每周 3 次；连续二周监测结果均不超出环境风险评价结果时，在该废物来源及投加量稳定的前提下，频次可减为每月 1 次；连续三个月监测结果均不超出环境风险评价结果时，频次可减为每年 1 次；若在此期间监测结果出现异常或固体废物来源发生变化或再生利用中断超过半年以上，则监测频次重新调整为不低于每周 3 次，依次重复。

8.2 固体废物再生利用企业应在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中，按照相关要求，定期对场所和设施周边的大气、土壤、地表水和地下水等进行采样监测，以判断固体废物再生利用过程是否对大气、土壤、地表水和地下水造成二次污染。

4.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09号
(2009-02-25 发布 / 2011-01-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目 录

第一章 总则	259
第二章 相关方责任	260
第三章 监督管理	261
第四章 法律责任	262
第五章 附 则	263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09号)

(2009年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551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废弃电器电子产品的回收处理活动，促进资源综合利用和循环经济发展，保护环境，保障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和《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废弃电器电子产品的处理活动，是指将废弃电器电子产品进行拆解，从中提取物质作为原材料或者燃料，用改变废弃电器电子产品物理、化学特性的方法减少已产生的废弃电器电子产品数量，减少或者消除其危害成分，以及将其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要求的填埋场的活动，不包括产品维修、翻新以及经维修、翻新后作为旧货再使用的活动。

第三条 列入《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目录》（以下简称《目录》）的废弃电器电子产品的回收处理及相关活动，适用本条例。国务院资源综合利用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工业信息产业等主管部门制订和调整《目录》，报国务院批准后实施。

第四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资源综合利用、工业信息产业主管部门负责组织拟订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的政策措施并协调实施，负责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商务主管部门负责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的管理工作。国务院财政、市场监督管理、税务、海关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相关管理工作。

第五条 国家对废弃电器电子产品实行多渠道回收和集中处理制度。

第六条 国家对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实行资格许可制度。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审批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企业（以下简称处理企业）资格。

第七条 国家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用于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费用的补贴。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电器电子产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规定履行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的缴纳义务。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应当纳入预算管理，其征收、使用、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资源综合利用、工业信息

产业主管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施行。制订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的征收标准和补贴标准，应当充分听取电器电子产品生产企业、处理企业、有关行业协会及专家的意见。

第八条 国家鼓励和支持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科学研究、技术开发、相关技术标准的研究以及新技术、新工艺、新设备的示范、推广和应用。

第九条 属于国家禁止进口的废弃电器电子产品，不得进口。

第二章 相关方责任

第十条 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电器电子产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生产、进口的电器电子产品应当符合国家有关电器电子产品污染控制的规定，采用有利于资源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设计方案，使用无毒无害或者低毒低害以及便于回收利用的材料。电器电子产品上或者产品说明书中应当按照规定提供有关有毒有害物质含量、回收处理提示性说明等信息。

第十一条 国家鼓励电器电子产品生产者自行或者委托销售者、维修机构、售后服务机构、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回收废弃电器电子产品。电器电子产品销售者、维修机构、售后服务机构应当在其营业场所显著位置标注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提示性信息。回收的废弃电器电子产品应当由有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处理企业处理。

第十二条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应当采取多种方式为电器电子产品使用者提供方便、快捷的回收服务。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对回收的废弃电器电子产品进行处理，应当依照本条例规定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未取得处理资格的，应当将回收的废弃电器电子产品交有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处理企业处理。回收的电器电子产品经过修复后销售的，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等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并在显著位置标识为旧货。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制定。

第十三条 机关、团体、企事业单位将废弃电器电子产品交有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处理企业处理的，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资产核销手续。处理涉及国家秘密的废弃电器电子产品，依照国家保密规定办理。

第十四条 国家鼓励处理企业与相关电器电子产品生产者、销售者以及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等建立长期合作关系，回收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

第十五条 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应当符合国家有关资源综合利用、环境保护、劳动安全和保障人体健康的要求。禁止采用国家明令淘汰的技术和工艺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

第十六条 处理企业应当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日常环境监测制度。

第十七条 处理企业应当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的数据信息管理系统，向所在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报送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基本数据和有关情况。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基本数据的保存期限不得少于3年。

第十八条 处理企业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依照国家有关规定享受税收优惠。

第十九条 回收、储存、运输、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的单位和个人，应当遵守国家有关环境保护和环境卫生管理的规定。

第三章 监督管理

第二十条 国务院资源综合利用、市场监督管理、生态环境、工业信息产业等主管部门，依照规定的职责制定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相关政策和技术规范。

第二十一条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同级资源综合利用、商务、工业信息产业主管部门编制本地区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发展规划，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地方人民政府应当将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基础设施建设纳入城乡规划。

第二十二条 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等规定办理登记并在其经营范围中注明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企业，方可从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活动。

除本条例第三十四条规定外，禁止未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单位和个人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

第二十三条 申请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具备完善的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设施；
- (二) 具有对不能完全处理的废弃电器电子产品的妥善利用或者处置方案；
- (三) 具有与所处理的废弃电器电子产品相适应的分拣、包装以及其他设备；
- (四) 具有相关安全、质量和环境保护的专业技术人员。

第二十四条 申请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应当向所在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提交书面申请，并提供相关证明材料。受理申请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自收到完整的申请材料之日起60日内完成审查，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

第二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通过书面核查和实地检查等方式，加强对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活动的监督检查。

第二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向有关部门检举。有关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并依法及时处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电器电子产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生产、进口的电器电子产品上或者产品说明书中未按照规定提供有关有毒有害物质含量、回收处理提示性说明等信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擅自从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业、关闭，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采用国家明令淘汰的技术和工艺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依法暂停直至撤销其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

第三十条 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造成环境污染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按照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有关规定予以处罚。

第三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处理企业未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的数据信息管理系统，未按规定报送基本数据和有关情况或者报送基本数据、有关情况不真实，或者未按规定期限保存基本数据的，由所在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处理企业未建立日常环境监测制度或者未开展日常环境监测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有关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五章 附则

第三十四条 经省级人民政府批准，可以设立废弃电器电子产品集中处理场。废弃电器电子产品集中处理场应当具有完善的污染物集中处理设施，确保符合国家或者地方制定的污染物排放标准和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并应当遵守本条例的有关规定。

废弃电器电子产品集中处理场应当符合国家和当地工业区设置规划，与当地土地利用规划和城乡规划相协调，并应当加快实现产业升级。

第三十五条 本条例自2011年1月1日起施行。

5.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15号

(2019-04-22 发布 / 2019-06-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目 录

第一章 总则	269
第二章 相关方责任	269
第三章 监督管理	270
第四章 法律责任	272
第五章 附 则	273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15号

现公布《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自2019年6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9年4月22日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报废机动车回收活动，保护环境，促进循环经济发展，保障道路交通安全，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报废机动车，是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应当报废的机动车。

不属于《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规定的应当报废的机动车，机动车所有人自愿作报废处理的，依照本办法的规定执行。

第三条 国家鼓励特定领域的老旧机动车提前报废更新，具体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另行制定。

第四条 国务院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主管全国报废机动车回收（含拆解，下同）监督管理工作，国务院公安、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交通运输、市场监督管理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报废机动车回收有关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对本行政区域内报废机动车回收活动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交通运输、市场监督管理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本行政区域内报废机动车回收活动实施有关的监督管理。

第二章 相关方责任

第五条 国家对报废机动车回收企业实行资质认定制度。未经资质认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

国家鼓励机动车生产企业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机动车生产企业按照国家有关规定承担生产者责任。

第六条 取得报废机动车回收资质认定，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具有企业法人资格；
- (二) 具有符合环境保护等有关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要求的存储、拆解场地，拆解设备、设施以及拆解操作规范；
- (三) 具有与报废机动车拆解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第七条 拟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颁发资质认定书；对不符合条件的，不予资质认定并书面说明理由。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充分利用计算机网络等先进技术手段，推行网上申请、网上受理等方式，为申请人提供便利条件。申请人可以在网上提出申请。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将本行政区域内取得资质认定的报废机动车回收企业名单及时向社会公布。

第八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要求机动车所有人将报废机动车交售给指定的报废机动车回收企业。

第三章 监督管理

第九条 报废机动车回收企业对回收的报废机动车，应当向机动车所有人出具《报废机动车回收证明》，收回机动车登记证书、号牌、行驶证，并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将注销证明转交机动车所有人。

《报废机动车回收证明》样式由国务院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规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买卖或者伪造、变造《报废机动车回收证明》。

第十条 报废机动车回收企业对回收的报废机动车，应当逐车登记机动车的型号、号牌号码、发动机号码、车辆识别代号等信息；发现回收的报废机动车疑似赃物或者用于盗窃、抢劫等犯罪活动的犯罪工具的，应当及时向公安机关报告。

报废机动车回收企业不得拆解、改装、拼装、倒卖疑似赃物或者犯罪工具的机动车或者其发动机、方向机、变速器、前后桥、车架（以下统称“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

第十一条 回收的报废机动车必须按照有关规定予以拆解；其中，回收的报废大型客车、货车等营运车辆和校车，应当在公安机关的监督下解体。

第十二条 拆解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具备再制造条件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出售给具有再制造能力的企业经过再制造予以循环利用；不具备再制造条件的，应当作为废金属，交售给钢铁企业作为冶炼原料。

拆解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以外的零部件符合保障人身和财产安全等强制性国家标准，能够继续使用的，可以出售，但应当标明“报废机动车回用件”。

第十三条 国务院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建立报废机动车回收信息系统。报废机动车回收企业应当如实记录本企业回收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等主要部件的数量、型号、流向等信息，并上传至报废机动车回收信息系统。

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公安机关应当通过政务信息系统实现信息共享。

第十四条 拆解报废机动车，应当遵守环境保护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采取有效措施保护环境，不得造成环境污染。

第十五条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利用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拼装机动车，禁止拼装的机动车交易。

除机动车所有人将报废机动车依法交售给报废机动车回收企业外，禁止报废机动车整车交易。

第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加强对报废机动车回收企业的监督检查，建立和完善以随机抽查为重点的日常监督检查制度，公布抽查事项目录，明确抽查的依据、频次、方式、内容和程序，随机抽取被检查企业，随机选派检查人员。抽查情况和查处结果应当及时向社会公布。

在监督检查中发现报废机动车回收企业不具备本办法规定的资质认定条件的，应当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逾期未改正的，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第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部门的联系方式，方便公众举报违法行为。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接到举报的，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的，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

第四章 法律责任

第十八条 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在监督管理工作中发现不属于本部门处理权限的违法行为的，应当及时移交有权处理的部门；有权处理的部门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

第十九条 未取得资质认定，擅自从事报废机动车回收活动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没收非法回收的报废机动车、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在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5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没收非法回收的报废机动车、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必要时有关主管部门应当予以配合。

第二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一）买卖或者伪造、变造《报废机动车回收证明》；

（二）报废机动车回收企业明知或者应当知道回收的机动车为赃物或者用于盗窃、抢劫等犯罪活动的犯罪工具，未向公安机关报告，擅自拆解、改装、拼装、倒卖该机动车。

报废机动车回收企业有前款规定情形，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第二十一条 报废机动车回收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责令改正，没收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在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5万元或者没有违法所得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一）出售不具备再制造条件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

（二）出售不能继续使用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以外的零部件；

（三）出售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以外的零部件未标明“报废机动车回用件”。

第二十二条 报废机动车回收企业对回收的报废机动车，未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并将注销证明转交机动车所有人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利用报废机动车“五大总成”和其他零部件拼装机动车或者出售报废机动车整车、拼装的机动车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予以处罚。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第二十三条 报废机动车回收企业未如实记录本企业回收的报废机动车“五大总成”等主要部件的数量、型号、流向等信息并上传至报废机动车回收信息系统的，由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责令改正，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第二十四条 报废机动车回收企业违反环境保护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污染环境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依法予以处罚；拒不改正或者逾期未改正的，由原发证部门吊销资质认定书。

第二十五条 负责报废机动车回收管理的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第二十六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七条 报废新能源机动车回收的特殊事项，另行制定管理规定。

第五章 附则

军队报废机动车的回收管理，依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第二十八条 本办法自2019年6月1日起施行。2001年6月16日国务院公布的《报废汽车回收管理办法》同时废止。

6.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发改环资〔2020〕1146号

(2020-07-10 发布 / 2020-07-10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目 录

1. 落实属地管理责任	279
2. 狠抓重点领域推进落实	279
3. 强化日常监管和专项检查	280
4. 加强宣传引导	281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发改环资〔2020〕1146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委、生态环境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住房城乡建设厅（城市管理委、城市管理局、绿化市容局）、农业农村（农牧）厅（局、委）、商务厅（局、委）、文化和旅游厅（局）、市场监管局（委、厅）、供销合作社：

《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发改环资〔2020〕80号，以下简称《意见》）印发以来，各地、各部门积极推动落实，整体工作平稳开局，但各地各领域工作进度还不平衡。为统筹做好疫情防控和塑料污染治理工作，确保如期完成2020年底塑料污染治理各项阶段性目标任务，现将有关要求通知如下：

一、落实属地管理责任

各地要提高政治站位，进一步增强做好塑料污染治理工作的紧迫感和责任感，加大工作落实力度。8月中旬前出台省级实施方案，细化分解任务，层层压实责任；督促省会城市、计划单列市、地级以上城市等结合本地实际，重点围绕2020年底阶段性目标，分析评估各领域重点难点问题，研究提出可操作、有实效的具体推进措施，确保如期完成目标任务。

二、狠抓重点领域推进落实

（一）加强对禁止生产销售塑料制品的监督检查。各地市场监管部门要开展塑料制品质量监督检查，依法查处生产、销售厚度小于0.025毫米的超薄塑料购物袋和厚度小于0.01毫米的聚乙烯农用地膜等行为；按照《意见》规定的禁限期限，对纳入淘汰类产品目录的一次性发泡塑料餐具、一次性本标准起草单位：天津市环境保护科学研究院、中国环境科学研究院。本标准环境保护部2014年4月28日批准。新建锅炉自2014年7月1日起、10t/h以上在用蒸汽锅炉和7MW以上在用热水锅炉自2015年10月1日、10t/h及以下在用蒸汽锅炉和7MW及以下在用热水锅炉自2016年7月1日起执行本标准，〈锅炉大气污染物排放标准〉（GB13271-2001）自2016年7月1日废止。各地也可根据当地环境保护的需要和经济与技术条件，由省级人民政府批准提前实施本标准。本标准由环境保护部解释。塑料棉签、含塑料微珠日化产品等开展执法工作。各地工业和信息化部门要会同相关部门按照当地部署要求，组织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对辖区内涉及生产淘汰类塑料制品的企业进行产能摸排，引导相关企业及时做好生产调整等工作。

- (二) 加强对零售餐饮等领域禁限塑的监督管理。各地商务等部门要按照《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要求，结合当地政府工作安排，加强对商品零售场所、外卖服务、各类展会活动等停止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的监督管理。各地商务、市场监管部门要按照当地政府部门部署要求，推动集贸市场建立购物袋集中购销制度，进一步规范集贸市场塑料购物袋的销售和使用。各地文化和旅游等部门要按照当地政府部门部署要求，加强景区景点餐饮服务禁限塑的监督管理。各地要结合实际，明确餐饮行业禁限塑的具体监管部门并加强监督管理，引导督促相关企业做好产品替代并按照《意见》规定期限停止使用一次性塑料吸管和一次性塑料餐具。
- (三) 推进农膜治理。各地农业农村部门要加强与供销合作社协作，组织开展以旧换新、经营主体上交、专业化组织回收等，推进农膜生产者责任延伸制度试点，推进农膜回收示范县建设，健全废旧农膜回收利用体系。各地农业农村部门要会同相关部门对市场销售的农膜加强抽检抽查，将厚度小于0.01毫米的聚乙烯农用地膜、违规用于农田覆盖的包装类塑料薄膜等纳入农资打假行动。
- (四) 规范塑料废弃物收集和处置。各地住房城乡建设部门要结合实施生活垃圾分类，加大塑料废弃物分类收集和处置力度，推动将分拣成本高、不宜资源化利用的低值塑料废弃物进入生活垃圾焚烧发电厂进行资源化利用，减少塑料垃圾的填埋量。
- (五) 开展塑料垃圾专项清理。各地住房城乡建设部门要会同相关部门按时完成已排查出的规模较大的生活垃圾非正规堆放点整治任务。各地农业农村部门要组织开展农田残留地膜清理整治。沿海地区生态环境部门要牵头组织开展清洁海滩等行动。

三、强化日常监管和专项检查

- (一) 实施生态环境保护综合执法。各地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住房城乡建设、商务、文化和旅游等部门，要按照《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关于深化生态环境保护综合行政执法改革的指导意见》《行政主管部门移送适用行政拘留环境违法案件暂行办法》等法律政策要求，做好日常监管；各行业主管部门要及时将涉塑料环境污染和生态破坏行为的线索移交生态环境保护综合执法队伍，由其依法立案查处。
- (二) 开展联合专项行动。8月底前，各地要对照本通知要求，启动商场超市、集贸市场、餐饮行业等重点领域禁限塑推进情况专项执法检查。年底前，生态环境部、发展改革委将会同各相关部门开展塑料污染治理督促检查联合专项行动，对各地实施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方案制定、工作推进和监督执法情况进行部委联合督查，联合专项行动方案另行印发；视情将联合专项行动发现的塑料污染治理相关突出问题纳入中央生态环境保护督察范畴，强化督查问责。

四、加强宣传引导

各地、各部门要加强塑料污染治理宣传引导，通过政策图解、短视频等多种形式深入介绍各领域推进的时间表和路线图，组织相关媒体投放公益广告、宣传片等，进一步增加公众对塑料污染治理工作的认同和支持，扩大公众参与的积极性。及时总结、宣传、交流塑料污染治理的好经验、好做法。组织相关行业、企业发布联合倡议，进一步凝聚社会共识，营造全社会共同参与的良好氛围。同时，坚持问题导向，加大曝光力度，开展建设性舆论监督工作。

塑料污染治理专项工作机制将加强统筹指导和协同配合，形成工作合力，持续开展督促检查，对制定实施方案不及时、重点工作不落实的地方进行通报。

附件：相关塑料制品禁限管理细化标准（2020年版）

国家发展改革委
生态环境部
工业和信息化部
住房城乡建设部
农业农村部
商务部
文化和旅游部
市场监管总局
供销合作总社
2020年7月10日

7. 北京市危险废物污染防治条例

2020年6月5日北京市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二十二次会议通过

(2020-06-05 发布 / 2020-09-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北京市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条例

目 录

第一章 总则	287
第二章 一般规定	288
第三章 特别规定	291
第四章 法律责任	293
第五章 附则	295

北京市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条例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危险废物管理，防治危险废物污染环境，保障公众健康，维护生态安全，推进生态文明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医疗废物管理条例》等法律法规的规定，结合本市实际情况，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适用于本市行政区域内危险废物污染环境的防治。

第三条 本条例所称危险废物，是指下列固体废物：

- (一) 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的固体废物；
- (二) 未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按照国家规定的危险废物鉴别标准、鉴别方法和鉴别程序，经鉴别具有危险特性的固体废物；
- (三) 未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或者根据危险废物鉴别标准无法鉴别，经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组织专家认定，可能对人体健康或者生态环境造成有害影响的固体废物。

市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前款第二项、第三项规定的废物的名称、种类、特性等基本信息向社会公示。

危险废物和非危险废物混合且不能分离的，按照危险废物管理，但经鉴别不具有危险特性的除外。

第四条 本市坚持绿色发展理念，采取有利于节约和综合利用资源，保护和改善环境，促进人与自然和谐发展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鼓励和支持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科学技术的研究和应用，引导公众积极参与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使经济社会发展与环境保护相协调。

本市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坚持预防为主、源头减量、全过程控制和污染担责的原则。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采取措施，减少危险废物的产生量，降低危险废物的危害性。

第五条 市、区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组织领导，按照市级统筹、属地负责的原则，将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作为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重点内容，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生态环境保护规划。

市、区人民政府应当坚持平战结合，将危险废物应急处置纳入突发事件应急管理体系，组织有关部门建立突发事件中危险废物应急处置联防联控协调机制，制定应急处置预案，规范危险废物应急处置，科学调配危险废物处置资源，保障危险废物处置能力，加强监督管理。

第六条 市、区生态环境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市、区交通、卫生健康、城市管理主管部门依据法律、法规、规章和各自职责，分别对危险废物道路运输、医疗废物处置、生活垃圾焚烧飞灰和有害垃圾收集实施监督管理。

市、区经济和信息化、规划和自然资源、教育、科学技术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

第七条 市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建立本市危险废物管理信息系统。

市、区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交通、卫生健康等主管部门建立健全危险废物污染环境的执法协调配合机制，加强行政执法信息共享。

第八条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发现有危险废物污染环境情形的，应当及时报告所在地的区生态环境主管部门，配合做好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

第九条 市、区人民政府每年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本行政区域的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时，应当包含危险废物污染防治工作情况。

市生态环境主管部门定期发布的环境状况公报应当包含本行政区域内危险废物的种类、数量、利用和处置情况等信息。

第十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宣传和普及工作，鼓励基层群众性自治组织、社会组织、环境保护志愿者开展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法律法规和知识的宣传。

第十一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有危险废物污染环境行为的，有权向市、区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进行举报；接受举报的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将处理结果向举报人反馈。对实名举报并查证属实的，按照规定给予奖励。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负有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不依法履行职责的，有权向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举报。

第二章 一般规定

第十二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合理选择原料、能源和工艺、设备，减少有毒、有害原料的使用，提高资源利用效率，减少危险废物的产生量。

产生危险废物的企业应当依法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将审核结果报所在地的区发展改革和生态环境主管部门。

第十三条 产生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遵守下列规定：

- (一) 按照国家和本市有关规定，向区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领取排污许可证，并执行排污许可管理制度的规定；
- (二) 制定危险废物年度管理计划，报所在地的区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 (三) 建立危险废物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的污染防治管理制度，明确单位负责人、相关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的责任；
- (四) 建立危险废物管理台账，如实记载危险废物的名称、种类、产生时间、数量及流向等情况；
- (五) 妥善保存危险废物管理台账，保存时间不少于5年；以填埋方式处置危险废物的，永久保存危险废物管理台账。

产生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破产或者注销的，单位负责人应当将危险废物管理台账移交所在地的区生态环境主管部门保存。

第十四条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应当依法申请取得许可证。禁止无许可证或者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市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法公开本市取得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目录，供社会公众查询。

第十五条 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是重要的城市基础设施。

市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市发展改革、规划和自然资源、城市管理等部门，根据国家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建设规划和北京城市总体规划的要求，科学评估危险废物处置需求，组织编制全市危险废物处置设施、场所建设实施规划，明确设施、场所建设的布局和时序，与控制性详细规划相衔接，报市人民政府批准后实施。

区人民政府应当根据全市危险废物处置设施、场所建设实施规划，组织建设本行政区域内医疗废物的中转贮存设施。

市发展改革、财政等部门根据全市危险废物处置设施、场所建设实施规划，采用投资、补助、补贴等方式，制定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建设、运行的资金支持政策。

第十六条 产生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没有自行利用、处置能力的，应当将产生的危险废物委托有资质单位收集、运输、利用、处置，对受托方的主体资格和技术能力进行核实，并签订书面合同。

危险废物委托收集、运输、利用、处置合同应当载明危险废物的名称、种类、特性等基本信息及污染防治要求、收运时间、收运频次、收运处置费用、违约责任等内容。

危险废物处置收费依据本市政府定价目录管理，具体价格标准由市价格主管部门会同市生态环境等主管部门综合本市危险废物的产生量、运输和集中处置能力及成本、集中处置设施运营状况等因素确定。

第十七条 危险废物收集、利用、处置单位应当按照规定及书面委托合同的约定及时收集、接收危险废物，不得无故拒收。

危险废物收集、利用、处置单位因不可抗力或者重大活动、重污染天气等情形，导致无法正常收集、接收危险废物的，应当及时告知产生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协助其采取临时环境安全措施。

第十八条 转移危险废物的，转出和接收单位应当遵守国家危险废物转移联单制度和运输管理要求。

市生态环境主管部门审批危险废物跨省、自治区、直辖市转移，并将批准信息通报相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交通主管部门。不得将本市行政区域外的危险废物输入本市行政区域内贮存、处置。

第十九条 在本市行政区域内跨区转移危险废物的，移出单位应当向移出地的区生态环境主管部门申领并填写危险废物转移联单。

移出地和接受地的区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分别对危险废物的移出和接受情况进行监督。

第二十条 危险废物运输单位应当依法取得道路危险货物运输许可，在运输危险废物的车辆上安装卫星定位装置并确保其正常运行，不得在运输途中抛撒、泄漏、丢弃、倾倒危险废物。

运输的危险废物符合国家有关例外数量和有限数量危险货物要求的，可以依国家规定按照普通货物运输。

市、区交通主管部门应当公开本市具有危险废物运输许可的单位和车辆的信息。

第二十一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企业事业

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遵守下列规定：

- (一) 采取措施安全处理危险废物，不得擅自丢弃、倾倒、堆放或者遗撒；
- (二) 对不同特性的危险废物分类收集、贮存，不得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收集、贮存、运输；
- (三) 贮存暂时不利用或者不处置的危险废物，应当建设符合国家标准的贮存设施、场所，并采取相应的防护措施；
- (四) 加强对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和设备的管理和维护，保证其正常运行和使用；

- (五) 按照规定及时在本市环境信息公开平台上如实公开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种类、数量及去向等信息，但涉密单位或者涉密项目除外；
- (六) 对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经消除污染转作他用的，如实记录其数量、用途和去向；
- (七) 搬迁、转产、关闭的，安全处置已经产生或者贮存的危险废物，依法开展环境调查、风险评估和治理修复，并承担相应费用。

第二十二条 本市建立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信用管理机制，将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的相关信用记录按照有关规定纳入信用信息共享平台。

市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和本市要求，制定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信用机制的具体办法。

第三章 特别规定

第二十三条 工业园区建设单位应当根据全市危险废物处置设施、场所建设实施规划和园区建设规划，配套建设危险废物贮存、转运、处置设施、场所。

工业园区管理机构应当统筹组织园区内产废量较小的工业企业产生的危险废物的收集、贮存、转运。

第二十四条 工业企业新建、改建、扩建产生危险废物的建设项目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建设符合国家和本市有关标准的自行利用、处置设施：

- (一) 年度同一种类危险废物产生量超过5000吨；
- (二) 本市对产生的危险废物不具备安全处置能力且危险废物不适宜跨省转移的。

前款规定的自行利用、处置设施，应当纳入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并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

第二十五条 工业企业自行利用、处置本企业不同厂区产生的危险废物的，转移过程应当执行国家危险废物转移联单制度。

工业企业自行利用、处置本企业同一厂区内产生的危险废物的，应当建立内部转运管理制度，记录转运数据。

第二十六条 区人民政府应当根据全市危险废物处置设施、场所建设实施规划和设施建设、运行的资金支持政策，通过招投标、购买服务等方式，委托具备专业资质的单位，统筹安排收集、运输本行政区域内规模较小、分布分散或者交通不便的医疗卫生机构产生的医疗废物。

市卫生健康主管部门应当会同市生态环境、发展改革、交通等主管部门制定医疗废物收运管理规定并开展考核评价。

第二十七条 重大传染病疫情等突发事件发生时，市、区人民政府应当统筹协调医疗废物等危险废物收集、贮存、运输、处置等工作，扩大处置能力，保障所需的车辆、场地、处置设施和防护物资。卫生健康、生态环境、城市管理、交通等主管部门应当协同配合，依法履行应急处置职责。

第二十八条 发生重大传染病疫情期间，市卫生健康、生态环境主管部门对医疗废物采取特别防控措施，各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要求，对医疗废物进行消毒、分类、收集、包装等工作。

根据疫情防控需要，市卫生健康和生态环境主管部门将相关单位、场所和地点等产生的生活垃圾列入重点管控生活垃圾，参照医疗废物进行管理，制定相关应急措施。各相关单位、物业服务人和个人应当服从政府统一指挥，落实就地消毒、分类、收集、运输等应急措施。经市人民政府同意，可以使用生活垃圾焚烧设施应急处置医疗废物和重点管控生活垃圾。生活垃圾焚烧设施管理单位应当按照卫生健康主管部门的要求做好卫生防疫工作。

第二十九条 机动车、电动自行车生产者、销售者应当标识生产、销售的产品使用电池的危险特性；废弃电池属于危险废物的，应当公告消费者通过生产者、销售者、维修者等渠道，交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回收利用、处置。

机动车、电动自行车及配套电池的生产者、销售者应当建立健全废弃电池回收制度，通过售后服务、维修、拆解等渠道回收废弃电池，定期发布回收信息；回收的废弃电池属于危险废物的，应当提供或者委托给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利用、处置。

第三十条 机动车维修企业办理机动车维修经营备案手续时，应当有明确的危险废物污染防治措施和管理制度，具备符合条件的危险废物专用贮存设施、场所。

机动车所有人、使用人对机动车维修活动中产生的废铅蓄电池、废矿物油等危险废物，应当自行或者通过机动车维修企业交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回收利用、处置。

第三十一条 废旧机动车、废弃电器电子产品拆解单位应当对拆解过程中产生的危险废物分类收集、贮存，交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回收利用、处置。

第三十二条 设立实验室的企业、学校、科研机构及其他相关单位应当建立健全实验室产生的危险废物管理制度，加强对危险废物的管理，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实验室危险废物，将危险废物处置费用纳入教学活动、科研项目预算，明确负责实验室危险废物管理的机构或者人员。实验室应当建立危险废物管理台账，危险废物管理人员应当定期对贮存设施、场所进行检查。

实验室产生的过期、失效及多余药剂应当设置专门的贮存场所分类存放，不得随意丢弃、填埋。

第三十三条 政府机关、企业事业单位及社会团体对其产生的废弃荧光灯管，应当单独收集、贮存，定期交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回收利用、处置。

第三十四条 单位和个人应当将日常生活中产生的废弃电池、废弃化学药品、废弃荧光灯管等有害垃圾投放至有害垃圾收集容器。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依法设置有害垃圾收集容器，分类收集有害垃圾。

第三十五条 区人民政府应当充分利用现有生活垃圾收运体系，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有害垃圾，结合辖区实际合理设置有害垃圾集中暂存点。有害垃圾投放点至集中暂存点间的投放、清运、暂存等收集过程，按照国家规定豁免危险废物管理；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应当分类收集，交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回收利用、处置。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六条 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一款第(三)项、第(五)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二款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移交危险废物管理台账；逾期不移交的，对单位负责人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七条 违反本条例第十六条规定，产生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委托他人收集、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未对受托方的主体资格和技术能力进行核实、未依法签订书面合同或者未在合同中约定污染防治要求的，应当与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受托方依法承担连带责任。

第三十八条 违反本条例第十七条第一款规定，未及时收集、接收危险废物，或者无故拒收危险废物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九条 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一款规定，运输危险废物的车辆上安装的卫星定位装置未正常运行的，由交通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处罚；在运输途中抛撒、泄漏、丢弃、倾倒危险废物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所需处置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二十万元的，按二十万元计算，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第四十条 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一)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所需处置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二十万元的，按二十万元计算，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项、第(三)项、第(六)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四)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五)项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第四十一条 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规定，未开展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擅自开工建设，或者自行利用、处置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建设项目即投入生产或者使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的规定处理。

第四十二条 违反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款规定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三条 违反本条例第二十九条第二款规定，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从事经营活动的，由区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所需处置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二十万元的，按二十万元计算，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第四十四条 单位和个人违反本条例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部门依照《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进行处罚。

第四十五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本条例规定，受到罚款处罚，被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可以自责令改正期限届满之日的次日起，按照原处罚数额按日连续处罚。

第四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危险废物污染环境，造成他人损害或者生态环境损害的，受到危险废物污染损害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有权要求污染者依法赔偿损失；有关检察机关、行政机关和社会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生态损害赔偿诉讼。

第四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造成重大环境污染事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八条 执法机关在查处危险废物污染环境违法行为过程中，发现公职人员涉嫌贪污贿赂、失职渎职等职务违法或者职务犯罪的问题线索，应当移送监察机关。

第五章 附则

第四十九条 本条例所称产生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是指产生危险废物的工业企业，机动车维修企业，医疗卫生机构，废旧机动车、废弃电器电子产品拆解单位，设立实验室的企业、学校、科研机构或者其他相关单位，以及其他生产经营者。

本条例所称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依照《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的规定确定。

第五十条 对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中的危险废物，国家规定的豁免环节符合豁免条件的，可以按照豁免内容进行管理，法律法规另有规定除外。

第五十一条 液态危险废物的污染防治，适用本条例；但是排入水体的废水和放射性固体废物的污染防治适用有关法律、法规，不适用本条例。

8. 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根据2019年11月27日北京市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十六次会议通过

(2019-11-27 发布 / 2020-05-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目 录

第一章 总则	301
第二章 规划与建设	303
第三章 减量与分类	305
第四章 收集、运输与处理	309
第五章 监督管理	311
第六章 法律责任	313
第七章 附则	316

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2011年11月18日北京市第十三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通过 根据2019年11月27日北京市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通过的《关于修改〈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的决定》修正)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生活垃圾管理,改善城乡环境,保障人体健康,维护生态安全,促进首都经济社会可持续发展,依据国家有关法律、法规,结合本市实际情况,制定本条例。

第二条 本市行政区域内生活垃圾的管理活动适用本条例。

本条例所称生活垃圾,包括单位和个人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生活垃圾的建筑垃圾等固体废物。

危险废物、医疗废物、废弃电器电子产品按照国家相关法律、法规和本市其他有关规定进行管理。

第三条 生活垃圾处理是关系民生的基础性公益事业。加强生活垃圾管理,维护公共环境和节约资源是全社会共同的责任。

本市坚持党委领导、政府主导、社会协同、公众参与、法治保障、科技支撑,遵循减量化、资源化、无害化的方针和城乡统筹、科学规划、综合利用的原则,实行全市统筹和属地负责,逐步建立和完善生活垃圾处理的社会服务体系。

第四条 生活垃圾管理是本市各级人民政府的重要职责。

市人民政府统一领导全市生活垃圾管理工作,将生活垃圾管理事业纳入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确定生活垃圾管理目标,制定各区生活垃圾源头总量控制计划,统筹设施规划布局,制定促进生活垃圾减量化、资源化、无害化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保障生活垃圾治理的资金投入。

区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的生活垃圾管理工作,将生活垃圾管理事业纳入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保障生活垃圾治理的资金投入,组织落实市人民政府确定的生活垃圾管理目标和本区生活垃圾源头总量控制计划;可以因地制宜采取设立固定桶站、定时定点收运等多种方式开展垃圾分类工作。

街道办事处和乡镇人民政府负责本辖区内生活垃圾的日常管理工作，指导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组织动员辖区内单位和个人参与生活垃圾减量、分类工作。

第五条 市、区城市管理部门负责生活垃圾管理工作的综合协调、统筹规划、督促指导和检查考核，对生活垃圾分类投放、收集、运输、处理和再生资源回收实施监督管理。

其他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相互协调配合，生活垃圾管理的相关工作。

第六条 单位和个人应当遵守国家和本市生活垃圾管理的规定，依法履行生活垃圾产生者的责任，减少生活垃圾产生，承担生活垃圾分类义务，并有权对违反生活垃圾管理的行为进行举报。

党政机关和事业单位要带头开展垃圾减量、分类工作，发挥示范引导作用。

第七条 从事生活垃圾清扫、收集、运输、处理服务的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作业标准以及相关规定，提供安全并符合环境保护要求的服务。

本市制定鼓励政策，引导社会投资进入生活垃圾清扫、收集、运输、处理及循环利用等领域。

第八条 本市按照多排放多付费、少排放少付费，混合垃圾多付费、分类垃圾少付费的原则，逐步建立计量收费、分类计价、易于收缴的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加强收费管理，促进生活垃圾减量、分类和资源化利用。具体办法由市发展改革部门会同市城市管理、财政等部门制定。

产生生活垃圾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规定缴纳生活垃圾处理费。

第九条 本市坚持高标准建设、高水平运行生活垃圾处理设施，采用先进技术，因地制宜，综合运用焚烧、生化处理、卫生填埋等方法处理生活垃圾，逐步减少生活垃圾填埋量。

本市支持生活垃圾处理的科技创新，促进生活垃圾减量化、资源化、无害化先进技术、工艺的研究开发与转化应用，提高生活垃圾再利用和资源化的科技水平。

市科技部门应当会同市城市管理等部门采取措施，鼓励和支持可重复利用的包装材料和可降解垃圾袋等的研发和应用。

本市鼓励单位和个人使用再利用产品、再生产品以及其他有利于生活垃圾减量化、资源化的产品。

第十条 本市采取有效措施，加强生活垃圾源头减量、全程分类管理、资源化利用、无害化处理的宣传教育，强化单位和个人的生活垃圾分类意识，推动全社会共同参与垃圾分类。

报刊、广播、电视和网络等媒体应当加强对生活垃圾管理的宣传，普及相关知识，增强社会公众的生活垃圾减量、分类意识。

城市管理部门应当组织生活垃圾集中收集、运输、处理设施对公众开放，建立生活垃圾管理宣传教育基地。

教育部门应当将生活垃圾减量、分类、处理的知识，纳入中小学校及学前教育教学。

第十一条 本市对在生活垃圾管理工作中做出突出贡献和取得优异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二章 规划与建设

第十二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市政府有关部门，组织编制市生活垃圾处理规划，报市人民政府批准后实施。涉及设施规划布局和用地的，纳入本市城乡规划和土地利用规划。

本市生活垃圾处理规划应当明确生活垃圾处理体系，确定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和处理设施以及再生资源回收利用设施的总体布局，统筹生活垃圾处理流向、流量。

第十三条 区人民政府应当根据市生活垃圾处理规划，组织编制本区生活垃圾处理规划，报市城市管理部门备案。涉及设施建设的，应当与所在地的控制性详细规划相衔接。

区生活垃圾处理规划应当明确本区生活垃圾的处理方式，确定生活垃圾设施的布局和处理工艺、能力。

第十四条 编制涉及生活垃圾处理设施建设的城乡规划，组织编制机关应当依法征求专家和公众的意见。规划草案报送审批前，应当依法予以公告，公告的时间不得少于30日；报送审批的材料应当附意见采纳情况及理由。

第十五条 本市有关部门编制城乡规划年度实施计划、年度投资计划、年度土地供应计划时，应当统筹安排重点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建设。

区人民政府应当根据本市的统筹安排，制定年度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的建设工作计划并组织实施，保障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的建设与运行。

第十六条 按照城乡规划、土地利用规划确定的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建设用地，未经法定程序，不得改变用途。

规划和自然资源部门应当会同城市管理、生态环境等有关部门编制生活垃圾处理设施规划管理技术标准，根据设施的工艺和规模，对设施周边地区实施规划控制。

第十七条 本市对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建设、运行及周边环境保护建设，给予资金、土地等方面的支持与保障。

第十八条 新建、改建、扩建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应当符合生活垃圾处理规划。

发展改革部门批准、核准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建设项目时，应当就项目处理工艺、规模、服务范围等内容征求城市管理部门的意见，城市管理部门应当及时提供相关意见。

第十九条 建设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分析、预测和评估可能对周围环境造成的影响，并提出环境保护措施。建设单位应当将环境影响评价结论向社会公示。

建设单位在报批环境影响文件前，应当征求有关单位、专家和公众的意见。报送环境影响文件时，应当附具对有关单位、专家和公众的意见采纳情况及理由。

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建设应当符合国家和本市有关标准，采取密闭、渗沥液处理、防臭、防渗、防尘、防噪声、防遗撒等污染防控措施；现有设施达不到标准要求的，应当制定治理计划，限期进行改造，达到环境保护要求。

第二十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市规划和自然资源、发展改革、住房和城乡建设等部门，组织编制建设工程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建设标准。

市规划和自然资源部门应当将建设工程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建设标准中的有关内容，纳入本市建设项目公共服务设施配套建设指标，并在对公共建筑项目进行行政许可审查时，就生活垃圾分类设施的配套建设征求城市管理部门的意见。

第二十一条 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应当按照标准配套建设生活垃圾分类设施，建设工程设计方案应当包括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的用地平面图并标明用地面积、位置和功能。

建设工程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应当与建设项目主体工程同步设计、同步建设、同步交付使用，建设费用纳入建设工程总投资；建设工程竣工后，建设单位应当向城市管理部门申请验收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

新建住宅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销售场所公示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的设置位置、功能等内容，并在房屋买卖合同中明示。

第二十二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拆除、迁移、改建、停用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或者改变其用途。确需拆除、迁移、改建、停用生活垃圾集中收集、转运、处理设施的，应当经城市管理部门和生态环境部门核准，并按照规定先行重建、补建或者提供替代设施。

第二十三条 生活垃圾填埋场停止使用的，运行管理单位应当按照国家和本市相关标准、规定实施封场工程，并做好封场后的维护管理工作。

第三章 减量与分类

第二十四条 生产者、销售者应当严格执行国家和本市对限制产品过度包装的标准和要求，减少包装材料的过度使用和包装性废物的产生；对列入国家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按照规定予以标注，并进行回收。

经营快递业务的企业在本市开展经营活动，应当使用电子运单和可降解、可重复利用的环保包装材料，减少包装材料的过度使用和包装性废物的产生。

电子商务经营者在本市销售商品需要使用快递服务的，应当选择使用环保包装材料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

本市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采取措施回收快件包装材料。

第二十五条 单位和个人应当减少使用或者按照规定不使用一次性用品，优先采购可重复使用和再利用产品。

党政机关和事业单位应当在符合保密规定的前提下推行无纸化办公，提高再生纸的使用比例，不使用一次性杯具。

第二十六条 禁止在本市生产、销售超薄塑料袋。超市、商场、集贸市场等商品零售场所不得使用超薄塑料袋，不得免费提供塑料袋。

餐饮经营者、餐饮配送服务提供者和旅馆经营单位不得主动向消费者提供一次性筷子、叉子、勺子、洗漱用品等，并应当设置醒目提示标识。一次性用品的详细10

目录，由市城市管理部门会同市市场监督管理、文化和旅游、商务等部门制定，并向社会公布。

餐饮经营者在提供服务过程中应当提示消费者合理消费，适量点餐；提供自助餐的，可以在作出提示后，对超过合理限度的剩餐收取费用。

餐饮行业协会应当在厨余垃圾减量化工作中发挥行业自律和服务作用，引导企业行为，推广先进技术，督促落实本市厨余垃圾管理的有关规定。

第二十七条 本市采取措施逐步推行净菜上市。具体办法由市商务部门会同市农业农村部门制定。

有条件的居住区、家庭可以安装符合标准的厨余垃圾处理装置。

第二十八条 市、区人民政府应当加快建筑垃圾资源化处理设施建设，提高处理能力，并制定建筑垃圾综合管理循环利用政策，促进建筑垃圾排放减量化、运输规范化、处置资源化以及再生产品利用规模化。

本市城市管理、住房和城乡建设等相关部门应当加强对建筑垃圾的全程控制和管理，制定建筑垃圾再生产品质量标准、应用技术规程，采取措施鼓励建设工程选用建筑垃圾再生产品和可回收利用的建筑材料，支持建筑垃圾再生产品的生产企业发展。

建设单位、施工单位应当根据建筑垃圾减排处理和绿色施工有关规定，采取措施减少建筑垃圾的产生，对施工工地的建筑垃圾实施集中分类管理；具备条件的，对工程施工中产生的建筑垃圾进行综合利用。

第二十九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编制再生资源回收体系建设规划，建立健全再生资源回收体系，合理布局再生资源回收网点，制定再生资源回收管理规范，规范再生资源回收市场秩序，支持再生资源回收行业发展。

市发展改革部门应当将生活垃圾源头减量、资源化利用和生产者责任延伸制度纳入循环经济和清洁生产促进相关政策。

第三十条 可回收物应当投入可回收物收集容器，或者直接交由再生资源回收经营者处置。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并公布可回收物目录，将回收统计数据纳入生活垃圾统计内容。

第三十一条 再生资源回收经营者应当到区城市管理部门备案，并遵守下列规定：

- （一）在服务范围内，公布回收价格及服务电话；
- （二）根据可回收物目录，扩大收集渠道，做到应收尽收；
- （三）配备相应的贮存设施设备，不同种类的物品应当分类贮存；
- （四）运输可回收物品，采取措施防止扬散、渗漏；
- （五）消防、环境保护和市容环境卫生等法律、法规、规章的其他规定。

再生资源回收经营者可以采取固定站点回收、定时定点回收、上门回收等方式，开展回收服务，方便单位和个人交售可回收物品。

第三十二条 本市按照全程管理、系统衔接、科学分类、适应处理的原则建立生活垃圾分类制度，对生活垃圾实行分类投放、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具体办法由市城市管理部门制定。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根据有利于减量化、资源化和便于识别、便于分类投放的原则，以及本市生活垃圾的特性、处理方式，制定生活垃圾分类标准向社会公布，并根据生活垃圾处理结构的变化进行调整。

第三十三条 产生生活垃圾的单位和个人是生活垃圾分类投放的责任主体，应当按照下列规定分类投放生活垃圾：

- (一) 按照厨余垃圾、可回收物、有害垃圾、其他垃圾的分类，分别投入相应标识的收集容器；
- (二) 废旧家具家电等体积较大的废弃物品，单独堆放在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指定的地点；
- (三) 建筑垃圾按照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指定的时间、地点和要求单独堆放；
- (四) 农村村民日常生活中产生的灰土单独投放在相应的容器或者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指定的地点；
- (五) 国家和本市有关生活垃圾分类投放的其他规定。

第三十四条 本市实行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制度。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按照下列规定确定：

- (一) 城市居住地区，包括住宅小区、胡同、街巷等，实行物业管理的，由物业管理单位负责；单位自管的，由自管的单位负责。
- (二) 农村居住地区，由村民委员会负责。
- (三) 机关、部队、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及其他组织的办公管理区域，由本单位负责。
- (四) 公共建筑，由所有权人负责；所有权人委托管理单位管理的，由管理单位负责。
- (五) 建设工程的施工现场，由建设单位负责。
- (六) 集贸市场、商场、展览展销、餐饮服务、沿街商铺等经营场所，由经营管理单位负责。
- (七) 机场、火车站、长途客运站、公交场站、轨道交通车站，由管理单位负责。
- (八) 河湖及其管理范围，由河湖管理单位负责。
- (九) 公园、风景名胜区、旅游景点，由管理单位负责。
- (十) 城市道路、公路及其人行过街桥、人行地下过街通道等附属设施，由清扫保洁单位负责。

按照前款规定不能确定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的，由所在地街道办事处或者乡镇人民政府组织确定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并向社会公布。

第三十五条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遵守下列规定：

- (一) 建立生活垃圾分类日常管理制度；
- (二) 在责任范围内开展生活垃圾分类知识宣传，指定专人负责指导、监督单位和个人进行生活垃圾分类；
- (三) 根据生活垃圾产生量和分类方法，按照相关规定设置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并保持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完好和整洁美观，出现破旧、污损或者数量不足的，及时维修、更换、清洗或者补设；

- (四) 明确不同种类生活垃圾的投放时间、地点，分类收集、贮存生活垃圾；
- (五) 将生活垃圾交由有资质的单位收集运输，并签订生活垃圾收集运输服务合同，合同示范文本由市城市管理部门会同相关部门制定并公布；
- (六) 及时制止翻拣、混合已分类的生活垃圾的行为；
- (七) 国家和本市的其他规定。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发现投放人不按照分类标准投放的，有权要求其改正；投放人拒不改正的，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向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报告。

市住房和城乡建设部门应当督促物业服务企业依法履行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义务。

第三十六条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按照下列规定设置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

- (一) 党政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等单位的办公或者生产经营场所应当根据需要设置厨余垃圾、可回收物、有害垃圾、其他垃圾四类收集容器；
- (二) 住宅小区和自然村应当在公共区域成组设置厨余垃圾、其他垃圾两类收集容器，并至少在一处生活垃圾交投点设置可回收物、有害垃圾收集容器；
- (三) 其他公共场所应当根据需要设置可回收物、其他垃圾两类收集容器。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可以根据可回收物、有害垃圾的种类和处置利用需要，细化设置收集容器。

市城市管理部门应当就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的颜色、图文标识、设置标准和地点等制定规范，并向社会公布。

第三十七条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的街道办事处或者乡镇人民政府进行生活垃圾排放登记，并保存生活垃圾收集运输服务合同备查。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建立生活垃圾管理台账，记录责任范围内实际产生的生活垃圾的种类、数量、运输者、去向等情况，并定期向所在地的街道办事处或者乡镇人民政府报告。

街道办事处和乡镇人民政府应当及时将数据汇总录入生活垃圾管理信息系统。

第三十八条 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的建设单位，建筑物、构筑物等拆除工程和城市道路、公路等施工工程的承担单位应当在施工前，依法办理渣土消纳许可。渣土消纳许可应当在施工现场公示。

拆除工程的承担单位向住房和城乡建设部门办理拆除工程施工备案时，堆放、清除废弃物的措施资料中应当包含渣土消纳许可证。

第三十九条 居民对装饰装修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应当按照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规定的时间、地点和要求单独堆放，并承担处理费用；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依法办理渣土消纳许可。

第四十条 单位和个人应当按照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公示的时间、地点投放生活垃圾，不得随意丢弃、抛撒生活垃圾。

第四章 收集、运输与处理

第四十一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市交通、住房和城乡建设、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根据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的规定，制定生活垃圾收集、运输和处理的管理规范和技术标准。

第四十二条 从事生活垃圾收集、运输服务的企业，应当取得生活垃圾收集、运输经营许可。

第四十三条 运输生活垃圾的车辆应当取得生活垃圾准运证。运输厨余垃圾或者渣土、砂石、土方、灰浆等建筑垃圾，应当专车专用并符合相关规定。

第四十四条 收集、运输生活垃圾的单位应当遵守下列规定：

- (一) 按时、分类收集、运输不同种类的生活垃圾，根据生活垃圾收集量、分类方法、作业时间等因素，配备、使用符合标准的收集工具、运输车辆以及符合要求的人员；
- (二) 将生活垃圾分类运输至集中收集设施或者符合规定的转运、处理设施，不得混装混运，不得随意倾倒、丢弃、遗撒、堆放；
- (三) 建立生活垃圾管理台账，记录生活垃圾来源、种类、数量、去向等情况，并向区城市管理部门报告；
- (四) 国家和本市的其他规定。

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发现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所交运的生活垃圾不符合分类标准的，有权要求其改正；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拒不改正的，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应当向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报告。

第四十五条 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应当按照要求接收生活垃圾，并进行分类处理。

从事生活垃圾经营性处理服务的企业，应当取得城市管理部门核发的生活垃圾处理经营许可。

设置建筑垃圾消纳场所的，应当取得城市管理部门核发的建筑垃圾消纳场所设置许可。

第四十六条 建设单位应当将建筑垃圾交由有资质的运输单位，按照渣土消纳许可确定的时间、路线和要求，运输至符合规定的渣土消纳场所。实施建筑垃圾就地资源化处置的，应当采用符合建筑垃圾资源化处理要求的设备或者方式。

建设单位应当将实际产生的建筑垃圾的种类、数量、运输者、去向等情况，及时告知渣土消纳场所。渣土消纳场所发现与实际接收的数量不符的，应当及时报告城市管理部门。

第四十七条 市、区人民政府应当加快厨余垃圾集中处理设施建设，提高处理能力，并按照集中与分散处理相结合的原则，推进厨余垃圾源头就地处理，对厨余垃圾就地处理设施的建设、运行给予指导和经济补助。具体办法由市城市管理、发展改革、财政等部门制定。

餐饮服务单位应当单独收集厨余垃圾，并委托有资质的生活垃圾收集、运输、处理专业服务单位进行集中处理；达到一定规模并具备就地处理条件的，应当按照本市有关规定建设符合标准的厨余垃圾就地处理设施，对厨余垃圾进行就地处理和资源化利用。

禁止使用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养畜禽；禁止生产、销售、使用以厨余废弃食用油脂为原料的食用油；禁止无资质的单位和个人收集、运输厨余垃圾。

第四十八条 新建大型蔬菜果品批发市场、农贸市场、物流配送中心的，建设单位应当按照规划、标准同步配置废弃蔬菜、果品就地处理设施。已建成的大型蔬菜果品批发市场、农贸市场、物流配送中心未配置废弃蔬菜、果品就地处理设施的，建设单位或者经营管理单位应当补建；不具备补建条件的，经营管理单位应当遵守本条例第三十五条的规定，履行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责任。

园林绿化部门应当组织建设处理设施，集中处理园林、公共绿地、公园中废弃的枝叶、花卉。

第四十九条 区人民政府可以建立农村地区生活垃圾收集运输队伍，或者通过公开招标投标等方式委托具备专业技术条件的单位，负责农村地区的生活垃圾分类收集、运输。

农村地区产生的厨余垃圾，应当按照农业废弃物资源化的要求，采用生化处理等技术就地或者集中处理。

农村村民日常生活中产生的灰土，应当选择在远离水源和居住地的适宜地点，采用填坑造地等方式处理。

第五十条 本市建立生活垃圾异地处理经济补偿机制。产生生活垃圾的区跨区域处理生活垃圾的，区人民政府应当根据跨区域处理的生活垃圾量，交纳生活垃圾异地处理经济补偿费用。

第五十一条 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应当遵守下列规定：

- (一) 按照有关规定和技术标准处理生活垃圾；

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 (二) 按照规定处置生活垃圾处理过程中产生的污水、废气、废渣、粉尘等，保证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排放达到国家和本市有关标准；
- (三) 设置化验室或者委托专业化验机构，对生活垃圾、渗沥液等处理过程中常规参数进行检测，并建立检测档案；
- (四) 按照要求建设在线监管系统，对生活垃圾处理设施相关指标进行检测，并将数据传送至生活垃圾管理信息系统；
- (五) 建立生活垃圾处理台账，并按照规定向相关管理部门报送数据、报表以及相关情况；
- (六) 按照规定公开设施污染控制监测指标和处理设施运行数据；
- (七) 配套建设相应的参观、宣传设施，在规定的公众开放日接待社会公众参观、访问；
- (八) 国家和本市的其它规定。

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接收生活垃圾时发现不符合分类标准的，有权要求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改正；拒不改正的，应当向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报告。

第五章 监督管理

第五十二条 本市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生活垃圾管理的综合考核制度，并纳入政府考核指标。

第五十三条 城市管理部门应当加强信息化建设，建立和完善有关生活垃圾排放全过程管理制度，建立生活垃圾投放、收集、运输、处理管理信息系统，提高生活垃圾管理科技化水平。

第五十四条 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生活垃圾分类投放、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的全过程监管，实行联单制度，进行分类计价，实行绩效管理；发现不符合规定的，及时督促改正。

生态环境部门应当定期对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污染物排放情况进行监测，并按照规定发布监测信息。

监督检查过程中需要对生活垃圾处理数量、质量和环境影响情况进行监测的，相关行政管理部门可以委托具有相应资格的第三方机构进行。

第五十五条 本市应当建立健全对厨余垃圾的全程监管和执法联动机制，并按照属地负责的原则纳入网格化管理。

市场监督管理、生态环境、城市管理综合执法等部门应当将厨余垃圾的排放和流向纳入对餐饮服务单位的日常监督管理范围；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加强对收运厨余垃圾车辆的执法检查。

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等有关部门对厨余垃圾就地处理设施建设、运行和环境保护等情况进行监督管理。

第五十六条 城市管理部门应当向社会公布举报和投诉电话、信箱和电子邮件地址，依法处理有关生活垃圾管理方面的举报和投诉。

举报违反生活垃圾管理行为，查证属实的，对举报人给予奖励。具体办法由市城市管理部门制定并向社会公布。

第五十七条 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生活垃圾监督管理和执法工作的协调配合机制，定期通报情况，实现生活垃圾监督管理信息、数据的及时互通和共享。

执法机关依照本条例有权采取以下措施，实施生活垃圾监督管理：

-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 （二）查阅、复制与被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
- （三）对用于违法活动的设施、工具，依法予以查封、扣押；
- （四）为调查有关违法行为，请求公安机关予以协助。

第五十八条 街道办事处和乡镇人民政府应当将生活垃圾管理纳入基层社会治理工作，加强组织协调和指导。

街道办事处和乡镇人民政府可以组织、引导辖区内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将垃圾分类要求纳入居民公约或者村规民约，在居住区设立生活垃圾减量分类指导员，宣传生活垃圾分类知识，指导居民正确开展生活垃圾分类。

街道办事处、乡镇人民政府和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可以通过奖励、表彰、积分等方式，鼓励单位和个人开展生活垃圾减量和分类。

第五十九条 市、区人民政府及其相关部门、街道办事处、乡镇人民政府应当支持和鼓励志愿者，志愿服务组织等各类社会组织开展生活垃圾分类投放的宣传、示范等活动，参与生活垃圾治理。

第六十条 本市实行生活垃圾处理社会监督员制度。

市、区城市管理部门向社会公开选择一定数量的生活垃圾处理社会监督员，参与生活垃圾集中处理设施的监督管理工作。社会监督员中应当有生活垃圾集中处理设施周边的居民代表。

社会监督员有权监督生活垃圾集中处理设施运行，进入相关场所，了解污染控制的措施及实施情况，查阅环境监测数据，并遵守相关安全管理规范。运行管理单位应当予以配合、协助。

第六十一条 支持环境卫生、循环经济、物业服务、旅游旅馆、餐饮烹饪、家政服务、商业零售等相关行业协会制定行业自律规范，开展行业培训，共同参与和推进生活垃圾治理工作。

第六十二条 单位违反本条例受到行政处罚或者行政强制的，执法机关应当将相关信息共享到本市公共信用信息平台。

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三条 本市各级行政主管部门、执法机关及其工作人员不依法或者不正当履行生活垃圾管理职责的，由有权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四条 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一款规定，建设单位未按照标准配套建设生活垃圾分类设施的，由规划和自然资源部门按照城乡规划法律、法规中未按照建设工程规划许可证许可内容进行的违法行为进行处罚。

第六十五条 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第一款规定，超市、商场、集贸市场等商品零售场所使用超薄塑料袋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立即改正，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再次违反规定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第二款规定，餐饮经营者、餐饮配送服务提供者或者旅馆经营单位主动向消费者提供一次性用品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再次违反规定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第六十六条 违反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再生资源回收经营者未分类贮存物品的，由区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再次违反规定的，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七条 单位违反本条例第三十三条规定，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1000元罚款；再次违反规定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个人违反本条例第三十三条规定，由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进行劝阻；对拒不听从劝阻的，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应当向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报告，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给予书面警告；再次违反规定的，处50元以上200元以下罚款。

依据前款规定应当受到处罚的个人，自愿参加生活垃圾分类等社区服务活动的，不予行政处罚。

第六十八条 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违反本条例第三十五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六）项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3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三十五条第一款第（五）项规定，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将生活垃圾交由未经许可或者备案的企业和个人进行处置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第六十九条 违反本条例第三十七条第一款规定，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未办理生活垃圾排放登记或者登记信息虚假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三十七条第二款规定，生活垃圾分类管理责任人未建立生活垃圾管理台账，或者不如实记录责任范围内生活垃圾排放情况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第七十条 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违反本条例第四十四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吊销生活垃圾收集、运输经营许可证。

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违反本条例第四十四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清除，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吊销生活垃圾收集、运输经营许可证。

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违反本条例第四十四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吊销生活垃圾收集、运输经营许可证。

第七十一条 违反本条例第四十五条第一款规定，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未按照要求接收生活垃圾，或者未进行分类处理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吊销生活垃圾处理经营许可证或者渣土消纳场所许可证。

第七十二条 建设工程的建设单位、拆除工程的承担单位违反本条例第四十六条第一款规定处理建筑垃圾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第七十三条 餐饮服务单位违反本条例第四十七条第二款规定收集、处理厨余垃圾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违反本条例第四十七条第三款规定，使用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养畜禽，或者生产、销售、使用以厨余废弃食用油脂为原料的食用油的，由农业农村、市场监督管理等部门依据各自职责依法予以查处；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无资质的单位和个人违反本条例第四十七条第三款规定收集、运输厨余垃圾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暂扣其车辆，没收违法收运的厨余垃圾及其容器，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违反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关于道路通行规定，上道路行驶的车辆，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法予以查处。

第七十四条 违反本条例第五十一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限期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吊销生活垃圾处理经营许可证；由于排放未达到标准，给单位和个人造成损失的，应当依法进行赔偿。

违反本条例第五十一条第一款第（三）项、第（四）项规定，未按照要求进行检测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限期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未将数据30

传送至城市管理部门的生活垃圾处理设施运行监督管理信息系统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五十一条第一款第（五）项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限期改正，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吊销生活垃圾处理经营许可证。

违反本条例第五十一条第一款第（六）项、第（七）项规定，生活垃圾集中转运、处理设施的运行管理单位未按照要求公开设施污染控制监测指标和处理设施运行数据或者对外开放设施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处2000元罚款；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第七十五条 违反本条例的行为，《北京市市容环境卫生条例》已有处理规定，本条例未作规定的，由城市管理综合执法部门依据《北京市市容环境卫生条例》的规定予以处理。

第七十六条 违反本条例，妨碍、阻挠生活垃圾管理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或者围堵生活垃圾收集、处理设施和运输车辆，或者阻碍生活垃圾处理设施建设和正常运行，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处理。

第七章 附则

第七十七条 本条例中有关用语的含义：

- (一) 建设工程配套生活垃圾分类设施，包括垃圾分类投放站（间）、垃圾分类收集房、密闭式垃圾分类清洁站等设施设备。
- (二) 厨余垃圾，是指家庭中产生的菜帮菜叶、瓜果皮核、剩菜剩饭、废弃食物等易腐性垃圾；从事餐饮经营活动的企业和机关、部队、学校、企业事业等单位集体食堂在食品加工、饮食服务、单位供餐等活动中产生的食物残渣、食品加工废料和废弃食用油脂；以及农贸市场、农产品批发市场产生的蔬菜瓜果垃圾、腐肉、肉碎骨、水产品、畜禽内脏等。其中，废弃食用油脂是指不可再食用的动植物油脂和油水混合物。
- (三) 可回收物，是指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已经失去原有全部或者部分使用价值，回收后经过再加工可以成为生产原料或者经过整理可以再利用的物品，主要包括废纸类、塑料类、玻璃类、金属类、电子废弃物类、织物类等。
- (四) 有害垃圾，是指生活垃圾中的有毒有害物质，主要包括废电池（镉镍电池、氧化汞电池、铅蓄电池等），废荧光灯管（日光灯管、节能灯等），废温度计，废血压计，废药品及其包装物，废油漆、溶剂及其包装物，废杀虫剂、消毒剂及其包装物，废胶片及废相纸等。
- (五) 其他垃圾，是指除厨余垃圾、可回收物、有害垃圾之外的生活垃圾，以及难以辨识类别的生活垃圾。
- (六) 建筑垃圾，是指建设单位、施工单位新建、改建、扩建、拆除各类建筑物、构筑物和城市道路、公路施工等以及居民装饰装修房屋过程中所产生的弃土、弃料以及其他废弃物，视为生活垃圾进行管理。
- (七) 餐饮服务单位，是指餐饮经营者、餐饮配送服务提供者和机关、部队、学校、企业事业等单位的集体食堂。
- (八) 生活垃圾收集运输专业服务单位，包括取得从事生活垃圾经营性收集、运输许可的企业和承担环境卫生作业的事业单位。

第七十八条 本条例自2012年3月1日起施行。

9. 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上海市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于2019年1月31日通过
(2019-01-31 发布 / 2019-07-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目 录

第一章 总则	321
第二章 规划与建设	323
第三章 促进源头减量	324
第四章 分类投放	325
第五章 分类收集、运输、处置	326
第六章 资源化利用	328
第七章 社会参与	328
第八章 监督管理	330
第九章 法律责任	331
第十章 附则	332

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本市生活垃圾管理，改善人居环境，促进城市精细化管理，维护生态安全，保障经济社会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结合本市实际，制定本条例。

第二条 本市行政区域内生活垃圾的源头减量、投放、收集、运输、处置、资源化利用及其监督管理等活动，适用本条例。

本条例所称的生活垃圾，是指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固体废弃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生活垃圾的固体废弃物。

第三条 本市以实现生活垃圾减量化、资源化、无害化为目标，建立健全生活垃圾分类投放、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置的全程分类体系，积极推进生活垃圾源头减量和资源循环利用。

本市生活垃圾管理工作，遵循政府推动、全民参与、市场运作、城乡统筹、系统推进、循序渐进的原则。

第四条 本市生活垃圾按照以下标准分类：

- (一) 可回收物，是指废纸张、废塑料、废玻璃制品、废金属、废织物等适宜回收、可循环利用的生活废弃物；
- (二) 有害垃圾，是指废电池、废灯管、废药品、废油漆及其容器等对人体健康或者自然环境造成直接或者潜在危害的生活废弃物；
- (三) 湿垃圾，即易腐垃圾，是指食材废料、剩菜剩饭、过期食品、瓜皮果核、花卉绿植、中药药渣等易腐的生物质生活废弃物；
- (四) 干垃圾，即其它垃圾，是指除可回收物、有害垃圾、湿垃圾以外的其它生活废弃物。

生活垃圾的具体分类标准，可以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生活垃圾特性和处置利用需要予以调整。

第五条 市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市生活垃圾管理工作的领导，建立生活垃圾管理工作综

合协调机制，统筹协调生活垃圾管理工作。

市绿化市容部门是本市生活垃圾管理的主管部门，负责本市生活垃圾管理工作的组织、协调、指导和监督。

市发展改革部门负责制定促进生活垃圾源头减量、资源化利用以及无害化处置的政策，协调生产者责任延伸制度的落实，研究完善生活垃圾处理收费机制。

市房屋管理部门负责督促物业服务企业履行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义务。

市生态环境部门负责生活垃圾处理污染防治工作的指导和监督。

市城管执法部门负责对查处违反生活垃圾分类管理规定行为的指导和监督。

本市住房城乡建设、商务、财政、规划、经济信息化、教育、民政、农业农村、科技、卫生健康、文化旅游、市场监管、邮政、机关事务管理等部门按照各自职责，协同实施本条例。

第六条 区人民政府负责所辖区域内生活垃圾管理工作，并建立相应的综合协调机制。

区绿化市容部门负责所辖区域内生活垃圾管理工作的具体组织、协调、指导和监督。区发展改革、房屋管理、生态环境、城管执法等部门按照各自职责，协同推进所辖区域内生活垃圾管理工作。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负责所辖区域内生活垃圾分类投放、分类驳运以及相关的分类收集等日常管理工作的具体落实。

第七条 单位和个人应当积极参与绿色生活行动，减少生活垃圾产生，履行生活垃圾分类投放义务，并承担生活垃圾产生者责任。

本市按照谁产生谁付费的原则，逐步建立计量收费、分类计价的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具体办法由市人民政府另行制定。

第八条 本市实行区域生活垃圾处置总量控制制度。市人民政府根据本市生活垃圾全程分类管理要求，结合各区人口规模以及经济社会发展水平，制定各区生活垃圾处置总量控制计划。各区人民政府应当按照本区生活垃圾处置总量控制计划，落实生活垃圾减量和资源化利用措施。

第九条 本市各级人民政府及其相关部门应当采取有效措施，加强生活垃圾源头减量、全程分类管理、资源化利用的宣传教育，提高市民生活垃圾分类意识，普及生活垃圾分类知识，推动形成全社会共同参与的良好氛围。

第十条 本市支持政府部门、企事业单位、社会团体运用科技手段，逐步提高生活垃圾分类投放、收集、运输、处置以及管理运行的智能化水平。

本市支持生活垃圾源头减量、分类投放、就地处置、资源化利用等方面的新技术、新工艺、新材料、新装备的研发和应用。

第二章 规划与建设

第十一条 市、区人民政府编制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应当将推进生活垃圾源头减量、全程分类、资源化利用、无害化处置作为重要内容。

本市有关部门组织编制的城乡规划、土地利用规划，应当统筹考虑减少生活垃圾产生量、促进生活垃圾资源化利用和无害化处置。

第十二条 市绿化市容部门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组织编制本市生活垃圾管理专项规划。生活垃圾管理专项规划应当包括生活垃圾管理的指导原则和目标任务，生活垃圾转运、处置、回收利用设施的布局，规划实施的保障措施等内容。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会同规划部门组织编制生活垃圾转运、处置、回收利用设施规划（以下简称生活垃圾处理设施专项规划）。

第十三条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根据生活垃圾处理设施专项规划，制定生活垃圾处理设施年度建设计划并组织实施。

市、区发展改革、规划等部门应当将生活垃圾处理设施年度建设计划所需资金和土地，分别纳入年度投资计划和年度土地供应计划。

经确定的生活垃圾转运、处置、回收利用设施用地，未经法定程序，不得改变用途。

第十四条 新建、改建或者扩建住宅、公共建筑、公共设施等建设工程，应当按照国家和本市标准配套建设生活垃圾收集设施。配套生活垃圾收集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步设计、同步建设、同步验收、同步使用。

已有的生活垃圾收集设施不符合生活垃圾分类标准的，应当予以改造。

第十五条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按照规定推进可回收物回收服务点、中转站和集散场建设。

鼓励社会资本参与本市可回收物收集、运输设施建设。

第三章 促进源头减量

第十六条 市、区人民政府应当统筹环境保护、资源节约与生产生活安全等要求，建立涵盖生产、流通、消费等领域的各类生活垃圾源头减量工作机制。

第十七条 企业应当遵守国家有关清洁生产的规定，优先选择易回收、易拆解、易降解、无毒无害或者低毒低害的材料和设计方案，生产废弃物产生量少、可循环利用的产品。

第十八条 市、区市场监管部门应当按照国家和本市有关法律、法规的规定，做好产品包装物减量的监督管理工作。

企业对产品的包装应当合理，包装的材质、结构和成本应当与内装产品相适应，减少包装废弃物的产生。

第十九条 市市场监管、邮政部门应当制定本市快递业绿色包装标准，促进快递包装物的减量化和循环使用。

快递企业在本市开展经营活动的，应当使用电子运单和环保箱（袋）、环保胶带等环保包装。鼓励寄件人使用可降解、可循环使用的环保包装。

电子商务企业在本市开展经营活动的，应当提供多种规格封装袋、可循环使用包装袋等绿色包装选项，并运用计价优惠等机制，引导消费者使用环保包装。

第二十条 市农业农村、商务等部门应当加强对果蔬生产基地、农贸市场、标准化菜场、超市的管理，积极推行净菜上市。

新建农贸市场、标准化菜场的，应当按照标准同步配置湿垃圾就地处理设施。已建成的农贸市场、标准化菜场湿垃圾产生量达到一定规模的，应当按照标准配置湿垃圾就地处理设施。鼓励产生湿垃圾的其他单位配置湿垃圾就地处理设施。

市绿化市容部门应当会同市市场监管、生态环境、商务等部门组织编制湿垃圾就地处理设施配置标准。

第二十一条 党政机关、事业单位应当带头使用有利于保护环境的产品、设备和设施，提高再生纸的使用比例，减少使用一次性办公用品，内部办公场所不得使用一次性杯具。

政府采购应当按照规定，优先采购可循环利用的产品。

鼓励企业、社会团体节约使用和重复利用办公用品，减少使用一次性杯具。

第二十二条 鼓励单位和个人使用可循环利用的产品，通过线上、线下交易等方式，促进闲置物品再使用。

餐饮服务提供者应当在餐饮服务场所设置节俭消费标识，提示消费者适量点餐。餐饮服务提供者和餐饮配送服务提供者不得主动向消费者提供一次性筷子、调羹等餐具。

旅馆经营单位不得主动向消费者提供客房一次性日用品。

本条第二款、第三款所指的一次性物品，应当有利于保护环境。

第四章 分类投放

第二十三条 市绿化市容部门应当会同市商务、生态环境等部门制定生活垃圾具体分类目录，并向社会公布。

市绿化市容部门应当提供多种形式的便捷查询服务，指导单位和个人准确分类投放生活垃圾。

第二十四条 产生生活垃圾的单位和个人是生活垃圾分类投放的责任主体，应当将生活垃圾分别投放至相应的收集容器。其中，可回收物还可以交售至可回收物回收服务点或者其他可回收物回收经营者。

本市逐步推行生活垃圾定时定点分类投放制度。

第二十五条 本市实行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以下简称“管理责任人”）制度，管理责任人按照下列规定确定：

- （一）党政机关、企事业单位、社会团体等单位的办公和生产经营场所，由业主委托物业服务企业实施物业管理的，物业服务企业为管理责任人；由业主自行管理的，业主为管理责任人。
- （二）住宅小区由业主委托物业服务企业实施物业管理的，物业服务企业为管理责任人。农村居民点，村民委员会为管理责任人。
- （三）道路、广场、公园、公共绿地等公共场所，管理部门或者管理部门委托的服务单位为管理责任人；机场、客运站、轨道交通站点以及旅游、文化、体育、娱乐、商业等公共场所，经营管理单位或者经营管理单位委托的物业服务企业为管理责任人。

按照前款规定无法确定管理责任人的，由所在地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确定管理责任人。

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应当对所辖区域内管理责任人履行管理责任的情况进行监督。

第二十六条 管理责任人应当按照下列规定设置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

- （一）党政机关、企事业单位、社会团体等单位的办公或生产经营场所应当设置可回收物、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四类收集容器。

- (二) 住宅小区和农村居民点应当在生活垃圾收集运输交付点设置可回收物、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四类收集容器；在其他公共区域设置收集容器的，湿垃圾、干垃圾两类收集容器应当成组设置。
- (三) 公共场所应当设置可回收物、干垃圾两类收集容器；但湿垃圾产生量较多的公共场所，应当增加设置湿垃圾收集容器。

市绿化市容部门应当制定分类收集容器设置规范，并向社会公布。收集容器的颜色、图文标识应当统一规范、清晰醒目、易于辨识。

鼓励管理责任人根据可回收物、有害垃圾的种类和处置利用需要，细化设置收集容器。

第二十七条 管理责任人应当对投放人的分类投放行为进行指导，发现投放人不按分类标准投放的，应当要求投放人改正。投放人拒不改正的，管理责任人可以向所在地的乡镇人民政府或者街道办事处举报。

管理责任人应当将需要驳运的生活垃圾，分类驳运至生活垃圾收集运输交付点。

管理责任人按照规定履行管理职责的，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

第五章 分类收集、运输、处置

第二十八条 从事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经营性收集、运输的单位和湿垃圾、干垃圾经营性处置的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取得生活垃圾经营服务许可证。从事有害垃圾处置活动的单位应当依法取得危险废物经营许可证。

市或者区绿化市容部门以及乡镇应当与通过政府采购等方式确定的可回收物、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的收集、运输单位（以下简称收集、运输单位）以及湿垃圾、干垃圾的处置单位，签订收集、运输服务协议以及处置服务协议。

第二十九条 收集、运输单位应当按照下列规定，对生活垃圾进行分类收集、运输：

- (一) 对可回收物、有害垃圾实行定期或者预约收集、运输；
- (二) 对湿垃圾实行每日定时收集、运输；
- (三) 对干垃圾实行定期收集、运输。

收集、运输单位发现所交的生活垃圾不符合分类标准的，应当要求改正；拒不改正的，收集、运输单位可以拒绝接收，同时应当向所在地乡镇人民政府或者街道办事处报告，由乡镇人民政府或者街道办事处及时协调处理。

管理责任人发现收集、运输单位违反分类收集、运输要求的，可以向乡镇人民政府或者街道办事处举报。

第三十条 收集、运输单位应当执行行业规范 and 操作规范，并遵守下列规定：

- (一) 使用专用车辆、船舶分类运输生活垃圾；专用车辆、船舶应当清晰标示所运输生活垃圾的类别，实行密闭运输，并安装在线监测系统。
- (二) 不得将已分类投放的生活垃圾混合收集、运输，不得将危险废物、工业固体废物、建筑垃圾等混入生活垃圾。
- (三) 按照要求将需要转运的生活垃圾运输至符合条件的转运场所。

第三十一条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完善可回收物回收体系建设，加强对可回收物回收签约单位以及其他回收经营者回收活动的指导、管理和监督。市绿化市容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编制并发布可回收物回收指导目录，制定低价值可回收物回收扶持政策。

鼓励采用“互联网+回收”、智能回收等方式，增强可回收物投放、交售的便捷性。

其他可回收物回收经营者在收集、运输可回收物过程中，应当采取覆盖、围挡、保洁等有效措施，保持环境卫生整洁，不得造成环境污染。

第三十二条 转运设施的设置应当符合环保要求和技术规范，并按照规定办理环保等有关审批手续。

生活垃圾转运产生的渗滤液，应当按照国家和本市水污染物排放标准处理后排放。

第三十三条 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处置单位（以下简称处置单位）应当按照分类标准接收生活垃圾，发现所交的生活垃圾不符合分类要求的，应当要求改正；拒不改正的，可以拒绝接收，同时应当向市或区绿化市容部门报告，由市或区绿化市容部门及时协调处理。

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应当按照下列方式进行分类利用处置：

- (一) 有害垃圾采用高温处理、化学分解等方式进行无害化处置；
- (二) 湿垃圾采用生化处理、产沼、堆肥等方式进行资源化利用或者无害化处置；
- (三) 干垃圾采用焚烧等方式进行无害化处置。

第三十四条 处置单位应当执行行业规范 and 操作规范，并遵守下列规定：

- (一) 保持生活垃圾处置设施、设备正常运行，对接收的生活垃圾及时进行处置；
- (二) 按照技术标准分类处置生活垃圾，不得将已分类的生活垃圾混合处置；
- (三) 对废水、废气、废渣、噪声以及周边土壤污染等进行处理，并按照规定进行环境修复；
- (四) 定期向绿化市容部门报送接收、处置生活垃圾的来源、数量、类别等信息。

第六章 资源化利用

第三十五条 市发展改革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循环经济发展扶持政策，对符合本市城市功能需要、符合相关产业发展导向的可回收物回收利用项目予以支持，并推进循环经济产业园建设。

第三十六条 可回收物回收经营者应当按照国家和本市有关要求，将可回收物交由可回收物利用企业进行资源化利用。

市商务、经济信息化、绿化市容部门应当对可回收物资源化利用活动进行指导、协调和监督。

第三十七条 对列入国家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生产者、销售者应当按照规定进行回收和处理。鼓励生产者、销售者通过自主回收、联合回收或者委托回收等模式，提高废弃产品和包装物的回收再利用率。

市邮政部门应当指导在本市开展经营活动的快递企业建立健全多方协同的包装物回收再利用体系。

第三十八条 市绿化市容、农业农村部门应当会同市市场监管部门研究制定本市湿垃圾资源化利用标准，鼓励和支持开展湿垃圾资源化利用团体标准、企业标准的研究制定和推广实施工作。

本市相关政府部门应当支持在公共绿地、公益林的土壤改良中优先使用湿垃圾资源化利用产品，支持符合标准的湿垃圾资源化利用产品在农业生产领域的推广应用。

农村地区应当就地就近对湿垃圾进行资源化利用；鼓励党政机关、企事业单位、社会团体、住宅小区将湿垃圾处理用于单位绿化、居住区绿化、家庭园艺。

第三十九条 干垃圾焚烧产生的热能应当通过发电、供热等方式进行利用。在符合环保要求的情况下，鼓励对炉渣、飞灰等进行综合利用，鼓励具备条件的企业协同处置干垃圾。

第七章 社会参与

第四十条 市、区人民政府及其相关部门和工会、共青团、妇联等组织应当通过多种方式，广泛开展社会动员，推动全社会共同参与生活垃圾管理工作。

绿化市容、生态环境等部门应当设立生活垃圾科普教育基地，面向社会普及生活垃圾分类知识。本市大型生活垃圾处理设施运营单位应当设立公众开放日，接待社会公众参观。

教育部门应当将生活垃圾分类知识纳入本市幼儿园、中小学校、高等院校教育内容，组织开展生活垃圾分类教育和实践等活动。

新闻媒体应当持续开展生活垃圾管理法规和生活垃圾分类知识的公益宣传，对违反生活垃圾管理的行为进行舆论监督。

第四十一条 本市建立健全以居民区、村党组织为领导核心，居民委员会或者村民委员会、业主委员会、物业服务企业、业主等共同参与的工作机制，共同推进生活垃圾管理工作。

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应当配合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做好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的组织、动员、宣传、指导工作。倡导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将生活垃圾分类要求纳入居民公约和村规民约。

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应当将生活垃圾管理纳入基层社会治理工作，加强组织协调和指导。

第四十二条 鼓励通过积分兑换等多种方式，促进单位和个人形成生活垃圾分类投放的良好行为习惯。

鼓励志愿服务组织和志愿者开展生活垃圾分类投放的宣传、示范等活动。

市、区人民政府及其相关部门，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可以通过购买服务方式，支持各类社会组织参与生活垃圾管理活动。

第四十三条 本市循环经济、市容环卫、物业管理、旅游旅馆、餐饮烹饪、家政服务、商业零售等领域的相关行业协会应当制定行业自律规范，开展行业培训和评价，共同推进生活垃圾管理工作。

第四十四条 鼓励和引导各类市场主体参与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收集、运输、处置以及资源化利用等活动。

第四十五条 本市文明城区、文明社区、文明小区、文明村镇、文明单位、文明校园等群众性精神文明创建活动和卫生单位、卫生社区（村）等卫生创建活动，应当将生活垃圾分类管理相关情况纳入评选标准。

第四十六条 本市实行生活垃圾管理社会监督员制度。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向社会公开选聘生活垃圾管理社会监督员，参与生活垃圾全过程管理的监督工作。

任何单位和个人有权将违反生活垃圾管理规定的行为通过市民热线或者直接向相关部门投诉和举报，有关部门应当按照规定处理。

第四十七条 对在生活垃圾管理工作中做出突出贡献和优异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和本市评比表彰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八章 监督管理

第四十八条 本市建立生活垃圾源头减量、全程分类、资源化利用、无害化处置的监督检查制度，有关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开检查情况和处理结果，并接受社会监督。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对本市生活垃圾分类情况进行定期评估，评估报告应当向社会公布。

第四十九条 市、区生态环境部门应当按照规定，对生活垃圾处理过程中产生的废水、废气、废渣、噪声等污染物排放以及周边土壤污染情况进行监督。

第五十条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会同商务、生态环境、市场监管、城管执法等部门建立生活垃圾全过程管理信息系统。

生活垃圾分类收集、运输活动应当纳入城市网格化管理。

第五十一条 市、区绿化市容部门应当编制生活垃圾处理应急预案，建立生活垃圾收集、运输和处置应急机制。

发生突发性事件造成生活垃圾无法正常收集、运输或者处置的，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或者处置单位应当立即向市或者区绿化市容部门报告，由市或者区绿化市容部门按照应急预案及时组织处理。

第五十二条 本市实行生活垃圾跨区域处置环境补偿制度，生活垃圾处置导出区应当向生活垃圾处置导入区支付环境补偿资金。生活垃圾跨区域处置环境补偿的具体办法，由市人民政府制定。

第五十三条 市、区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本市生活垃圾管理的综合考核制度，将生活垃圾处置总量控制要求作为综合考核的重要内容。

生活垃圾管理综合考核结果应当纳入市、区人民政府对所属部门、下一级人民政府的绩效考核内容。

第五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有关部门应当根据《上海市社会信用条例》相关规定，将单位和个人违反生活垃圾管理规定的信息归集到本市公共信用信息平台，并依法对失信主体采取惩戒措施：

- (一) 不履行生活垃圾分类义务且拒不改正，造成严重不良影响的；
- (二) 阻碍执法部门履行职责，造成严重后果的；
- (三) 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市市场监管部门应当依照法律、法规规定，将绿化市容部门提交的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和处置单位的评议结果，纳入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市房屋管理部门应当将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城管执法部门提交的物业服务企业履行分类投放管理责任情况，纳入物业服务企业信用管理体系。

第九章 法律责任

第五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法律、行政法规有处理规定的，从其规定。

第五十六条 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二款规定，农贸市场、标准化菜场未按照标准配置湿垃圾就地处理设施的，由市场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二款规定，餐饮服务提供者或者餐饮配送服务提供者主动向消费者提供一次性筷子、调羹等餐具的，由市场监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旅馆经营单位主动向消费者提供客房一次性日用品的，由文化旅游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第五十七条 单位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一款规定，未将生活垃圾分别投放至相应收集容器的，由城管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拒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个人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一款规定，将有害垃圾与可回收物、湿垃圾、干垃圾混合投放，或者将湿垃圾与可回收物、干垃圾混合投放的，由城管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拒不改正的，处五十元以上二百元以下罚款。

第五十八条 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第一款规定，管理责任人未按照要求设置收集容器、设施的，由城管执法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第二十七条第二款规定，管理责任人未分类驳运的，由城管执法部门责令立即改正；拒不改正的，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第五十九条 违反本条例第二十八条第一款规定，擅自从事有害垃圾、湿垃圾、干垃圾经营性收集、运输，以及湿垃圾、干垃圾经营性处置活动的，由城管执法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并处三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条 收集、运输单位不遵守相关规定的，由城管执法部门按照下列规定处罚：

- (一) 违反本条例第三十条第一项规定，未使用专用车辆、船舶，未清晰标示所运输生活垃圾的类别、未实行密闭运输或者未安装在线监测系统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其生活垃圾经营服务许可证。
- (二) 违反本条例第三十条第二项规定，将已分类投放的生活垃圾混合收集、运输，或者将危险废物、工业固体废物、建筑垃圾等混入生活垃圾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其生活垃圾经营服务许可证。
- (三) 违反本条例第三十条第三项规定，未按照要求将生活垃圾运输至符合条件的转运场所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一条 处置单位不遵守相关规定的，由城管执法部门按照下列规定处罚：

- (一) 违反本条例第三十四条第一项规定，未保持生活垃圾处置设施、设备正常运行，影响生活垃圾及时处置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 (二) 违反本条例第三十四条第二项规定，未按照要求分类处置生活垃圾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其生活垃圾经营服务许可证。

第六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各级人民政府、有关行政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所在单位或者其上级主管部门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 (一) 未按照规定履行生活垃圾源头减量以及分类投放、收集、运输、处置、利用的监督管理职责的；
- (二) 未按照要求落实生活垃圾处理设施建设的；
- (三) 接到相关投诉、举报，未依法调查处理的；
- (四) 其他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

第十章 附则

第六十三条 以下生活垃圾的投放、收集、运输、处置按下列规定执行：

- (一) 餐饮服务、单位供餐等活动中产生的餐厨垃圾和餐厨废弃油脂，应当按本市相关规定单独投放至餐厨垃圾和餐厨废弃油脂收集容器，经分类收集、运输后实行资源化利用。

- (二) 废旧家具等体积大、整体性强的大件垃圾，可以预约可回收物回收经营者进行回收，或者投放至管理责任人指定的场所，经分类收集、运输并拆分再处理后，实行资源化利用或者无害化处置。
- (三) 日常生活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废弃的电器电子产品，体积较小的应当投入可回收物收集容器，体积较大的应当按照大件垃圾的管理要求予以回收，并按照国家有关废弃电器电子产品的规定进行处置。

第六十四条 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的投放、收集、运输和处置，按照国家相关规定处理。

建设工程新建、改建、扩建、修缮或者拆除中产生的弃料和其他废弃物，以及房屋装饰装修过程中产生的弃料和其他废弃物，其投放、收集、运输和处置，按照国家和本市建筑垃圾相关规定处理。

第六十五条 本条例自2019年7月1日起施行。

10. 天津市生活垃圾管理条例

天津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发布
(2020-07-29 发布 / 2020-12-0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天津市生活垃圾管理条例

目 录

第一章 总则	339
第二章 规划与建设	340
第三章 源头减量	341
第四章 分类投放	342
第五章 分类收集、运输与处理	344
第六章 资源化利用	345
第七章 社会参与	346
第八章 监督管理	347
第九章 法律责任	348
第十章 附则	350

天津市生活垃圾管理条例

天津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公告（第四十九号）《天津市生活垃圾管理条例》已由天津市第十七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于2020年7月29日通过，现予公布，自2020年12月1日起施行。

天津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20年7月29日

天津市生活垃圾管理条例

（2020年7月29日天津市第十七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通过）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生活垃圾管理，改善人居环境，保障公众健康，促进生态文明建设和经济社会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等法律、行政法规，结合本市实际情况，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适用于本市行政区域内生活垃圾的源头减量、投放、收集、运输、处理、资源化利用以及监督管理等活动。

本条例所称生活垃圾，是指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生活垃圾的固体废物。

第三条 本市生活垃圾管理坚持减量化、资源化和无害化的原则，按照政府推动、全民参与、城乡统筹、因地制宜、简便易行的要求，建立健全生活垃圾分类投放、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的全程分类管理系统，实现生活垃圾分类制度全覆盖。

第四条 市和区人民政府应当加强对生活垃圾管理工作的领导，将生活垃圾管理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确定并落实生活垃圾管理目标，制定促进生活垃圾减量化、资源化、无害化的政策和措施，保障生活垃圾管理的资金投入，建立健全生活垃圾分类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生活垃圾管理工作。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按照国家和本市有关规定，负责本辖区内生活垃圾日常管理工作的具体落实。

第五条 市城市管理部门是本市生活垃圾管理的行政主管部门，负责全市生活垃圾管理工作的组织、协调、指导和监督，对生活垃圾分类投放、收集、运输、处理实施监督管理，推动生活垃圾再生利用和无害化处理工作。

区城市管理部门负责本辖区内生活垃圾管理工作。

发展改革、生态环境、规划资源、住房城乡建设、商务、农业农村、财政、市场监管、文化和旅游、邮政、机关事务管理等部门按照各自职责，做好生活垃圾管理相关工作。

第六条 单位和个人应当增强生态环境保护意识，自觉遵守国家和本市生活垃圾管理规定，依法履行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义务，承担生活垃圾产生者责任。

产生生活垃圾的单位、家庭和个人应当按照规定缴纳生活垃圾处理费。

生活垃圾处理费应当专项用于生活垃圾的收集、运输、处理等。具体办法由市人民政府制定，并向社会公布。

第七条 鼓励和支持开展生活垃圾分类、处理和资源化利用的科学研究、技术开发、先进技术推广应用，加强生活垃圾管理工作的科技支撑。

第八条 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有关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加强生活垃圾源头减量、全程分类管理、资源化利用、无害化处理的宣传教育，提高单位和个人的生活垃圾分类意识，普及生活垃圾分类知识，推动形成全社会共同参与的良好氛围。

新闻媒体应当开展生活垃圾管理法律、法规和生活垃圾源头减量、分类知识的公益宣传。

第九条 本市对在生活垃圾管理工作以及相关综合利用活动中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和本市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章 规划与建设

第十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市发展改革、规划资源、商务等部门编制生活垃圾治理规划，报市人民政府批准后实施。涉及设施规划布局和建设用地的，应当纳入国土空间规划。

按照国土空间规划等确定的生活垃圾收集、贮存、运输、处理设施建设用地，未经法定程序不得改变用途。

第十一条 城市管理部门应当根据生活垃圾治理规划，制定生活垃圾收集、贮存、运输、处理等设施建设计划并组织实施。

发展改革、规划资源等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将生活垃圾收集、贮存、运输、处理等设施建设所需资金和土地，分别纳入年度投资计划和年度土地供应计划。

本市鼓励社会资本参与生活垃圾收集、贮存、运输、处理设施的建设和运营。

第十二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市商务、规划资源、住房城乡建设等部门，制定完善生活垃圾收集、贮存、运输、处理的设施、场所建设、运行规范。规划资源部门应当将建设规范的有关内容，纳入建设项目公共服务设施配套的规划设置要求。

第十三条 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应当按照国家和本市相关标准规范，配套建设生活垃圾分类收集设施。配套生活垃圾分类收集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步设计、同步施工、同步验收、同步交付使用，设施建设费用纳入建设工程投资；建设工程分期建设的，配套生活垃圾分类收集设施应当与本期工程同时交付使用。

产权人、经营管理者或者管理单位，对不符合分类要求的已有生活垃圾收集设施，应当进行改造或者配备。其中，住宅小区和农村其他地区生活垃圾收集设施的改造或者配备，由区人民政府组织实施。

第十四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确有必要关闭、闲置或者拆除的，应当经所在地的区城市管理部门商区生态环境部门同意后核准，并采取措施，防止污染环境。

第三章 源头减量

第十五条 各级人民政府应当在保障生产生活安全和有利于节约资源、保护环境的前提下，建立涵盖生产、流通、消费等领域的生活垃圾源头减量工作机制，减少生活垃圾的产生。

第十六条 生产经营者应当遵守限制商品过度包装的强制性标准。

电子商务、邮政、快递、外卖等企业在本市开展经营活动的，应当优先采用可重复使用、易回收利用的包装物，优化物品包装，减少包装物的使用，并采取措施积极回收利用包装物。

鼓励和引导消费者使用绿色包装和减量包装。

第十七条 本市禁止生产和销售超薄塑料袋、一次性发泡塑料餐具、一次性塑料棉签等国家规定禁止生产和销售的一次性塑料制品，按照国家有关规定禁止或者限制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

商品零售场所开办单位、电子商务平台企业和快递企业、外卖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商务、邮政等部门报告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回收情况。商务、邮政等部门应当对相关企业使用、回收一次性塑料制品加强监督和指导。

鼓励和引导减少使用、积极回收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推广应用可循环、易回收、可降解的替代产品。

第十八条 机关、事业单位、国有企业以及使用财政资金的其他组织应当实行绿色办公，优先采购和使用有利于保护环境的产品、设备和设施，提高再生纸的使用比例，减少使用一次性办公用品，内部办公场所不得使用一次性杯具。

鼓励其他企业、社会组织节约使用和重复利用办公用品，减少使用一次性用品。

第十九条 鼓励单位和个人购买、使用综合利用产品和可重复利用产品；通过线上、线下交易等方式，促进闲置物品再使用。

餐饮经营者应当在餐饮服务场所设置节俭消费标识，提示消费者适量点餐；不得主动向消费者提供一次性餐具。

旅游、住宿经营者不得主动向消费者提供客房一次性日用品。

第二十条 本市采取措施在农贸市场、农产品批发市场、菜市场、超市等场所，组织净菜上市，减少生活垃圾的产生量。具体办法由市商务部门会同市农业农村部门制定。

第四章 分类投放

第二十一条 本市生活垃圾分为以下四类：

- (一) 厨余垃圾，是指易腐烂的、含有机质的生活垃圾，包括居民家庭日常生活过程中产生的家庭厨余垃圾，相关企业和公共机构在食品加工、饮食服务、单位供餐等活动中产生的餐厨垃圾，以及农贸市场、农产品批发市场、菜市场产生的其他厨余垃圾；
- (二) 可回收物，是指适宜回收利用的生活垃圾，包括纸类、塑料、金属、玻璃、织物等；
- (三) 有害垃圾，是指对人体健康或者自然环境造成直接或者潜在危害的生活垃圾，包括废灯管、废电池、废药品、废温度计、废杀虫剂和消毒剂、废油漆及其包装物等；
- (四) 其他垃圾，是指除厨余垃圾、可回收物和有害垃圾以外的生活垃圾。

第二十二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市商务、生态环境等部门制定生活垃圾具体分类指导目录，并向社会公布。

城市管理部门应当提供多种形式的便捷查询服务，指导单位和个人准确分类投放生活垃圾。

第二十三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制定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设置规范，明确各类场所和区域生活垃圾分类收集容器设置、使用、标识等要求，并向社会公布。

第二十四条 产生生活垃圾的单位和个人应当履行生活垃圾分类投放义务，将生活垃圾按照厨余垃圾、可回收物、有害垃圾、其他垃圾的分类标准分别投放至相应的收集容器，不得随意倾倒、抛撒、堆放或者焚烧。其中，可回收物还可以交售至回收网点或者其他回收经营者。

第二十五条 本市实行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制度。管理责任人按照下列规定确定：

- (一) 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以及其他组织的办公和生产经营场所，本单位为管理责任人；
- (二) 实行物业管理的住宅小区，物业服务企业为管理责任人；
- (三) 未实行物业管理的住宅小区，属于城市居住区的，居民委员会为管理责任人；属于农村居住区的，村民委员会为管理责任人；
- (四) 道路、广场、公园、公共绿地、公共水域等公共场所，管理单位或者其委托的单位为管理责任人；
- (五) 机场、火车站、客运站、轨道交通站点、港口、码头、船舶以及旅游、文化、体育、娱乐、商业等公共场所，经营管理单位为管理责任人；
- (六) 建设工地的施工现场，施工单位为管理责任人。

按照前款规定不能确定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的，由所在地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确定管理责任人。

第二十六条 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应当履行下列管理责任：

- (一) 建立生活垃圾分类日常管理制度；
- (二) 按照规定设置生活垃圾分类收集点位，配备收集容器并保持正常使用，收集容器出现破旧、污损或者数量不足的，应当及时维修、更换、清洗或者配备；
- (三) 开展生活垃圾分类知识宣传，引导、监督单位和个人分类投放生活垃圾，对不符合分类投放要求的行为予以劝告、制止；对仍不按照规定分类投放的，应当向区城市管理部门报告；
- (四) 将分类投放的生活垃圾交由符合规定的单位分类收集、运输、处理，发现收集、运输、处理单位违反分类收集、运输、处理要求的，应当向区城市管理部门报告。

第五章 分类收集、运输与处理

第二十七条 城市管理部门应当组织对生活垃圾进行分类收集、运输、处理，可以通过招标等方式选择具备条件的单位从事生活垃圾的分类收集、运输、处理。

第二十八条 从事生活垃圾经营性收集、运输、处理的企业，应当按照规定取得生活垃圾经营性服务许可证。国家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二十九条 可回收物、有害垃圾应当定期、定点收集，厨余垃圾和其他垃圾应当每天定时、定点收集并日产日清。

有害垃圾从生活垃圾中分类收集后，其运输、利用、处理，按照危险废物进行管理。

有关部门和单位应当保障生活垃圾收集、运输车辆作业通道畅通。

第三十条 从事生活垃圾收集、运输的单位应当遵守下列规定：

- (一) 按时分类收集生活垃圾并分类运输至规定的转运站或者处理场所，不得将已分类投放的生活垃圾混合收集、混合运输，不得将危险废物、工业固体废物、建筑垃圾、绿化垃圾等混入生活垃圾；
- (二) 配备符合标准的收集工具、运输车辆，运输车辆应当安装行驶和装卸记录仪，标示明显的生活垃圾分类标志，保持车容整洁、车体完整、密闭无渗漏；
- (三) 作业人员将生活垃圾倒运至运输车辆后，应当将生活垃圾收集容器复位，清扫作业场地，保持生活垃圾收集设施和周边环境的干净整洁，并按照规定的时间、运行线路和收集点位收集、运输生活垃圾；
- (四) 不得在收集、运输过程中随意倾倒、堆放、丢弃、遗撒生活垃圾；
- (五) 建立生活垃圾管理台账，记录生活垃圾来源、种类、数量、去向等情况，并定期向区城市管理部门报告；
- (六) 国家和本市的其他规定。

生活垃圾不符合分类标准的，收集、运输单位可以要求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改正；拒不改正的，收集、运输单位应当向区城市管理部门报告。

第三十一条 市和区人民政府应当加快厨余垃圾集中处理设施建设，提高处理能力。

本市鼓励食品加工、餐饮服务、单位食堂、农贸市场、农产品批发市场、菜市场等单位建设就地处理设施处理厨余垃圾。就地处理厨余垃圾应当符合国家和本市环境保护相关标准和要求。

城市管理部门应当对厨余垃圾就地处理设施的建设、运行给予指导。

第三十二条 餐饮服务、单位食堂等厨余垃圾产生单位应当单独收集厨余垃圾，就地处理或者委托具备资质条件的生活垃圾收集、运输、处理单位进行集中处理；建立管理台账，记录厨余垃圾的种类、数量、去向、用途等情况，定期向城市管理部门报告。

禁止畜禽养殖场、养殖小区将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喂畜禽。

第三十三条 生活垃圾应当按照下列要求进行分类处理：

- （一）厨余垃圾采用生化处理等方式进行资源化利用或者无害化处理；
- （二）可回收物交由资源化利用企业进行回收利用；
- （三）有害垃圾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无害化处理；
- （四）其他垃圾采用焚烧等方式进行无害化处理。

第三十四条 生活垃圾处理单位应当遵守下列规定：

- （一）保持生活垃圾处理设施、设备正常运行；
- （二）按照有关规定接收生活垃圾；
- （三）按照有关规定和技术标准分类处理生活垃圾，不得将已分类的生活垃圾混合处理；
- （四）生活垃圾处理过程中排放污水、废气、废渣等污染物的，应当符合国家和本市有关标准；
- （五）通过生活垃圾管理信息系统实时向城市管理部门报送接收、处理生活垃圾的来源、数量、类别等；
- （六）制定应急预案，应对设施故障、事故等突发事件；
- （七）保持生活垃圾处理场所环境整洁；
- （八）国家和本市的其它规定。

生活垃圾处理单位发现收集、运输单位运送的生活垃圾不符合分类要求的，有权要求改正；拒不改正的，应当向区城市管理部门报告，由区城市管理部门及时处理。

第三十五条 本市实行生活垃圾跨区处理环境补偿制度。产生生活垃圾的区跨区处理生活垃圾的，区人民政府应当根据跨区处理的生活垃圾量交纳环境补偿费用。生活垃圾跨区处理环境补偿具体办法由市城市管理部门会同市财政等部门制定，报市人民政府批准后实施。

第六章 资源化利用

第三十六条 市发展改革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循环经济发展扶持政策，对符合本市城市功能需要、符合相关产业发展导向的可回收物回收利用项目予以支持。

第三十七条 市商务部门应当会同市城市管理等部门编制再生资源回收体系建设规划，合理布局再生资源回收网点，推进再生资源回收利用与生活垃圾收集、运输相衔接，将回收统计数据纳入生活垃圾统计内容。

第三十八条 再生资源回收经营者应当具有固定的可回收物物品存放点，可以采取进入社区回收、上门回收等方式开展可回收物回收服务，也可以通过兼具生活垃圾分类与再生资源回收功能的交投点或者中转站开展可回收物回收服务。

鼓励商场、超市、便利店等经营者或者管理者就地设立便民回收点回收废旧物品。

鼓励再生资源回收经营者采用“互联网+回收”、智能回收等方式增强可回收物投放、交售的便捷性。

第三十九条 市商务部门会同市城市管理、财政等部门，编制低值可回收物目录，制定推动低值可回收物资源化利用鼓励政策，报市人民政府批准后实施。

第四十条 再生资源回收经营者应当按照国家和本市有关规定，将可回收物交由资源化利用企业进行资源化利用。

对列入国家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生产者、销售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回收和处理。

第四十一条 市和区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支持在公共绿地、公益林的土壤改良中优先使用厨余垃圾资源化利用产品，支持符合标准的厨余垃圾资源化利用产品在农业生产领域的推广应用。

第四十二条 生活垃圾焚烧产生的热能应当通过发电、供热等方式进行利用。在符合环境保护要求的前提下，鼓励对炉渣、飞灰等进行综合利用。

第七章 社会参与

第四十三条 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以及工会、共青团、妇联等组织应当通过多种方式，广泛开展社会动员，推动全社会参与生活垃圾管理工作。

第四十四条 城市管理部门应当设立生活垃圾科普教育基地，面向社会普及生活垃圾分类知识。

本市大型生活垃圾处理设施运营单位应当设立公众开放日，接待社会公众参观。

第四十五条 教育部门应当将生活垃圾分类、源头减量、回收利用和无害化处理等知识纳入幼儿园、中小学校、高等学校教育内容，组织开展多种形式的垃圾分类教育和实践活动。

第四十六条 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以及其他组织，应当将生活垃圾分类知识和履行分类投放义务等内容纳入本系统、本单位对工作人员日常教育和管理的內容，督促工作人员分类投放生活垃圾。

第四十七条 本市建立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业主委员会、物业服务企业、业主等共同参与的工作机制，共同推进生活垃圾管理工作。

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应当配合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以及相关部门，做好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的组织、动员、宣传、指导工作。倡导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将生活垃圾分类要求纳入居民公约和村规民约。

第四十八条 市和区人民政府及其相关部门、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支持、鼓励志愿服务组织和志愿者开展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的宣传、引导、示范等活动。

第四十九条 市容环卫、再生资源回收、物业管理、餐饮、旅游、住宿、家政服务、商业零售等相关行业协会，应当将生活垃圾分类与减量等要求纳入行业自律规范，开展相关行业培训和评价，共同推进生活垃圾管理工作。

第五十条 本市鼓励通过积分兑换、奖励等多种方式，促进养成生活垃圾分类投放的良好行为习惯。

第五十一条 鼓励单位和个人对违反生活垃圾管理规定的行为进行投诉和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处理并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

第八章 监督管理

第五十二条 市和区人民政府应当将生活垃圾分类管理工作纳入城市管理考核制度。

本市文明城区、文明社区、文明村镇、文明单位、文明校园等群众性精神文明创建活动和卫生单位、卫生社区(村)等卫生创建活动，应当将生活垃圾分类管理相关情况纳入评选标准。

第五十三条 城市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生活垃圾监管制度，会同有关部门对生活垃圾分类投放、收集、运输、处理进行全流程监管。

生态环境部门应当加强对有害垃圾从暂存点分类收集后运输、处理的监督管理，对生活垃圾处理设施污染物排放情况进行监督检查。

住房城乡建设部门应当督促物业服务企业履行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

第五十四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依托全市政务数据共享平台，建立生活垃圾管理信息系统，与市商务、生态环境等部门的管理信息系统实现互联互通共享，提高生活垃圾管理信息化水平。

第五十五条 城市管理部门和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依法对生活垃圾分类投放、收集、运输、处理开展监督检查，进入被检查单位的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检查，查阅、复制与被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

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检查机关应当为被检查单位保守商业秘密。

第五十六条 本市建立健全厨余垃圾全程监管和执法联动机制，城市管理、市场监管、生态环境等部门应当将厨余垃圾的排放和流向纳入对餐饮服务单位的日常监督管理范围。城市管理部门应当加强对收集、运输厨余垃圾车辆的监督检查，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予以配合。

第五十七条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将生活垃圾管理工作纳入城市网格化管理，督促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履行管理责任，加强对辖区内生活垃圾分类投放、收集、运输工作的组织协调和监督指导。

第五十八条 市城市管理部门应当定期向社会发布全市生活垃圾清运量、处理量、处理设施状况等信息，对全市生活垃圾分类情况进行定期评估，评估报告向社会公布。

第五十九条 城市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生活垃圾管理应急预案，建立生活垃圾应急处理机制，确保发生公共卫生、环境卫生突发事件等特殊情况下生活垃圾投放、收集、运输、处理工作的正常进行。

第九章 法律责任

第六十条 违反本条例规定，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权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理：

- (一) 未按照要求组织落实生活垃圾收集、贮存、运输、处理等设施建设的；
- (二) 未依法作出行政许可的；
- (三) 未按照规定履行生活垃圾源头减量以及分类投放、收集、运输、处理、资源化利用的监督管理职责的；
- (四) 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投诉和举报后未依法调查处理的；
- (五) 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行为的。

第六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

第六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生产经营者未遵守限制商品过度包装的强制性标准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未遵守国家有关禁止、限制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规定，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报告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使用情况的，由商务、邮政等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餐饮经营者主动向消费者提供一次性餐具的，由市场监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规定，旅游、住宿经营者主动向消费者提供客房一次性日用品的，由文化和旅游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第六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未将生活垃圾分类投放至相应收集容器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单位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一百元以上五百元以下罚款。

依据前款规定应当受到罚款处罚的个人，自愿参加与生活垃圾分类相关社区服务活动的，城市管理部门可以依法从轻、减轻或者免于处罚。

违反本条例规定，产生生活垃圾的单位或者个人随意倾倒、抛撒、堆放、焚烧生活垃圾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对单位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一百元以上五百元以下罚款。

第六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未按照规定设置收集点位、配备收集容器或者对不符合分类投放要求的行为未进行劝告、制止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将生活垃圾交由不符合规定的单位或者其他经营者进行收集、运输、处理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立即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违反本条例规定，产生、收集厨余垃圾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将厨余垃圾交由不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进行处理的，由城市管理部门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个人有该项行为的，处一百元以上五百元以下的罚款，没收违法所得。

违反本条例规定，畜禽养殖场、养殖小区将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喂畜禽的，由城市管理部门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

第六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未按照规定取得生活垃圾经营性服务许可证从事生活垃圾经营性收集、运输、处理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

第六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生活垃圾收集、运输单位将已分类的生活垃圾混合收集、混合运输或者在收集、运输过程中随意倾倒、堆放、丢弃、遗撒生活垃圾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其生活垃圾经营性收集、运输服务许可证。

第七十条 违反本条例规定，生活垃圾处理单位未保持处理设施、设备正常运行或者未按照有关规定和技术标准分类处理生活垃圾的，由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其生活垃圾经营性处理服务许可证。

第七十一条 有关部门应当按照规定将依法查处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生活垃圾管理法律、法规规定的的相关信息，纳入信用信息共享平台；对依法认定为存在严重失信行为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按照规定实施惩戒。

第七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法律或者行政法规已有处理规定的，从其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章 附则

第七十三条 家具等体积大、整体性强或者需要拆分再处理的大件垃圾，应当单独堆放至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指定的投放点，或者预约专业收集、运输企业上门收集。

单位和个人在装饰装修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应当袋装密闭收集，按照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规定的地点单独堆放，并承担运输、处理费用。

废弃电器电子产品按照国家相关法律、法规和本市其他有关规定进行管理。

第七十四条 本条例自2020年12月1日起施行。

11. 山东省城市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

山东省住建厅印发

(2019-12-30 发布 / 2020-04-11 实施)



驻中国大韩民国大使馆

山东省城市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

目 录

1. 总体要求	355
2. 加强科学管理, 构建全程分类体系	356
3. 强化工作措施, 形成常态长效机制	357
4. 加强组织领导, 确保取得实效	358

山东省城市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

一、总体要求

（一）指导思想

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坚持新发展理念，加快建立生活垃圾全程分类处置体系，普遍实行以法治为基础，政府推动、全民参与、城乡统筹、因地制宜的生活垃圾分类和资源化利用制度，推进生活垃圾的减量化、资源化、无害化，不断提升城市管理水平和居民文明素养，进一步改善城乡人居环境。

（二）工作目标

2020年，济南、青岛、泰安等重点城市基本建成生活垃圾分类处理系统，基本建立生活垃圾分类相关法律法规和标准体系；其他设区城市实现公共机构生活垃圾分类全覆盖，至少1个县（市、区）基本建成城市生活垃圾分类示范县（市、区）。2022年，各设区城市至少有1个县（市、区）实现生活垃圾分类全覆盖，其他县（市、区）至少有1个街道（镇）基本建成生活垃圾分类示范片区。2025年，所有设区城市基本建成生活垃圾分类处理系统，县级市（县城）生活垃圾分类覆盖面进一步扩大，生活垃圾分类相关法律法规和标准体系持续完善，科学管理、长效机制、习惯养成效果显现。

（三）分类标准

城市生活垃圾按照有害垃圾、可回收物、厨余垃圾、专业垃圾、其他垃圾进行分类。产生生活垃圾的单位和个人，是实施生活垃圾分类的主体。单位办公和生产经营场所，应当按照有害垃圾、可回收物、其他垃圾进行分类，集中供餐的单位应增加餐厨垃圾分类，提高资源化利用水平；住宅小区应当按照有害垃圾、可回收物、其他垃圾进行分类，鼓励有条件的实施厨余垃圾分类；市政道路、园林景区、交通枢纽、文化体育、商业娱乐等公共场所，应当按照可回收物、其他垃圾进行分类。

二、加强科学管理，构建全程分类体系

（一）分类投放

城市生活垃圾分类投放实行管理责任人制度，明确住宅小区、单位、公共场所等不同主体的管理责任，划定和公示责任区范围，公开公示辖区内各类垃圾细分目录、投放频次、投放地点、投放时间，建立生活垃圾分类收集台账，加强日常监管。鼓励有条件的地方推行生活垃圾“定时定点”投放。严禁将有害垃圾混入其他各类生活垃圾。

（二）分类收集

合理设置规范统一的生活垃圾分类收集站点，鼓励各地因地制宜对现有收集站点实施“桶改房”和收集计量化改造。按照便利、安全的原则，独立设置有害垃圾收集和临时贮存场所，并建立健全统计管理制度。严格落实“不分类、不收运”原则，对未按规定投放的单位和个人，通过教育、行政处罚、拒收运和纳入社会征信体系等方式进行强制约束，逐步提高生活垃圾投放准确率。

（三）分类运输

建立完善分类垃圾的运输系统，严禁“先分后混”，确保全程分类。按照区域内生活垃圾的产生量，合理确定分类收运频次、时间和路线，配足配齐喷涂统一规范标识的分类运输车辆。规范有害垃圾中转运输，完善有害垃圾收集暂存点布局。优化可回收物收运系统，合理布局建设可回收物分拣中心和集散市场，实现再生资源回收、分类、储存、中转等功能。

（四）分类处理

推进生活垃圾焚烧处理等设施建设和改造提升，优化处理工艺，增强处理能力。加快有害垃圾处理设施建设，强化全过程污染控制，确保有害垃圾得到安全处置。采取长期布局和过渡安排、集中处理和分散处理相结合的方式，加快餐厨废弃物和厨余垃圾处理设施规划建设。有条件的城市可将餐厨废弃物、厨余垃圾与城镇粪便、市政污泥等实施协同处置。加快再生资源回收利用体系建设，规划建设大件垃圾处理设施，探索“互联网+资源回收”模式，推动可回收物规范化、专业化处理。鼓励生活垃圾处理产业园区建设，统筹各类生活垃圾处理。

三、强化工作措施，形成常态长效机制

（一）加强制度建设

适时启动编制全省城镇生活垃圾无害化处理设施建设“十四五”规划。各市、县加快编制城乡生活垃圾分类专项规划，制定城乡生活垃圾分类实施方案，明确目标任务和完成时限。加快研究制定全省城乡生活垃圾处理地方性法规，指导推动各地出台地方性法规、规章，强化法制约束力。

（二）强化政策保障

各级要加强生活垃圾分类收运处理系统建设运行经费、设施用地保障，确保分类垃圾得到妥善处理。按照污染者付费原则，完善城市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建立与分类质量相挂钩的生活垃圾收费机制。制定有害垃圾集中收集处置专项支持政策，确保有害垃圾规范收运处置。建立低价值可回收物回收补贴政策，引导企业回收利用低价值可回收物。制定厨余垃圾资源化产品用于绿地、林地等土壤改良的补贴政策，打通厨余垃圾资源化利用产品出路。健全餐厨垃圾和建筑垃圾资源化扶持政策，促进再生产品利用。

（三）加大科技创新

大力推进垃圾治理的新技术、新材料、新设备的开发应用，逐步提升生活垃圾收集车辆装备、中转设施、资源化利用设施、末端处置设施的技术水平和科技含量。积极推进有害垃圾、厨余垃圾处理工艺研究创新，推动有害垃圾、厨余垃圾处理关键技术和设备产业化。充分利用物联网、互联网等技术，建设生活垃圾分类全过程信息管理系统。

（四）完善监管机制

建立完善政府依法监管、第三方专业评价、社会全面监督的生活垃圾分类全过程综合监管体系，提高行业监管水平。实施生活垃圾分类社会监督员制度。建立健全生活垃圾分类民意反映监督平台，开通投诉电话热线，适时开展群众满意度调查，加强群众监督。强化基层党组织的动员组织作用，引导单位、居民逐步养成主动分类的生活习惯。

四、加强组织领导，确保取得实效

（一）加强组织保障

调整完善省城乡环卫一体化工作联席会议制度，省政府主要负责同志任总召集人，分管负责同志任召集人，联席会议办公室设在省住房城乡建设厅，由厅主要负责同志兼任办公室主任，统筹做好综合协调、技术指导、监督考核和宣传引导等工作。各级政府是生活垃圾分类工作的责任主体，主要负责同志是第一责任人，应建立健全工作机制，全面推进生活垃圾分类工作。

（二）协同联动推进

各级相关部门要认真履行职责、密切协作配合，形成工作合力。住房城乡建设（城市管理）部门负责对本辖区内生活垃圾分类工作的组织推进、检查指导和监督考核。教育部门负责将生活垃圾分类相关知识纳入幼儿园、中小学以及其他教育机构教学内容。财政部门负责对城市生活垃圾分类收运处理系统的建设运行予以支持。生态环境部门负责加强生活垃圾分类收集后危险废物运输、处置环节的监管。商务部门负责推进再生资源回收体系建设。宣传部门（文明办）负责协调、组织和指导各类媒体开展生活垃圾分类宣传工作。其他联席会议成员单位要根据各自职责，指导做好本行业生活垃圾分类相关工作。

（三）推动习惯养成

制定生活垃圾分类宣传教育计划，广泛开展宣传活动，积极营造良好舆论氛围。扎实开展典型示范创建活动，分批创建生活垃圾分类示范区、示范街道（镇）、示范单位、示范小区（村居）、示范处理企业、示范校园，以点带面、示范引领。积极推进生活垃圾分类知识“进校园、进教材、进课堂”，重点深入开展中小生活垃圾分类教育。加强生活垃圾分类指导员、保洁队伍和志愿者队伍建设，深入开展宣传教育活动，促进群众习惯养成。

（四）强化督导检查

建立定期调度督导制度，健全部门管理执法协作机制，及时通报情况，分析问题不足，加强督促指导。建立健全生活垃圾分类奖惩机制，将生活垃圾分类纳入科学发展综合考核、机关单位绩效考核、文明单位创建等考评体系，强化结果运用。探索建立生活垃圾分类基层治理体系，构建“县（区）—镇（街）—村（居）—群众”常态化监督机制。

중국 환경 법령·표준집 Vol.2 (고체폐기물 분야)

감수자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황계영 환경관

번역 : 북경한화통번역유한공사(北京韩和通翻译有限公司)

교정 : 윤영근, 임승택, 차목승, 성소묘

주소 : 中国北京市朝阳区东方东路20号 100600,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86-10-8531-0837

이메일 : ghwang@korea.kr